

제3편

한말·일제시기 정치사회적 변화

제1장 지방제도와 지방행정의 변화

제2장 북방면 광무호적으로 본 한말 농촌 사회구조

제3장 경부철도 부설과 지역사회 변화

제4장 근대 학교교육의 도입과 교육활동

제5장 전시체제하 강제동원의 양상과 실태

제1장 지방제도와 지방행정의 변화

차선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1. 한말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체제 변화

1) 지방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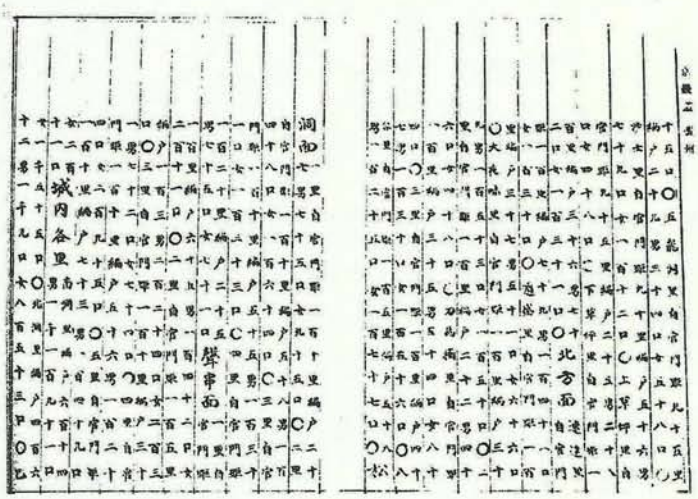
군포시는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분리되어 금정동,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등 5개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로 승격하였다. 이후 19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의 대야미리, 도마교리, 둔대리, 속달리 등 4개 리를 편입하면서 오늘날의 행정권역을 형성하였다. 현재 행정구역 조정과 분합을 거쳐 11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아래에 321개 통, 2,176개 반으로 편제되어 있다.

오늘날 군포시 행정권역은 크게 이 지역의 모체로서 주민들의 오랜 생활 터전인 기존 군포 지역과 새로 편입된 대야동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지역은 그 역사를 거슬러 가면, 행정적으로 궤적을 달리한다. 전자는 1989년 시 승격 전까지 시흥군 군포읍이었고, 그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1979년에 읍으로 승격하기 전까지는 시흥군 남면이었다. 남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군에 소속되기 이전에는 과천군의 7개 면 가운데 하나였다. 후자는 좀 더 복잡한 행정구역 변화를 겪었다. 본래 수원군 반월면이었다가 1949년에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신설된 화성군에 이속되어

1994년에 군포시로 편입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그 이전인 1906년부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까지는 안산군 북방면에 속했고, 안산군에 속하기 전에는 광주부 북방면이었다.

조선시대로 올라가 보면 기존 군포 지역은 과천현에, 대야동 지역은 광주부에 편제되어 있었다. 과천현은 조선 세조 대에 행정구역 정비를 일단락지은 후, 한말 갑오개혁 전까지 큰 변동 없이 그 체제를 유지하였다. 광주부도 읍격의 변동은 있었지만 행정구역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당시 과천현의 경계는 동쪽으로 광주 경계까지 13리, 남쪽으로 수원부까지 34리, 서쪽으로 금천현 경계까지 20리, 안산군 경계까지 28리, 북쪽으로 노량까지 20리, 서울까지는 33리였다. 그리고 당시 광주목의 경계는 동쪽으로 양근군까지 25리, 여주까지 75리에 이르고, 남쪽으로 이천부까지 74리, 양지현까지 85리, 용인현까지 43리, 서쪽으로 과천현 경계 양재역까지 27리, 안산군까지 76리, 북쪽으로 양주군까지 10리이며, 경도(서울)까지는 10리 거리에 있었다.[1] 16세기에 이렇게 획정된 과천과 광주의 사방 경계는 한말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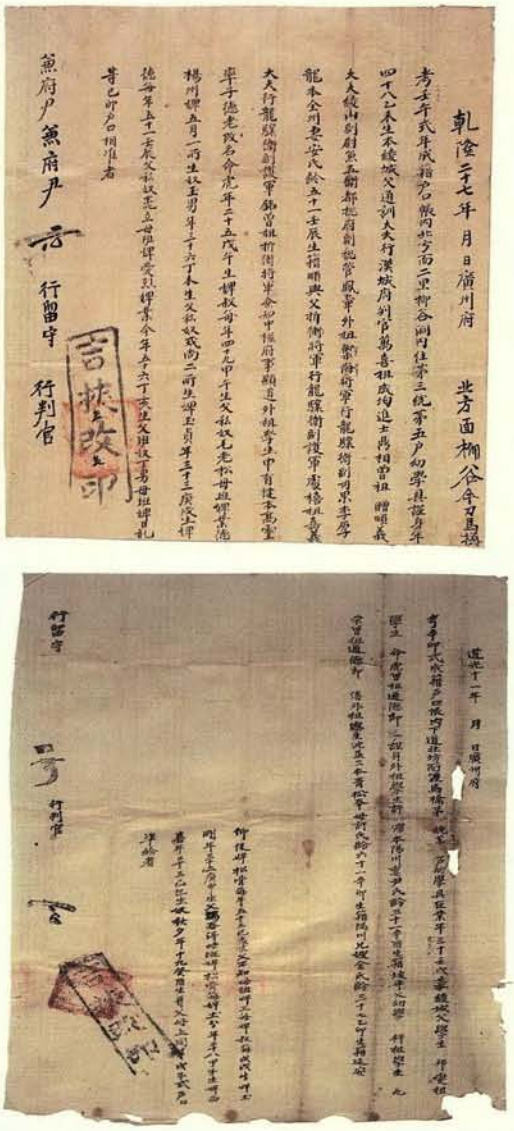
각 군현의 세부 행정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이다. 1759년(영조 35) 제작된 『여지도서(輿地圖書)』는 군포 지역의 광역적인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여지도서』 과천현과 광주부의 방리조에는 면 이름이 수록되었다. 과천현의 경우 현내면(縣內面), 동면(東面), 상서면(上西面), 하서면(下西面), 남면(南面),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 등 7개 면이었다. 이중에서 오늘날 군포 지역에 해당하는 면이 남면이다. 남면의 지리적 위치는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30리 부근이며, 이곳에는 모두 378호가 살았다. 광주부의 경우, 면 이름뿐 아니라 리명(里名)까지 나타나고 있어 당대 행정구역 편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에 속한 23개 면 가운데 오늘날 대야동 지역은 북방면(北方面)에 속했다. 북방면은 속달리(速達里), 둔대리(遁垈里), 대야미리(大夜味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도마교리(刀馬橋里), 팔곡리(八谷里) 등 7



『여지도서』 광주부 방리조의 북방면 부분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광주목;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과천현

개 리였는데, 그중 속달리, 둔대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등 4개 리가 현 대야동 지역이고, 이리도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의 위치는 모두 관아로부터 100리로 기록되어 있다. 호수로는 속달리, 인구로는 대야미리가 가장 많았다. 속달리는 79호에 남자 141명, 여자 130명이었고, 대야미리는 39호에 남자 153명, 여자 150명이었다. 둔대리는 37호에 남자 51명, 여자 66명, 도마교리는 35호에 남자 54명, 여자 84명이었다. 이외에 이리는 22호에 남자 46명, 여자 48명이었다.



능성 구씨의 1762년(위) 및 1831년(아래) 준호구

광주와 달리 과천에서 최말단 행정지명인 리의 명칭이 기록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이다. 『호구총수』에는 모두 40개 동리가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군포 지역에 해당하는 남면에는 금정리(衿井里), 당리(堂里), 봉성리(鳳城里), 당정리(堂井里), 장간리(章干里), 산저리(山底里), 부곡리(富谷里) 등 7개 리가 있었다.

한편, 동일한 18세기 자료임에도 『호구총수』와 『여지도서』에서 광주부 북방면의 기록은 리의 수에서는 같지만, 그 명칭에서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호구총수』에 따르면, 북방면 소속 리는 속달리, 둔대리(屯垈里), 대야미리, 도마교유곡리(道馬橋柳谷里), 팔곡리, 건건리(乾乾里)다. 속달리, 대야미리, 팔곡리는 동일하다. 둔대리와 도마교리는 한자가 바뀌었고, 이리와 삼리는 사라지고 유곡리와 건건리라는 지명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도마교유곡리가 하나의 리인지, 아니면 도마교리와 유곡리라는 두 개의 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현 도마교동 송정마을에 세거해 온 능성 구씨 문중의 준호구들을 통해서 이 일대의 지명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1762년에 발급된 준호구에는 이리(二里) 유곡동(柳谷洞)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북방면 유곡은 지금의 도마교[北方面柳谷今刀馬橋]"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그리고 1810년 발급된 준호구에는 유곡리,

1831년 발급된 준호구에는 도마교(渡馬橋)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이들 준호구가 동일 가계의 것임을 고려할 때, 『여지도서』에 나오는 이리가 유곡리로 변화하고, 다시 유곡리가 도마교리에 통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세기에 나타난 과천 지역의 행정지명은 19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변화 양상을 띠게 된다. 1871년(고종 8)에 발간된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를 보면 종래 40개 동리였던 행정지명이 44개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명칭에도 변화가 보인다. 그중 남면의 경우에는 산저리가 산본리(山本里)로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한편,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지방제도 개혁에 따라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공포하자 군포 지역이 속한 과천과 광주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 「지방제도개혁에 관한 건」을 통해 시행하게 된 23부제는 종래 유수부, 부, 목, 대도호부, 도호부, 군, 현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모두 군으로 단일화하여 총 337개 군을 23부 아래 분속시켜 지방행정의 효율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23부제의 실시로 과천군은 인천부에, 광주군은 한성부에 각각 소속되었다.

그러나 23부제는 갑오개혁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급박하게 공포된 것이어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종래 뿌리 깊던 8도제를 무시한 인위적인 획정이었다는 점에서 원활한 실시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23부제는 실시 1년 만에 "민정(民政)의 불편함과 번용(煩冗)의 폐가 있고 재정상의 부담도 크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인 「지방제도 · 관제 · 봉급 · 경비 개정의 건」의 공포로 13도제가 실시되었다. 13도제는 종래의 8도제를 바탕으로 경기 · 강원 · 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할한 것으로, 오늘날 지방행정구역체제의 기반이 되었다. 13도제 실시에 따라 23부제 하에서 인천부에 분속되어 있던 과천군은 다시 경기도로 편제되었고, 한성부에 속했던 광주군은 부로 승격되어 경기도로 편제되었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지방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본격화되었다. 통감부는 1906년 4월 지방제도 개정작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지방제도조사소를 설치하고, 9월 초부터 두입지(斗入地)와 비입지(飛入地) 정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316개 대상 지역 가운데 217개 지역의 두입지와 비입지를 정리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두입지 18개 지역과 비입지 12개 지역을 재조정하였다. 과천군에는 해당 사례가 없어 종전대로 7개 면을 유지하였으나, 광주부는 북방면을 포함한 성곶면, 월곡면이 두입지로 판정되어 안산군으로 이속되었다.[2] 이에 따라 종래 6개 면을 관할하던 안산군은 관할 구역이 9개 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때부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까지 북방면은 광주부가 아닌 안산군 소속이 되었다.

그리고 통감부시기 지방제도 개정의 방향에는 두입지와 비입지 정리만이 아니라 345개 전국

2) 「勅令 第49號 地方區域整理件」, 1909년 9월 24일(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부 · 군을 220개로 대폭 폐합하는 군폐합안도 담겨 있었다. 이 폐합안에는 과천군과 안산군도 포함되었는데, 두 군을 폐지하고 시흥군과 통합한다는 것이었다. 군폐합안은 당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되었지만 일제 강점 후인 1914년 지방제도 개정 때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2) 행정체제와 지방관리 구성의 변화

조선시기 지방행정체제는 수령과 이서(吏胥), 그리고 보좌기관인 향청과 수령의 간접 지배에 의한 면리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관은 일반 행정권은 물론이고 조세징수권, 군사권, 재판권 등 거의 전권을 행사하며 해당 군현의 모든 일을 관장하였다. 그런데 지방관의 전권 행사, 지방행정 실무자층에 대한 보수체계의 비합리성과 지방관의 잦은 교체, 매관매직 등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방행정을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갑오개혁 이후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지방관의 행정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던 조세징수권이 분리되었다. 갑오개혁기에 정부는 조세징수사무를 전담하는 징세기구를 설치하고 조세의 부과와 수취를 이원화하였다. 이 조치는 통감부시기에 본격화되어 세무 일체를 담당하는 세무감부, 세무서, 세무분서가 각지에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1907년 7월부터 과천군의 세무업무는 시흥군에 설치한 세무분서에서 관장하게 되었고, 북방면을 관할하는 안산군에는 독자적으로 안산세무분서가 설치되었다. 이듬해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흥세무분서는 시흥재무서, 안산세무분서는 안산재무서로 개칭하였다.[3] 조세 부과 및 징수 방식도 달라졌다. 세무서(이후 재무서로 개칭)에서 면 단위로 세액을 부과하면 면장이 부과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였다. 그러면 납세자는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와 납세금액을 공전영수원에게 제출하였고, 공전영수원은 수령한 세금을 관할 금고나 우편관서에 납부하였다.[4] 이때 과천군과 안산군 각 면에서 수령한 세금은 한성에 있는 중앙금고에 직접 납부했다.

다음으로 종래 군사권에 포함되던 지방경찰업무와 재판권 및 행형권(行刑權)도 분리되었다. 1895년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면서 지방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재판소를 설치하고 민 · 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한편, 이에 불복하는 사건은 상급 재판소인 순회재판소에 상고하는 근대적 재판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재판소 개설이나 전문 사법관 양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방재판은 여전히 군수가 겸임하는 실정이었다. 통감부시기에 들어 재판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여 1907년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을 통해 대심원 1개소, 공소원 3개소, 지방재판소 8개소,

3) 「度支部令 第26號 管稅官 位置 · 管轄區域表 改正」, 1907년 7월 2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V); 「度支部令 第33號 財務署 名稱 · 位置及管轄區域表」, 1907년 12월 18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VI).

4) 「勅令 第60號 租稅徵收規程」, 1908년 10월 16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V); 「法律 第5號 國稅徵收法」, 1909년 2월 18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VIII).

구(區)재판소 113개소가 설치되었고, 그중 하나인 수원구재판소에서 과천군과 안산군을 비롯하여 수원군, 남양군, 시흥군, 진위군의 일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5]

통감부는 항일의병을 진압하고 통감부에 반대하는 지방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행정을 강화하면서 1906년 10월 전국적으로 경무서 13개소, 경무분서 26개소, 분파소 300개소를 신설하였다. 이때 경기도경무서 산하에 과천분파소와 안산분파소가 신설되었다. 분파소에는 순검 4~6명이 배치되었는데, 과천과 안산에는 4명씩 배치되었다.[6] 1907년에는 경무서와 분파소 명칭을 각각 경찰서와 순사주재소로 개칭하고 경찰서 설치를 확대함에 따라 과천분파소와 안산분파소도 수원경찰서 산하의 과천순사주재소와 안산순사주재소로 각각 변경되었다.[7]

갑오개혁시기 군수권의 축소는 물론 지방 관원을 대폭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혁하면서 지방행정 실무 담당층의 구성과 기능도 크게 달라졌다. 23부제 하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군을 결호(結戶)의 다소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경비와 관원의 봉급체계를 달리 책정하였다. 등급별 1년 군 경비 현황을 보면, 1등 17개 군 3,356원, 2등 32개 군 2,884원, 3등 78개 군 2,710원, 4등 111개 군 2,276원, 5등 85개 군 2,122원이었다. 과천군은 5등 군으로 분류되어, 관원 봉급 1,932원과 기타 경비 190원을 합쳐 도합 2,122원을 1년 경비로 배정받았다. 또한 북방면을 관할하던 광주군은 3등 군으로서 관원 봉급 2,420원과 기타 경비 290원을 합친 2,710원이 1년 경비였다.[8] 이 시기 5등 군이던 과천군 소속 관직명과 정원은 장교(將校) 4명, 이방(吏房) 1명, 이(吏) 6명, 통인(通引) 2명, 사령(使令) 6명, 객사(客舍) 1명, 향교직(鄕校直) 1명, 세무서기 2명 등 23명이었다. 반면 3등 군인 광주군은 세무주사 1명, 장교 6명, 이방 1명, 이 8명, 통인 2명, 사령 8명, 객사 1명, 향교직 1명, 세무서기 2명 등 30명이었다.[9]

이처럼 종래 과다했던 지방 관원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행정을 분화함으로써 군수업무가 행정사무로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주사, 세무서기 등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관직명도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때에 이르러 군수뿐 아니라 하위 관리들까지 보수지급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들이 중앙정부 통제 하의 근대적인 관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과천군과 광주군의 행정체제와 관리 구성은 1896년 13도제를 실시하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3도제에서도 23부제와 마찬가지로 지방관아의 경비와 관원 봉급을 차등 지급하는 군 등급제를 유

5) 「法律 第8號 裁判所構成法」·「法律 第10號 裁判所設置法」, 1907년 12월 23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VI). 단, 「法律 第9號 裁判所構成法施行法」에서는 재판소가 개설될 때까지 각 지방 재판은 종래 군수가 담당하던 것을 해당 관할 구재판소에서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6) 「內部令 第11號 各道警務署·分署·分派所 管轄區域」·「內部令 第12號 各道警務署·分署·分派所 警察官吏配置定員」, 1906년 10월 1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V).

7) 「內部令 第4號 警察區劃 改正」, 1907년 12월 27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VI);「內部令 第3號 警察署·警察分署·巡査駐在所 名稱·位置·管轄區域 改正」, 1910년 5월 2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IX).

8) 「勅令 第163號 各郡經費排定에 관한 件」·「勅令 第164號 郡守官等俸給에 관한 件」, 1895년 9월 5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9) 「勅令 第163號 各郡經費排定에 관한 件」, 1895년 9월 5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지하였다. 23부제 하에서 5등 군이던 과천군은 4등 군으로 책정되어 1년 경비로 2,154원을 배정받았다. 반면 3등 군이던 광주군은 1등 군인 광주부로 승격되어 3,144원이 1년 경비로 책정되었다. 지방관리 구성의 변화를 보면, 4등 군에 편제된 과천군의 관원은 향장 1명, 순교 4명, 수서기 1명, 서기 6명, 통인 2명, 사령 6명, 사용 2명, 사동 2명, 객사직 1명, 향교직 1명 등 26명이었다. 그리고 1등 군인 광주부는 향장 1명, 순교 6명, 수서기 1명, 서기 8명, 통인 3명, 사령 8명, 사용 4명, 사동 3명, 객사직 1명, 향교직 1명으로 모두 36명이었다.[10] 관원의 명칭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갑오개혁기 장교가 순교로, 이방과 이(吏)가 각각 수서기와 서기로 바뀐 것으로, 이는 조선시대 이서조직의 명칭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향장이라는 관직이 새롭게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 향청의 좌수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향촌 지배의 주도세력이던 그들을 지방행정체계로 편입하려고 한 의도로 짐작된다. 향장제는 1906년 지방관 관제 개정 때 폐지되고, 대신 군주사가 신설된다.

2. 일제강점기 지방제도 변화와 면 운영

1) 행정구역 재편과 촌락의 분화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개청(開廳)하기 하루 전인 9월 30일 지방제도의 골격을 규정한 칙령 제357호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를 공포하였다. 이 관제에서는 지방행정 단위를 도, 부, 군, 면으로 하고, 13도 12부 317군 4,408면으로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체제의 대강을 확정했다. 아울러 통감부시기 재무감독국 업무를 도의 재무부로, 재무서 업무를 부 · 군으로 이속시키고, 거류 일본인 사무를 처리했던 이사청 업무를 도 · 부 · 군의 각 부서로 분장하여 행정체제를 일원화하였다. 이와 함께 1910년 10월 1일 총독부령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말단 지방행정기구로서 면의 지위를 확정하였다. 이는 면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대신 면장을 임명관리로 바꿈으로써 식민지 지배권력이 향촌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강점 직후 일단의 법제적 정비를 마친 일제는 전면적인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앞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912년 3월 부령 제20호로 「과세지견취도 작성의 건」을 발포하고, 동년 4월 1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총 257개 부 · 군, 3,492개 면, 4만 9,587개 동리에 이르는 견취도(見取圖)를 완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13년부터 약 1년간 통폐합 준비를 거쳐, 1913년 12월 29일 총독부령 제111

10) 「勅令 第36號 地方制度 · 官制 · 俸給 · 經費 改正」, 1896년 8월 4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 II).

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공포하고, 1914년 3월 1일부터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일제가 표방한 행정구역 개편의 명분은 "부 · 군 · 면의 종래 행정구역은 구 한국정부시대의 구역을 답습한 것이어서 지역, 호구, 자력 등에 심한 차이가 있었다. 그중 면의 폐가 가장 현저하여 이 때문에 면민 사이에 심하게 부담의 균형을 잃는 일이 있어 행정사무의 집행에 지장이 적지 않아 한편으로 시정상의 편의와 경비 절약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민 부담의 균형을 얻도록 한다."고 하여 구역의 지리적 불균등과 세 부담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상의 편의, 경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으로 "부의 경우는 가능한 구역을 축소하여 종래 거류민단과 거류지를 포용하고, 군의 경우는 면적 약 40방리, 인구 약 10만 명 정도로 하여 그 이하 지역은 인접 군에 병합하며, 면의 경우는 대체로 호수 800호, 면적 약 4방리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곳은 예전대로 존속하고 표준에 달하지 못하는 곳은 다른 곳과 병합하는 것으로 한다."[11]고 하여 군 40방리 10만 명, 면 4방리 800호를 기준으로 일제히 통폐합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폐합 조치에 따라 종전 12부 317군 가운데 전체의 37%인 1부 121군이 폐합되고 새로 1부 24군이 신설되어 12부 220군이 되었다. 면의 통폐합은 도별로 도령을 발포하여 시행하였는데, 종래 4,336개 면이 2,522개로 통폐합되었다. 군 · 면 동리의 통폐합은 군 · 면과 같이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없는 관계로 1914년 4월부터 점차 도별로 진행하여 1918년 완료될 때까지 모두 6만여 개 동이 2만 8,000여 개로 통폐합되었다.

경기도는 1913년 2부 36군 492면 4,856동리에서 1914년 통폐합 조치에 따라 2부 20군 250면 4,604동리로 재편되었다. 이때 없어진 군으로는 남양, 과천, 안산, 죽산, 양성, 양지, 음죽, 통진, 양천, 교동, 교하, 풍덕, 영평, 삭령, 적성, 마전 등 16개 군이다. 그리고 기존 군에 이들 군을 병합하거나 2개 군을 합쳐 최종 확정한 군이 고양, 부천, 시흥, 수원, 진위(1938년 평택군으로 개칭), 안성, 용인, 이천, 김포, 강화, 파주, 개성, 포천, 연천, 광주, 양평, 양주, 가평, 여주, 장단 등 20개 군이었다.[12]

일제 강점 직후까지 오늘날 군포권역에 해당하던 과천군 남면 일대와 안산군 북방면 일부도 행정구역 분화를 거듭하였다. 과천군 남면은 1871년 『과천현읍지』에 나타난 7개 리에서 3개 리가 늘어나 산본동, 당리, 용호동(龍虎洞), 장간리, 부곡리, 괴곡리(槐谷里), 금정리, 당정리, 봉성리, 초막동(草幕洞) 등 10개 동리로 구성되었다. 안산군 북방면 중 현 대야동에 해당하는 속달리, 둔대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등의 동리 명칭은 그대로이지만, 속달리가 속달1 · 2 · 3리로 세분하였다.[13] 이

11) 조선총독부, 1913, 『시정연보』, 18~19쪽.
12) 「부령」,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12월 29일 호외(號外).
13) 조선총독부, 1912,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 72~74쪽.

처럼 조선 후기 이래 한말을 거쳐 일제 강점 직후에 이르기까지 동리 단위의 마을 명칭이 다양해지고, 그 수가 증가하는 등 촌락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는 동리의 하위 단위인 촌락까지 수록하면서,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고 있어 자연마을의 지명 유래와 연원을 파악하는 데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중 현 군포 지역에 해당하는 동리와 그에 속한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과천군 남면

- 부곡동(富谷洞) : 부곡동, 석촌(石村, 독골말), 호현촌(蒿峴村, 고개말), 각곡촌(角谷村, 각골말), 구선동(九仙洞, 구산말), 고랑촌(高郎村, 고랑치기)
- 당정리(堂井里) : 당정리, 소당정리(小堂井里, 자근당졍이), 대야동(大野洞, 뒤골), 방축동(防築洞)
- 장간리(章干里, 샴승이) : 장간리, 황동산촌(黃東山村), 점촌(店村, 졈말)
- 용호동(龍虎洞, 요골) : 용호동, 신대촌(新垈村, 서터말)
- 산본동(山本洞, 산밋) : 산본동, 도장동(道長洞), 초막동(草幕洞), 둔전동(屯田洞), 궁내동(宮內洞, 궁안), 곡내리(谷內里, 골안), 장항리(獐項里, 노루목이)
- 금정리(衿井里) : 금정리, 재궁동(齋宮洞, 재안골)
- 괴곡리(槐谷里, 늣트울) : 괴곡리, 오금촌(五禁村, 오금졀이)
- 당리(堂里, 당말) : 당리, 평촌(坪村, 벌말), 도내동(道內洞), 당하리(堂下里), 아구동(阿口洞, 아구랑이말), 화산동(花山洞)
- 봉성리(鳳城里, 새잔이) : 봉성리, 평촌(坪村, 벌말)

■ 안산군 북방면

- 속달일리(速達一里, 갈틔)
- 속달이리(速達二里, 속달)
- 속달삼리(速達三里, 납작골)
- 둔대동(屯垈洞, 둔터)
- 대야미(大夜味)
- 도마교(渡馬橋, 도마달이)

오늘날 군포권역을 구성하는 과천군 남면 일대와 안산군 북방면의 일부 지역은 18세기 이래 분동을 거듭하여 191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모두 16개 동리로 분화하였다. 또한 동리 아래에는 조선 후기 이래 새로운 촌락공동체로 자리 잡기 시작한 동성촌락이 좀 더 세분화된 단위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자연촌락은 근대화 · 산업화와 함께 씨족공동체적 성격이 대부분 해체되

었지만, 지명이나 마을 이름 등이 전승되면서 지역과 삶의 터전에 대한 연속성을 이어주고 있다.


『조선지지자료』 중 과천군 남면의 일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지방지배 하에서 조선 지방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군(郡)을 단위로 한 지역적 통합과 결속력은 해체되었고, 향촌 운영의 자치적 전통 또한 왜곡되었다. 1914년 일제의 군현 통폐합 조치는 군포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면을 관할하던 과천군이 안산군과 함께 시흥군으로 통폐합되었다. 이에 따라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과천군의 7면 55개 동리, 안산군의 월곡면 · 북방면 · 성곶면을 제외한 6면 63개 동리, 시흥군의 6면 22개 동리를 통합하여 9면 83리로 조정되었다. 즉, 3개 군의 19개 면과 140개 동리가 9개 면 83개 리로 축소된 것이다. 새로 편제된 면은 북면(北面), 신동면(新東面), 동면(東面), 서면(西面), 과천면(果川面), 서이면(西二面), 남면(南面), 수암면(秀岩面), 군자면(君子面)이었고, 이 가운데 남면이 오늘날 군포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 과천군과 안산군을 시흥군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기존 안산군 월곡면 · 북방면 · 성곶면은 수원군으로 편제되어 3개 면을 합쳐 반월면이 되었다.[14]

행정구역 개편으로 조선 후기 이래 한말을 거치는 동안 성장 발달해 온 촌락들은 강제적인 재편을 맞게 되었다. 더욱이 군포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미 1912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31호에 의해 당시 과천군 남면의 10개 동리는 5개 리로 통합 조정되었다. 산본동과 초막동이 산본리로, 금정리와 괴곡동이 금정리로, 당리와 용호동이 당리로, 당정리와 봉성리가 당정리로, 부곡리와 장간리가 부곡리로 각각 통폐합되었다.[15] 이 시기 개편된 5개 리는 그 영역과 지명에 대한 큰 변동 없이 1989년 시흥군 군포읍이 시로 승격할 때 법정동이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현 대야동에 해당하는 당시 안산군 북방면의 동리도 속달1리와 대야미리가 대야미리로, 속달2리와 3리가 속달리로 통합되었고, 둔대리와 도마교리는 그대로였다.[16]

14) 「지방청공문」,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3월 13일 호외; 越智唯七, 1914,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3쪽.

15) 「지방청공문」,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7월 29일.

16) 「지방청공문」,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2월 8일. 당시 관보에 게재된 둔대리의 한자 명칭은 '둔대리(屯垈里)' 였으나,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2월 12일을 통해 '둔대리(屯垈里)' 로 정정하였다.

이들 4개 리의 영역과 지명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1994년 12월 26일에 군포시로 편입되면서 법정동이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10년대 「안산군 전도」 중 북방면 일대(국가기록원 제공)[17]

이 지도는 행정구역 통폐합 전후를 표시한 지도다. 검은 선 아래에 북방면, 월곡면, 성곶면이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3개 면이 통합하여 수원군 반월면이 되었다. 이 지도상에 보면, 1912년 동리 통폐합 이전 속달리였던 갈치가 대야미리에 포함되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3개 면 통합 이전 북방면의 사무소('○' 표시 부분)가 둔대리 대감마을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7) 「내고향 역사알기」, 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

2) 면의 행정력 강화와 면 운영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단순히 지역을 통폐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행정기관, 특히 중앙권력을 농촌으로 침투시키는 데 주요한 매개체인 면의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면을 말단 행정기관으로 위치짓고 이를 거점으로 농촌 각 지역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면장을 충원하는 한편, 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면직원을 양성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였다.

일제는 이를 위해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부령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면장을 도장관이 임명하고 판임관 대우를 함으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다.[18] 면장의 임면에 관해서도 까다롭고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나이와 자산 규모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학식과 명망, 면내 거주를 중시하여 식민통치의 현지 대리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과 권위를 고려하였다. 또한 경찰관서의 신원 조사와 일본어 이해 여부를 통해 식민지 관료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면장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함께 면 행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면서기의 충원도 해마다 증가하였다.

이처럼 면의 구역과 규모를 정비하고 면 운영을 위한 인적 기반을 확보한 일제는 면 운영의 정책 방향을 법제화하는 준비에 들어가 1917년 6월 9일 제령 제1호 「면제」와 부령 제34호 「면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들은 그간 일제가 추진해 온 면의 행정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완비하려는 1910년대 지방통치제도 정비과정의 귀결점이었다. 면제의 시행으로 면은 도-군-면이라는 행정계열에서 국가의 최하급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자체의 공공사무를 가진 공공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면장도 도장관이 임명하는 국가의 보조기관이자 면장 수당을 면민의 부담으로 받는 공공단체로서 면사무의 담당자이기도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면직원으로서 면장과 서기, 회계원, 구장이 명시되고, 이들의 신분과 역할이 법제적으로 규정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면제 시행 이후 1920년대 들어 경기도 면직원 임면(任免)의 변화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를 보면, 면내의 수장으로서 면장의 지위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 초반부터는 서서히 신진 인물이 진출하면서 그 양상이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 (이전의) 면리장은 전부 연령과 덕망과 자격을 갖춘 자를 면리 전체에서 추천하였기 때문에 인민의 신뢰가 두터웠고, 일읍의 행정 · 사법 · 입법의 전권이 위임되고 있었다. 관위(官位)로 보자면 최하위이지만 덕망과 연령에 의하여 상급 장관에게 독립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1924년)에는 청년이나 중년의 독지가가 나와 면장이나 면서기가 되어 촌정(村政)을 담당하고 있다.[19]

18)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일.

19) 京畿道內務部地社會課, 1924, 『京畿道農村社會事情』, 48~74쪽.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면 단위의 지배방식이 인격적 지배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적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자, 일제는 다음 수순으로 면 행정을 담당할 면리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행정업무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이르면 면당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면서기의 수가 4~6명으로 증원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1916년 871명이던 면서기가 1920년에는 1,322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각 면에 배치된 면서기의 수도 조사 대상 249개 면 가운데 5명을 둔 면이 145곳으로 가장 많았고, 6명을 둔 면이 53곳, 4명을 둔 면이 32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7명 12곳, 8명 3곳, 9명 1곳이었으며, 10명 이상을 배치한 면도 4곳에 달한다.[20] 군포 지역의 경우, 시흥군 남면에는 4명, 수원군 반월면에는 6명의 면서기가 배치되었다.[21] 1927년에 이르면 반월면의 면서기는 7명으로 늘어났다. 1927년 면서기로 활동했던 인물과 각 구장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27년 남면 · 반월면 면서기와 구장 명단

지 역	직 위	성 명
남 면	면서기	박용희(朴容熙), 이명용(李明鎔), 박진희(朴陳熙), 주경식(朱景植)
	구 장	당리 이재성(李載成), 산본 이봉훈(李鳳薰), 금정 이수준(李秀俊), 당정 양재찬(梁在贊), 부곡 이진구(李鎭九)
반월면	면서기	한백영(韓百永), 주원화(朱源華), 박인순(朴仁淳), 심상범(沈相範), 민정식(閔丁植), 최창묵(崔昌默), 정운삼(鄭雲三)
	구 장	대야미 최석관(崔錫寬), 속달 정규갑(鄭圭甲), 둔대 심관섭(沈寬燮), 도마교 김홍상(金洪相)

출처 : 文鎭國, 1927, 『朝鮮全道面職員錄』, 48~49 · 82쪽.

면제를 통해 면의 행정력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일제는 면 운영 강화의 일환으로 자문기관인 '면협의회'를 두었다. 지정면이 직접 선거인 데 비해 대부분의 보통면은 군수 또는 도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면협의회에는 2,500여 면에서 선거든 임명이든 각기 8~14명의 협의회원을 두도록 하여, 면 행정에 3만여 명의 인물이 간접적으로나마 '참여' 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면협의회의 선거 또는 피선거권의 범위는 면부과금 5원 이상 납부자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대상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자, 납부 하한액을 하향조정하여 대략 면부과금 3원을 납부하는 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군포 지역의 경우 남면이 '3원 이상' 으로 조정되었고, 반월면은 '2원 이상' 으로 조정되어 당시 반월면의 면세(面勢)가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22]

이 시기 면협의회원은 임명제였다. 1927년을 기준으로 군포 지역 면협의회원을 보면, 남면 협

20) 김익한, 1996, 「192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면행정제도와 '모범부락'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93호, 160쪽.
21) 「지방청공문」,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10월 2일.
22) 「지방청공문」,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11월 17일.

의회원은 조중완(趙重完) · 사쿠마 겐지(佐熊源治) · 양재철(梁在轍) · 곽주영(郭柱英) · 문병두(文炳斗) · 한경리(韓敬履) · 김선기(金譱基) · 김순복(金順福) 등 8명이고, 반월면 협의회원은 최형묵(崔亨默) · 한준교(韓晙敎) · 주공순(朱珙淳) · 한전회(韓典會) · 한태회(韓泰會) · 정홍진(鄭鴻鎭) · 정규한(鄭圭翰) · 조희달(趙熙達) · 이교설(李敎卨) · 김교흥(金敎興) 등 10명이었다.[23]

1930년대 들어 면협의회는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었다. 면협의회 선거는 1931년 제1회 선거를 시작으로 4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면협의회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의 범위가 반월면의 경우 '면부과금 5원 이상' 이라는 종래 기준으로 회복되었고, 남면은 '4원 이상' 으로 재조정되었다.[24] 1935년 5월 면협의회원 선거에서 선출된 남면 협의회원은 이재명(李載明), 정명환(鄭明煥), 양재식(梁在軾), 윤무영(尹茂榮), 박오양(朴午陽), 이봉훈(李鳳薰), 곽주한(郭柱漢), 이□□ 등 8명이었다.[25]

1930년대 경기도의 면협의회 선거 통계와 면협의회원의 직업별 · 재산규모별 · 연령별 분포를 정리 · 수록한 『경기도도세개요』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면협의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100명당 1.6~1.7명으로 1개 면당 107명이었다. 선출된 면협의회원은 1개 면당 평균 9.4~9.5명이었다. 그들 중 재산액 5,000원(전답 20여 정보) 이하를 소유한 인물이 반수 이상이었고, 1만 원 이하(전답 40여 정보)를 기준으로 하면 그 수가 80% 정도에 달하였다. 당선자의 연령은 30~50대가 80% 이상이고,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도 30% 정도나 되었다. 이상의 통계치를 종합하면 30~50대의 중소지주나 부농들이 면협의회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26]

자료의 한계로 시흥군 남면이나 수원군 반월면의 협의회원 면면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살펴본 경기도의 전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따라서 1920년대에 이어 1930년대에도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에 동화하며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망가 2세층 혹은 유력자층을 체제 내로 포섭하려는 일제의 정책적 의도가 지역단위에서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文鍾國, 1927, 『朝鮮全道面職員錄』, 48~49 · 82쪽.
24) 「지방청공문」, 『조선총독부관보』 1931년 4월 11일.
25) 「당선된 면협의원」, 『동아일보』 1935년 5월 26일.
26) 경기도, 1936, 『경기도도세개요』, 131~133쪽.

〈표 2〉 역대 남면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시기	비고
1	이면구(李冕九)	1914~?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11월 5일
2	조중완(趙重完)	1916. 6. 1~1916. 9. 9.	
3	이규응(李奎應)	1916. 9.10~1920.12.22.	
4	곽주영(郭柱英)	1920.12.23~1927.10.26.	
5	박태선(朴泰善)	1927.10.27~1930.4.	
6	조중완(趙重完)	1930.5~1938. 7.	『조선일보』 1938년 7월 24일
7	박진희(朴陳熙)	1938. 7~1939.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38년
8	안상억(安商檍)	1939.12.15~1940. 6.28.	
9	안전성일(安田盛一)	1940. 6.29~1941.12.14.	안상억과 동일인
10	치천정(治川定)	1941.12.15~1944. 3.30.	
11	송원계순(松原啓舜)	1944. 3.31~1945.11.11.	
12	박오양(朴午楊)	1945.11.12~1947. 4.10.	
13	양재호(梁在鎬)	1947. 4.11~1960.12.26.	
14	주경식(朱景植)	1960.12.27~1962. 4.22.	
15	정창수(鄭昌洙)	1962. 4.23~1965. 1.22.	
16	류지연(柳志淵)	1965. 1.23~1968. 2.28.	
17	김종원(金鐘元)	1968. 3. 1~1973. 6. 5.	
18	이준기(李俊基)	1973. 6. 6~1976. 1.20.	
19	곽윤수(郭潤洙)	1976. 1.21~1979. 4.30.	

출처 : 군포시, 1999, 『군포시사』, 1038쪽 참조.
비고 : 『조선총독부관보』와 직원록, 신문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표 3〉 역대 반월면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심상형(沈相衡)		14	민흥기(閔興基)	1년 7개월
2	정홍진(鄭鴻鎭)		15	홍갑선(洪甲善)	9개월
3	한봉수(韓鳳洙)	1919~1926	16	민흥기(閔興基)	2년 5개월
4	심현택(沈玄澤)	1927~1928	17	이홍재(李弘載)	2년 11개월
5	조병길(趙炳吉)	1929~1931	18	주귀환(朱貴煥)	3년 2개월
6	심현택(沈玄澤)	1932~1941	19	이홍재(李弘載)	2년 7개월
7	박인순(朴仁淳)		20	정인회(鄭寅會)	1년 6개월
8	정운숙(鄭雲肅)	5년 9개월	21	김상영(金相榮)	3년 1개월
9	박기석(朴箕錫)	8개월	22	최종관(崔鍾寬)	9개월
10	한장수(韓長洙)	4년 2개월	23	김문병(金文炳)	2개월
11	박인순(朴仁淳)	3년	24	심돈섭(沈敦燮)	3년
12	심재길(沈載吉)	1년 4개월	25	민병무(閔炳武)	10년
13	정정화(鄭柾和)	6개월	26	심규범(沈揆範)	1년 5개월

비고 : 안산문화원, 2005, 『반월동향리지』.

여 백

제2장 북방면 광무호적으로 본 한말 농촌사회구조

조석곤 |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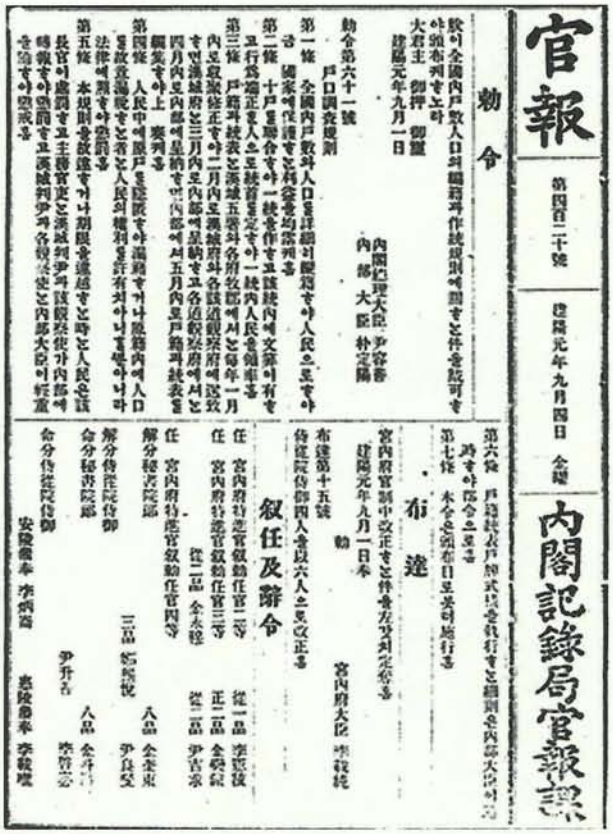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한말 군포 지역 농촌사회구조를 『북방면 광무호적(光武戶籍)』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의 호적은 호를 혈연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광무호적은 하나의 가좌(家座)에서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생활공동체를 한 호로 파악하는 조선시대의 호구 파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근대적인 호적제도에서는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광무호적의 경우, 갑오개혁에 의한 신분제 철폐에 따른 호적 양식의 대폭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서 조선시대의 그것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형식면에서는 확실히 드러내면서도, 호적이 가지는 조세징수의 기초 대장(臺帳)이라는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인구 파악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지는 못하였다.[1]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광무호적과 광무양안의 정보를 연결시켜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은 가족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2]

1) 조석곤, 1990, 「광무년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74쪽.

2) 북방면 호적을 이용한 기존 연구는 적지 않다. 이영훈은 광무양안에 기록된 시주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북방면의 양안과 호적을 비교 분석한 바 있고(이영훈, 1992, 「광무양전에 있어서 '시주' 파악의 실상(2)」, 『성곡논총』 제23집, 성곡학술문화재단), 이세영도 광무양안과 광무호적을 동시에 분석하면서 광무시기 농촌사회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이세영, 1995, 「대한제국기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한국문화』 제16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오성은 『북방면 광무호적』만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당시 농촌지역 호의 구성을 살펴보았다(오성, 2001, 「호적으로 본 한말 농촌지역의 호의 구성」,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8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 광무호적 작성의 배경

조선시대 호적대장(戶籍臺帳) 작성의 주목적은 호구 조사와 신분 파악이었다. 당시에 호는 군역이나 공물 납세의 기본 단위여서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엄격한 신분제 질서가 사회체제 유지의 근간이던 조선사회에서 호적대장이 갖는 중요성은 작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호구 파악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도 적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정부재정도 핍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도 지속되었다.


官報
第四百二十號 建陽元年九月四日 金曜
內閣記錄局官報課

勅令
敕令全國內戶數人口의編籍과作統規則에關ᄒᆞᆫ件을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ᆫ노라
大君主 御押 御璽
建陽元年九月一日
內閣總理大臣 尹容善
內部大臣 朴定陽

勅令第六十一號
戶口調査規則
第一條 全國內戶數와人口를詳細히調査ᄒᆞ야人民으로ᄒᆞ야금 國家에任擔ᄒᆞᆫ義務를均等케ᄒᆞᆷ
第二條 十戶를聯合ᄒᆞ야一統을作ᄒᆞ고統內에文筆이有ᄒᆞᆫ者로行爲端正ᄒᆞᆫ人으로統首를定ᄒᆞ야一統內人民을領率ᄒᆞᆷ
第三條 戶籍과統表는漢城五署와各府牧郡에서는每年一月內로成冊ᄒᆞᆷ을正ᄒᆞ야二月內로漢城府와各該道觀察府에送致ᄒᆞᆷ을得ᄒᆞᆫ者는三月內로內部에呈納ᄒᆞᆷ을ᄒᆞ고各道觀察府에서는四月內로內部에呈納ᄒᆞᆷ을ᄒᆞ고內部에서五月內로戶籍과統表를編集ᄒᆞᆷ을ᄒᆞ야上 奏列ᄒᆞᆷ
第四條 人民中에戶主가되야漏籍ᄒᆞᆷ을ᄒᆞ거나或籍內에入ᄒᆞᆫ故意로漏脫ᄒᆞᆫ者는人民의權利를喪失케ᄒᆞᆫ法律에照ᄒᆞ야論罰ᄒᆞᆷ
第五條 本規則을故違ᄒᆞ거나期限을逾越ᄒᆞᆫ者는人民을該長官이處罰ᄒᆞᆷ은主務官吏로ᄒᆞ야금漢城裁判所와各該裁判所가內部에報告ᄒᆞ야內部로ᄒᆞ야금處罰케ᄒᆞᆷ을要ᄒᆞᆫ者는內部大臣이經置ᄒᆞᆷ을要ᄒᆞᆫ事

第六條 戶籍統表戶籍式은別表에依ᄒᆞ야製出ᄒᆞᆷ을要ᄒᆞᆫ事는內部大臣이定ᄒᆞᆷ을要ᄒᆞᆫ事
第七條 本令은頒布日로施行ᄒᆞᆷ을要ᄒᆞᆫ事

布達
宮內府官制中改正ᄒᆞᆫ件을左開ᄒᆞ야公布케ᄒᆞᆷ을要ᄒᆞᆫ事
建陽元年九月一日奉
勅
宮內府大臣 李載純

布達第十五號
侍從院侍御四人을以六人으로改正ᄒᆞᆷ을要ᄒᆞᆫ事

叙任及辭令
任 宮內府特進官叙勳任官二等 從一品 李鎭祐
任 宮內府特進官叙勳任官三等 正一品 金炳始
任 宮內府一等官叙勳任官四等 從二品 尹容善
任 宮內府特進官叙勳任官四等 從二品 金永根
解分侍從院侍御 三品 閔泳煥
命分侍從院侍御 六品 金永東 尹昌燮
解分秘書院郎 尹升吉
命分秘書院郎 李晉憲
安陵僉奉 李炳喆
嘉陵參奉 李敎曦

1896년 9월 1일 칙령 제16호 「호구조사규칙」

개항 이후 한국사회는 종래와는 다른 사회경제체제와 조우하면서 내적 변화를 강요받게 되었다. 자본주의체제와의 만남은 전통적인 소농경제에 기초한 조선사회의 생산 및 분배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상업의 발달과 서구사상의 유입으로 종래 신분제를 기초로 한 사회질서도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그 자율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갑오개혁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 개혁적 성격은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굴곡을 겪었으며, 광무정권에서도 '구본신참(舊本新參)'이라는 이름 아래 내용상의 변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징세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도 시도되었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에 비해서 1896년 이후 호적제도는 형식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 글에서 이용하는 광무호적은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공포된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작성되었다.[3] 이 규칙에서는 "전국 내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하야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보

호하는 이익을 균점케 함"이라고 하여 호구조사의 목적이 호수와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호수나 인구를 누락시키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호구조사사무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하여 1896년 9월 3일 내부령 제8호로 「호구조사세칙」이 제정되었다. 호적 작성을 위하여 동리에는 존위(尊位)를 두고 면 단위에서는 집강(執綱)이 이를 수집하여 각 부군에 보고하면 관찰부를 경유하여 내부에서 수집하는 계통을 수립하였다. 각 호적은 좌우 동형으로 작성하여 한 부는 관청에 보관하고, 한 부는 호주가 갖도록 하였다. 각 호는 호패를 대문에 게시하도록 하고, 통수(統首)는 각호의 남녀 인구와 가택의 칸수를 기입한 통표를 위 계통에 따라 보고하였다.

당시 호구조사에는 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조항도 포함되었다. 호주의 부모 · 형제 · 자손이라 하더라도 각 호에 분거하여 호적이 따로 있으면 그 호적에 기록하지 않도록 하여 인구가 중첩되는 것을 막았으며, 너무 빈한하여 자신의 호적을 갖지 못하면서 친지의 집에 기거하는 경우에는 기구(寄口)에 포함시켜 인구 누락을 막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던 이 의도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관철되지 않았다.

2. 『북방면 광무호적』의 양식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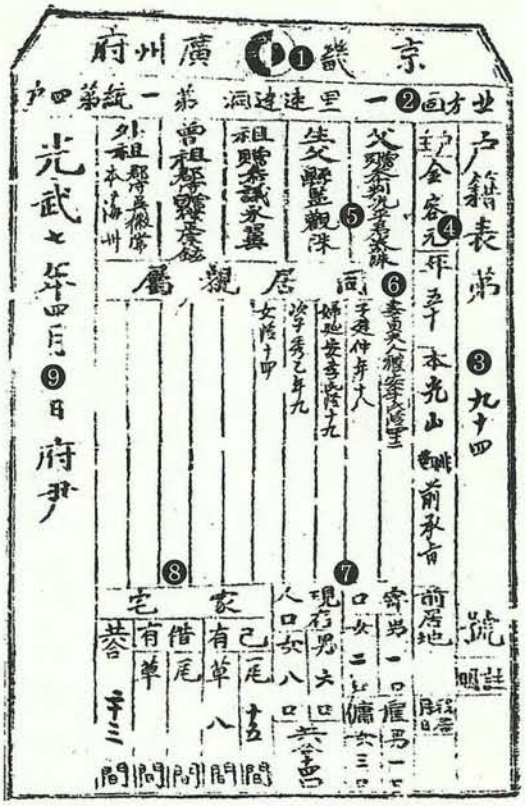
이제 호적표 양식을 중심으로 『북방면 광무호적』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호적표의 최상단('『북방면 광무호적』 양식' 그림의 '①')에는 호적 작성의 주체가 되는 부군명을 기입하였다. 가장 좌측(그림의 '⑨')에는 작성자와 작성 시기를 기입하였는데, 당시 북방면은 광주에 속했기에 이 호적들이 광주부윤 명의로 1903년 4월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적의 말미에는 작성자인 광주부윤서리 양주군수 홍태윤의 서명이 있다.

다음으로 호적표의 상단 두 번째 줄(그림의 '②')에는 행정구역의 명칭과 통호수를 기재하였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작통방법은 5호를 1통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광무호적의 경우에는 10호를 1통으로 편제하였다. 호가 모자라는 경우 리를 넘어서서 통을 편제하는 경우도 있지만,[4] 이 경우는 예외적이며, 대개 통의 편제는 리 단위로 이루어졌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 리의 호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했던 것은 아닌지 여겨지는 부분이다. 편제 순서로 보면 속달2리 20호, 팔곡1리 40호,

3) 이하 광무호적 작성의 배경이 되는 제도 변화에 관한 서술은 조석곤, 1990, 「광무년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46~150쪽을 참고하였다.

4) 대야미리의 3통에는 둔대동의 2호가 포함되어 있다.

팔곡2리 30호, 속달1리 10호, 대야리 28호, 둔대동 52호, 도마리 20호,[5] 건건리 60호, 속달3리 17호였다. 속달3리의 경우 호수가 모자라 통수를 적는 난에 '완성되지 않은 통[未成統]'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북방면 광무호적」 양식

호적표의 가장 우측(그림의 '③')에는 북방면 전체 호적표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북방면 호적표의 총수는 277호였다. 마지막 호적표 다음에는 면의 합계를 기재하였는데, 인구는 총 277호에 남자 706명, 여자 623명, 합계 1,329명이라고 기재되었고, 가옥의 규모는 기와 111칸, 초가 1,305칸, 합계 1,416칸이라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일부 호적표에 기재된 현존인구와 각 양식에 기록된 내역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 통계 수치에는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다.[6] 이 글에서는 호적표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남자 708명, 여자 623명, 합계 1,331명으로 계산하였으며, 가옥의 규모도 기와 111칸, 초가 1,300칸으로 합계 1,411칸으로 나타났다.

호적표의 우측 두 번째 행(그림의 '④')에는 호주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성명과 나이, 본관 및 직업을 기재하였다. 이전 거주지와 이전 일시를 기재하는 란도 있지만 북방면의 경우 이것이 기재된 호적표는 없었다. 호주들의 직업은 농업이 대부분으로, 총 240호(86.6%)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대부라는 직역이 표시된 호가 21호(7.6%)였다. 진사의 칭호를 가진 호도 7호 있었으며, 금부도사, 승지[7] 등의 실직을 역임한 호도 있었다. 집강, 지사, 주사 등의 향임의 직책을 표시한 호도 있었다.

그런데 『북방면 광무호적』에는 사대부를 포함하여 양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호가 상당히 많지

5) 『북방면 광무호적』 중 184번째 구연성의 호적표에는 거주지가 대야리로 기록되었으나, 이 호적표가 대야리와는 동떨어진 채 도마리의 호적표들 사이에 위치하고, 도마리에 능성 구씨가 세거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도마리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6)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세영은 인구를 1,330명으로 계산하였고(이세영, 1995, 「대한제국기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한국문화』 제16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80쪽), 오성은 1,325명으로 계산하였다(오성, 2001, 「호적으로 본 한말 농촌지역의 호의 구성」,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8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1쪽).

7) 속달1리에 거주하는 김용원의 호(戶)인데, 그의 부친은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외조는 군수를 역임하였다.

만, 이는 직역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1909년 『민적통계표』의 자료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민적통계표』는 1909년에 공포된 「민적법」에 입각하여 실시된 민적조사의 결과를 집계하여 1910년에 발간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당시 북방면에는 총 531호에 남자 1,307명, 여자 1,176명, 합계 2,48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직업별로 보면, 관공리 1호, 양반 3호, 상업 13호, 기타 2호 외에 나머지 516호는 농업이었다.[8] 직업의 총수는 535호로 총호보다 4호가 많은데, 이는 겸업을 하는 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북방면 광무호적』과 『민적통계표』의 북방면 호수 및 인구 비교 (단위 : 명, %)

구분	호수	인구		
		계	남	여
민적통계표(A)	531	2,483	1,307	1,176
북방면 광무호적(B)	277	1,331	708	623
비율(B/A)	52.2	53.6	54.2	53.0

『북방면 광무호적』을 『민적통계표』와 비교하면 호수는 52.2%, 인구는 53.6% 정도에 불과하다. 광무호적은 『민적통계표』에 비해 인구 파악의 정확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9] 또한 『민적통계표』의 호수가 거의 두 배임에도 양반 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3호에 불과한 반면, 광무호적에는 사대부만 해도 21호로 나타난다. 이것을 보면, 광무호적의 직업 기재가 더 너그러웠다고 추측할 수 있다.

호적표의 우측에서 세 번째 행부터는 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상단에는 호주의 4대조 성명까지 기록하였고, 중단에는 동거하고 있는 친속(親屬)의 정보를, 하단에는 함께 거주하는 비혈연 인구 및 주택의 칸수를 기입하고 있다.

먼저 상단(그림의 '⑤')의 정보에 대해 살펴보자. 과거의 호적에서는 호주와 그 처의 4대조까지 직역과 함께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광무호적에서는 호주 자신의 4대조와 외조부만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외조부의 경우에는 본관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과거와 달리 광무호적에서는 직함 없이 성명만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법제적으로 철폐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 호에 속한 노비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성명과 부모까지 밝혀 그 신분을 명확히 하였지만, 광무호적에서는 숫자만 기록하도록 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직역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는데, 금부도사, 승지 등의 실직이 기록된 호적표가 그러한 사례이다. 한편, 4대조의 이름을 적는 란에는 생부의 이름을 적게 하였다. 조선시

8) 이헌창, 1997,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78쪽.

9) 학계에서는 『민적통계표』조차 인구 파악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실제 인구의 60~70%만을 파악하였다고 본다.

대에는 가계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관습이 매우 일반적이었는데, 『북방면 광무호적』에도 생부가 기입된 호적이 23호(8.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생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

중단(그림의 '⑥')에는 동거친속에 관한 정보를 관계, 성명, 나이의 순으로 기재하였다. 동거친속의 숫자가 5명 이하인 경우가 253호로 전체의 90%를 넘었으며, 10명 이상인 호수는 2호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호적의 편제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가족구조는 방계혈족이 동거하는 확대가족 체제라기보다는 직계혈족만이 동거하는 핵가족 또는 소가족 형태가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단(그림의 '⑦')에는 함께 거주하는 친족이 아닌 사람들을 이름 없이 숫자만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가옥의 규모도 기록하게 하였다. 친족이 아닌 동거인은 기구(奇口)와 고용(雇傭)으로 나누고 남녀별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재방식은 조선시대의 호적이나 현재의 호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건양호적(建陽戶籍)과 광무호적의 고유한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기구에 대해 「호구조사세칙」에서는 집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호적을 만들지 못하고 아는 사람의 집에 기거하거나 혹은 기식(寄食)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습에 따르면 이들은 협호(挾戶)로서, 주호가(主戶家)와 주노(主奴)관계를 맺어 왔던 노비 출신들이거나, 조선 후기 이래 농민층 분해로 양산된 빈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0] 고용은 기구와는 달리 장기간 계약관계에 의해 고용되는 자로 추정되는데, 흔히 머슴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호적표에 가택의 규모(그림의 '⑧')를 기재하도록 한 것도 역시 특이한 방식이다. 이는 호를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일종의 생활공동체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 사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수령이 선정을 펴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의 하나로 『가좌성책(家座成冊)』 등을 만들어 가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호적에 가택의 규모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옥은 자기 집인지 임차한 집인지를 구분하였고, 그 각각에 대하여 초가와 기와집을 구분하였다. 이로써 대략의 경제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우리는 광무호적 양식을 통하여 광무시기 호구조사사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 규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호구조사의 목적은 인구의 정확한 파악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조사과정에서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또한 호를 생활공동체와 경제 단위로 파악하는 관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봉건적인 신분관계를 확인하고 증명하려는 자료라는 조선시대 호적의 주요 기능은 광무호적에서는 현저하게 약화되었지만, 호를 생활공동체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무호적은 여전히 조선시대의 호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이세영, 1995, 「대한제국기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한국문화』 제16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80쪽.

3. 북방면 농촌사회구조의 특성

『북방면 광무호적』에 나타난 지명은 속달1 · 2 · 3리, 팔곡1 · 2리, 둔대동, 대야리, 도마리, 건건리 등 9개 동리였으나 여기서는 현재 행정구역과의 비교 이해를 위해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의 동리인 대야미리(대야리 및 속달1리), 속달리(속달2 · 3리), 둔대리, 도마교리, 팔곡리(팔곡1 · 2리), 건건리 등 6개 리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중 팔곡리와 건건리의 경우, 현재는 안산시에 속하지만 분석의 편의상 함께 검토하였다.

1) 인구의 구성과 성격

『북방면 광무호적』에 나타난 호수는 총 277호였으며, 호주와 동거친속의 수는 남자 610명, 여자 489명, 합계 1,099명이었다. 기구와 고용을 합한 총인구는 1,331명으로, 호당 평균 인구는 4.8명 수준이었다. 호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속달리로서 7.9명인데, 이는 비혈연 동거인, 즉 기구와 고용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속달리는 호주와 동거친속만의 호당 인구로 보면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4.8명 수준이었다.

〈표 2〉 북방면의 리별 호구 구성

(단위 : 명)

구분 / 리	호수	총인구			호주 및 동거친속		기구		고용		호당 인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속 달 리	37	293	161	132	104	73	27	28	30	31	7.9
팔 곡 리	70	354	174	180	147	125	23	42	4	13	5.1
대야미리	38	188	96	92	91	81	1	4	4	7	4.9
둔 대 리	52	181	101	80	100	77	0	0	1	3	3.5
도마교리	20	90	53	37	45	31	5	3	3	3	4.5
건 건 리	60	225	123	102	123	102	0	0	0	0	3.8
계	277	1,331	708	623	610	489	56	77	42	57	4.8

출처 : 『북방면 광무호적』.

4.8명의 호당 인구는 여타 지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조사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북방면의 호당 인구는 당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0] 여기에 기록된 인구가 실제 북방면 인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론부터 말

하자면 이 인구는 실제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인구의 정확한 파악이 조사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인구가 누락된 것은 단순한 조사상의 착오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구를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호적이 호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리별로 거의 10호 단위로 호수가 결정된 것 역시 호의 편제방식이 실제호라기보다는 편제호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북방면 호수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1759년 『여지도서』의 편호는 317호에 1,511명이었고, 1836년에 발간된 『남한지(南漢誌)』에는 327호 1,362명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1898년에 호포전이 부과된 호수는 245호였던 반면, 1899년 『광주부읍지』에 기재된 호수는 449호였다.[12] 19세기 초반까지 300여 호를 상회하던 호수가 19세기 후반이 되면 250여 호 수준으로 하락한 셈인데, 1898년의 245호와 1899년의 449호는 조사상의 차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현저하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1898년의 245호가 호포전이 부과된 호수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00년 작성된 『북방면 광무양안』에 따르면 북방면의 원 호수는 270호인데, 사기호(査起戶)의 수는 421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기호란 광무양전 조사 시에 토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원칙 아래 조사 파악된 실제 호수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899년의 449호는 실제 호수에 근접한 것이며, 『북방면 광무호적』에 등재된 277호는 과세대상이 되는 호수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요컨대 광무시기에 작성된 호적과 양안의 호구 파악방식은 서로 다른 것이었다. 개략적으로 본다면 양안은 호구의 실총(實總)을 반영하였던 반면, 호적은 과세대상이 되는 원총(元總)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무호적에 등재된 277호는 북방면 전체 호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호들은 과세 능력이 있는 호로서 국가가 파악하는 호였다. 경제력이 없는 영세 가호들은 어떤 호에 기구의 형태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호구조사의 대상에서 누락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호구 파악방식의 관행을 답습한 것이었다.

〈표 3〉 호주 및 동거친속의 성별 ·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성별 \ 연령	계	14세 이하	15~60세	61세 이상
계	1,099(100.0)	118(10.7)	883(80.4)	98(8.9)
남	610(100.0)	82(13.4)	478(78.4)	50(8.2)
여	489(100.0)	36(7.4)	405(82.8)	48(9.8)

출처 : 『북방면 광무호적』.

11) 오성의 연구에 의하면, 15곳의 광무호적을 비교한 결과, 호당 인구는 3.13명부터 5.24명까지 다양하였는데, 북방면의 경우는 황해도 곡산군 봉명면의 5.24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였다(오성, 2001, 「호적으로 본 한말 농촌지역의 호의 구성」,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8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6쪽).

12) 이세영, 1996, 「대한제국기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한국문화』 제16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68쪽.

『북방면 광무호적』에서 인구를 과소평가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여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 및 동거친속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4.50% 정도인데,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 인구에 대한 과소평가가 두드러진다. 〈표 3〉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은 낮으며, 특히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에서 여성은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14세 이하인 여자 아이의 경우 아예 호적에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를 보면 아들은 227명인 반면, 딸은 32명에 불과하였고, 손자가 38명인 반면, 손녀는 7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여아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누락이 인구 과소평가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

2) 가옥과 호

호별 가옥 규모와 호주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277호의 총 가옥규모는 1,411칸이었으며, 그 대부분은 초가였다. 호당 칸수는 5.1칸으로 조선시대 평균 가옥규모인 초가 3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주택의 칸수는 초가 5칸이었다. 호당 평균 칸수가 가장 큰 동리는 속달리로 6.3칸에 달하였다. 기구나 고용 등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 칸수도 많은데, 양자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4〉 북방면의 동리별 가택 현황

(단위 : 칸, 호)

구분 / 리	호수	합계			자가(自家)			차가(借家)			호당 칸수
		계	기와	초가	계	기와	초가	계	기와	초가	
속 달 리	37	234	49	185	228	49	179	6	–	6	6.3
팔 곡 리	70	395	22	373	395	22	373	–	–	–	5.6
대야미리	38	209	5	204	209	5	204	–	–	–	5.5
둔 대 리	52	219	–	219	219	–	219	–	–	–	4.2
도마교리	20	107	–	107	107	–	107	–	–	–	5.4
건 건 리	60	247	35	212	212	–	212	35	35	–	4.1
계	277	1,411	111	1,300	1,370	76	1,294	41	35	6	5.1

출처 : 『북방면 광무호적』.

그런데 이처럼 가옥 규모가 큰 것이 실제 북방면 지역의 가구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 앞서 광무호적은 편제호를, 광무양안은 실제호를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가택의 존재형태와 연결시켜 본다면 실제의 주택상황은 광무양안이 광무호적보다 실상을 더 정확하게 반영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광무양안과 광무호적에 나타난 주택 칸수를 비교한 것이다. 광무양안에는 총 421호의 대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평균 칸수는 4.2칸이었다. 하지만 표준적인 주거형태는 초가 3칸이 250호(59.4%)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양안에 기재된 주택의 칸수가 실제의 주택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표 5〉 광무양안과 광무호적의 북방면 주택규모 비교

(단위 : 칸, 호)

구분	총 칸수	칸수별 호수									
		계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이상
광무양안	1,751	421	26	250	12	67	2	42	5	–	17
광무호적	1,411	277	20	67	41	71	27	21	8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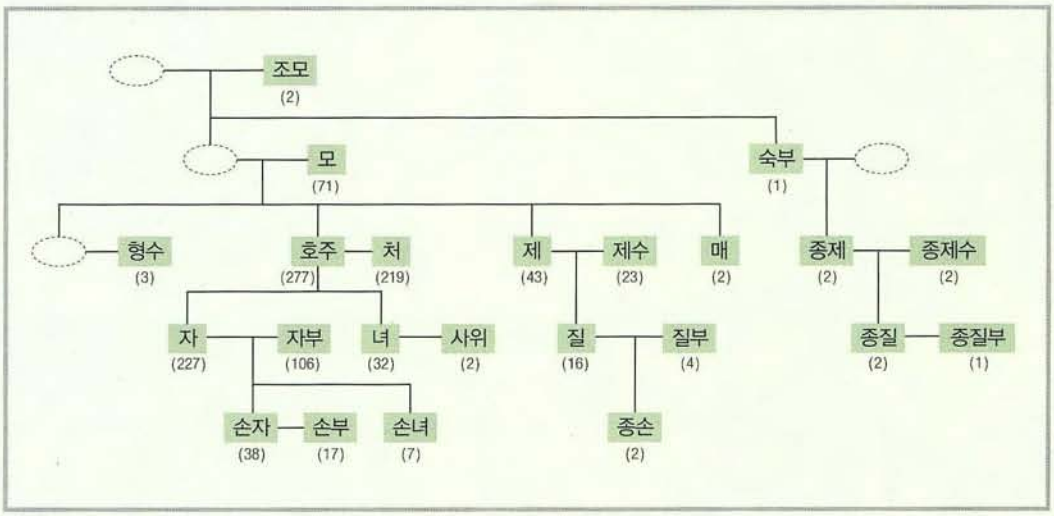
출처 : 『북방면 양안』; 『북방면 광무호적』.

광무호적의 호주들은 3호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광무양안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광무양안의 421호 중에서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가옥은 242호(57.5%)로 자가 거주자보다 오히려 더 많다. 특히 초가 2칸 26호 중에는 23호가, 초가 3칸 250호 중에는 173호가 차가로서 가옥규모가 작을수록 자가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차가 거주 242호의 칸수를 모두 합하면 846칸에 불과하여 호당 3.5칸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생활수준이 낮은 영세농들의 경우는 자가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열악하였음을 광무양안은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실상이 광무호적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광무호적에 등장한 호가 실제호가 아닌 편제호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안상의 시주(소유자)명 혹은 시작(경작자)명과 호적의 성명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호적에 기재된 호주의 성명은 실명일 가능성이 많지만, 양안에 기재된 시주 혹은 시작의 성명은 호명(戶名)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대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록되는 경우도 완전히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도마교리의 호적상의 호수는 20호인 데 반해, 광무양안상에는 35호가 존재한다. 그중 11호는 차가이며 24호는 자가이다. 호적과 양안상의 소유자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성별 분포에서는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 호적의 경우 구씨 6명, 김씨 2명, 박씨 9명, 원씨 1명, 이씨 2명인데, 양안상의 성씨는 구씨 9명, 김씨 1명, 박씨 9명, 오씨 2명, 원씨 1명, 유씨 1명, 이씨 2명이다. 오씨와 유씨를 제외하면 성씨는 모두 동일하며, 인원의 비중도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 가족구조

『북방면 광무호적』에서는 각 호와 그 구성원의 가족관계가 드러난다. '『북방면 광무호적』에 나타난 가족구조' 그림은 호적에 등재된 동거친속 중 호주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의 수를 가계도 형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는 호주를 기준으로 조모부터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친 가계가 표현되어 있는데, 조모와 동거한 두 가구의 경우는 호주의 자녀가 없어 3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조모와 동거하는 두 가구는 11번째 정진옥과 184번째 구연성이다. 전자는 조모를 모시고 호주의 부부가 동생 두 명과 거주하고 있었다. 후자는 조모뿐만 아니라 모친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부부와 동생 부부도 함께 등록되어 있었다. 4대가 동거하는 호는 전체 277호 중 유일하게 1호가 존재하였다. 4대가 동거하는 경우는 143번째 주유옥의 호인데, 호주의 처는 없으며 모친을 모시고 역시 처가 없는 아들과 그의 자식인 손자 부부와 거주하고 있었다. 결국 광무호적에 기재된 북방면의 가족 형태는 단 1호의 예외를 제외하면 3대를 넘어서지 않는 가족 형태를 유지하였다.



『북방면 광무호적』에 나타난 가족구조[13]

가족구조 그림의 오른쪽은 부계의 방계혈족이 같은 호적에 올라 있는 경우를 표시한 것인데, 전체 1,099명 중 8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물었다. 특히 숙부가 등록되어 있는 호는 110번째 송성호의 호인데, 호주 부부와 그들의 아들 부부가 살면서 숙부(숙모는 없다)를 자신의 호에 등록한 형태이다. 당시 숙부의 나이는 62세였으며 후사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이 호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

13) 괄호 안의 숫자는 인원을 의미하며, 점선 타원형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한 것이다.

다. 후사가 없는 경우라도 단독호로 분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방면 광무호적』에 1인호가 4호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4호의 호주들도 모두 나이가 20대였으므로 호적에 숙부가 등재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사촌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50번째 민세호는 처가 없으며, 아들 부부, 동생 부부, 사촌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호구를 구성하고 있다. 66번째 박일진도 아들 부부, 사촌동생 부부 및 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사촌동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도 두 사례가 나타나는데, 앞서 언급한 사례와 4번째 정관묵의 사례가 있다. 그는 처는 사망하였으며, 홀아비인 아들 및 손자 부부 2쌍과 조카 부부, 종질 부부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두 사례에서 종질의 나이는 20세 및 21세로서 독립호를 구성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약하여 분호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부계의 방계혈족이 한 호적에 기록되는 것은 광무호적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로써 광무호적의 호구구성은 호주의 직계자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수나 손아래 자매가 동거친속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형이 사망하고 혼자 된 형수가 기록된 경우는 3건인데, 6번째 정완진 및 124번째 송병섭은 자신의 부부와 형수가 함께 거주하였고, 153번째 심상형은 자신의 가족(부부 및 아들)과 형수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형수의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부는 독립호를 만들지 않았던 종래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손아래의 어린 여동생이 기록된 경우는 2건이다. 97번째 백낙진은 어머니와 동생, 어린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222번째 한백항은 자기 처와 여동생이 호적에 있었고, 여동생의 나이는 각각 12세 및 9세였다.

그렇다면 호주인 부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형제의 호는 분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까? 『북방면 광무호적』에는 동일한 아버지의 형제들이 별도의 호적을 가진 경우가 9건에 19호가 존재한다.[14]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형제가 분호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었던 것은 아니다. 결혼한 호주의 동생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호에 기록된 경우도 23호 존재하며, 결혼하지 않은 동생까지 포함한다면 총 43호가 있기 때문이다.

동생 부부가 등재된 경우에 그들의 자녀까지 기록된 사례도 있는데,[15] 그 수는 자신의 자녀가 기록되는 경우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동생이 호주보다 어려서 그들의 자녀수가 적었기 때문이거나 가족을 꾸릴 정도의 경제규모가 되면 별도의 호로 분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것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조카며느리가 기재된 경우도 4건이었고, 조카의 아들이 기재된 경우도 2건이 있었다.

14) 구복호의 자제인 한조 · 욱조, 박상래의 병길 · 창선, 박의래의 병순 · 병호 · 병의, 박학래의 병상 · 병식, 송인호의 영하 · 영순, 송종록의 병호 · 원호, 송종순의 만원 · 배원, 이지연의 두봉 · 소봉, 최경지의 원호 · 창손 등이 그들이다.

15) 사실 동생의 여식이 기록된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아들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재방식으로부터 유추할 때 자신의 형제가 한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이 사망할 경우 형제간에 분호되는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또한 현실이었다. 호적을 구성하는 주된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되는 핵가족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손자녀로 이루어지는 직계혈족의 확대가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성장하고 있던 소농체제는 이러한 핵가족 또는 직계혈족의 확대가족만으로도 충분한 재생산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상의 변화가 광무호적에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생의 부부가 포함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 유제의 답습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앞서 우리는 호적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표현하는 편제호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동생의 부부가 한 호적에 함께 편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가옥에서 별도 생활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음을 광무양안의 가옥형태는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호로 편제되어 있었던 이유는 생산수단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수단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독립적인 경영체로서 자신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형제를 한 호로 묶어서 파악하던 조선시대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위가 호적에 기재된 사례는 2호가 존재하는데,[16] 이와 같은 기재방식은 생활공동체 단위로 호를 편제하는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위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 이름의 호적을 가져야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그를 장인의 호적에 편제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호적표에 나타난 성씨의 분포를 보면, 도마교리에는 능성 구씨 · 밀양 박씨, 대야미리에는 여산 송씨, 속달리에는 동래 정씨, 둔대리에는 광산 김씨 · 청송 심씨 · 문화 류씨 · 능성 주씨(신안 주씨),[17] 건건리에는 인동 장씨 · 창녕 조씨 · 청주 한씨, 팔곡리에는 여흥 민씨 · 해주 오씨 · 광주 이씨 등이 대성으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속달리 동래 정씨는 가장 유력한 양반가였다.[18] 또한 호적에 기재된 기구 · 고용의 수를 보면 속달리의 동래 정씨와 대야미리 등지의 광산 김씨가 대지주로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한 사회적 ·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19]

앞서 대성으로 언급한 14개 성씨는 『북방면 광무호적』에 나타난 전체 본관성씨 53개의 26.4%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차지하는 총 호수는 190호로 전체의 68.6%를 차지한다. 또한 2호 미만인 본관성씨는 31개로 절반 이상이지만, 그 총 호수는 37호로 13.4%에 불과하다. 이러한 본관의 집중현상

16) 64번째 임득현은 자신의 부부와 아들부부 2쌍 및 사위부부 1쌍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67번째 조인길은 자신의 부부, 아들 부부 및 딸 부부 등 3쌍의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7) 능성 주씨는 속달리에 9호, 둔대리에 12호 등이 나타나며, 군포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18) 이세영, 1996, 「대한제국기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한국문화』 제16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86쪽.

19) 오성, 2001, 「호적으로 본 한말 농촌지역의 호의 구성」,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8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7쪽.

은 어느 정도 실상을 반영하고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과다 집중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경제력이 취약한 일부 타성붙이들이 기구나 고용의 형태로 호적에 은폐되어 있던 사정이 호적표의 본관성씨가 특정 가문에 집중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4. 광무호적의 특징과 의의

이상으로 현재의 대야동 일대인 한말 북방면의 광무호적 분석을 통하여 당시 농촌의 사회경제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북방면 광무호적』은 1903년 4월에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총 277호에 호주 및 동거친속 인구 1,099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외에 비혈연 동거인을 포함할 경우에는 1,331명의 인구가 등재되어 있다.

호적표의 작성방식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호구와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무호적에는 그러한 법 원칙이 현실적으로 관철되지는 않았다. 또한 호주의 4대조와 외조부의 성명을 기입하여 그 출신 관계를 명확히 하였지만, 조상의 직역을 적지 않음으로써 신분제적 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의 호적과 차이를 보였다. 동거친속의 경우에는 호주와의 관계, 성명, 나이 등을 적도록 하였으며, 비혈연 동거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구인지 고용인지를 남녀별로 구별하여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가옥의 규모를 기와 · 초가 여부와 자가 · 차가 여부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재양식으로부터 우리는 광무호적이 생활공동체로서 호를 파악하는 조선시대의 호적제도와 혈연공동체로서 호를 파악하는 일제시대 이후의 호적제도를 잇는 과도기적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방면 광무호적』이 파악하였던 인구 수준은 당시 북방면에 실제 거주한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법 규정과 달리 조사 실적이 이처럼 현실과 크게 괴리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 첫째, 호적 작성의 목적 중 하나가 조세징수대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때문에 호적에 등재되는 호구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지녀야 한다는 조선시대 이래의 관행이 광무호적에도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북방면 광무양안』에는 421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본다면 양안에 나타난 호구는 실제호였으며, 호적에 나타난 호구는 편제호였을 것이다. 둘째, 여성의 비율이 낮은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유소녀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호적이 남성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 여성에 대한 기록이 소략한 점 또한 인구를 과소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호가 3대 이내의 가족구성을 보이며, 부계의 방계혈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과부나 나이든 홀아비는 단독호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선시대의 관행 때문에 부계혈족이 함께 편호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었다. 부친이 사망한 경우 형제가 같은 호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호되어 독립호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가족구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조선 후기 소농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부와 직계자손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기본적인 생활단위가 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아직 핵가족만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력이 취약한 가구는 혈연관계인 형이나 부친의 호적이 있는 경우 그 호적에 함께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구나 고용의 형태로 주인집의 호적에 등재되어 자신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전환기를 맞은 한국 농촌사회의 구조는 정확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광무호적은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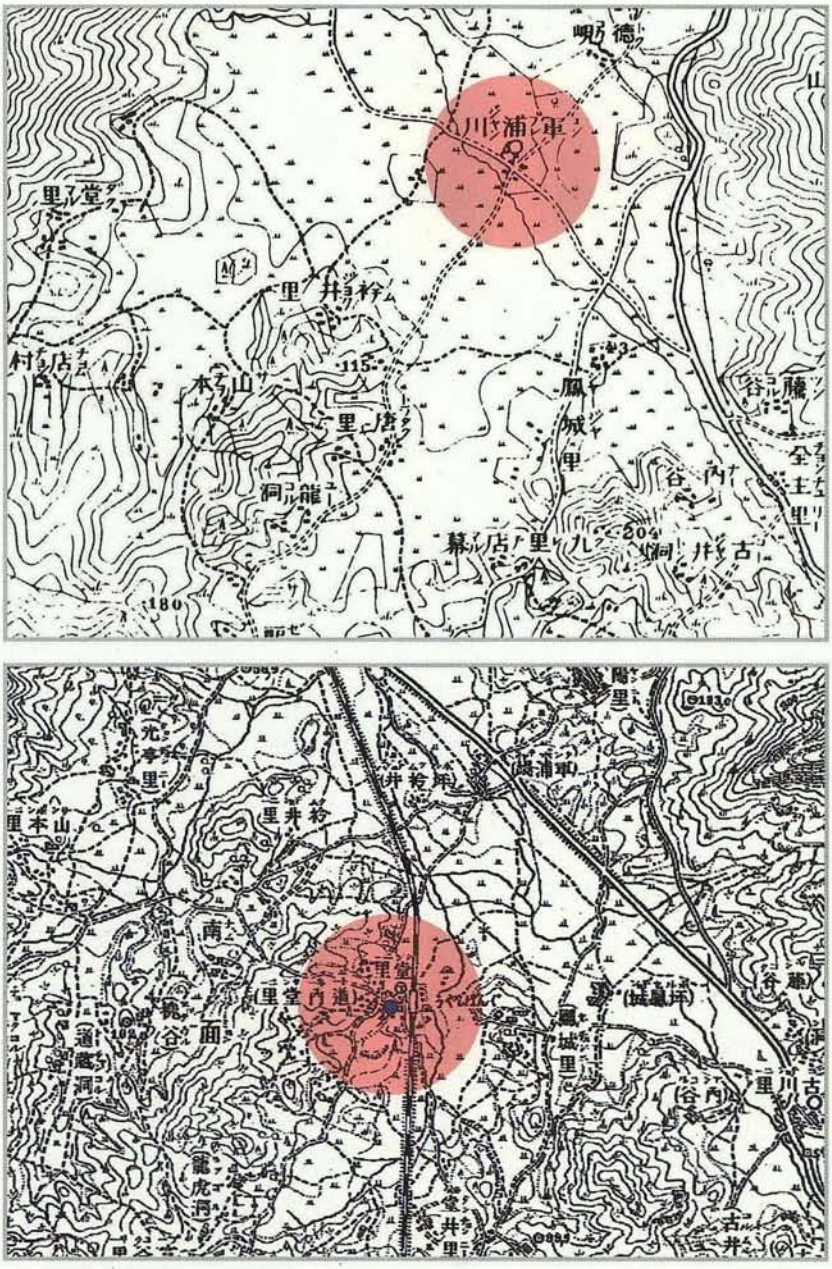
제3장 경부철도 부설과 지역사회 변화

정재정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군포 지역의 중심은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의 군포1동(당동)으로 옮겨졌는데 그 계기는 경부철도의 부설과 군포장역의 설치였다. 이때부터 차츰 지역의 중심지가 역 주변으로 이동했다. 경부철도가 운수영업을 전개하면서 군포 지역은 서울의 나들이 코스가 되었다. 한 예로 1910년 초 서울 주재 영국 · 러시아 · 프랑스 영사는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를 타고 군포장 방면에 와서 사냥을 한 후 포획물을 휴대하여 돌아갔다.[1]

경부철도의 부설과 군포장역의 설치가 군포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경부철도가 어떤 경위를 거쳐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지, 경부철도의 운수영업이 이 지역 주민의 이동과 물자의 유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경부철도가 이 지역의 주거환경과 행정조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군포시는 몇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넓게 보면 오늘날 군포시와 인접한 안양시, 의왕시 등과 경부철도의 관계를 함께 고찰해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잡보」, 『황성신문』 1910년 1월 12일.



경부철도 부설 전후 경관 및 중심지 변화

위 지도는 대한제국기 1:50,000 지형도(1911년 발행)이고, 아래 지도는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1919년 발행)이다. 지도상에 나타난 지명에는 잘못 기록되거나 현재와 다른 것도 나타나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 두 시기 군포 지역의 경관과 중심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에는 현재 구군포라고 불리는 서이면 도양리(현재 군포시와 경계인 안양시 호계동 일부)가 교통 중심지이자 시장이 있어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경부철도가 지역을 관통하며 동서로 나누고 있으며, 군포역 일대에 면사무소(파란색 점)와 우편소 등이 설치되어 중심지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일본의 철도 부설권 장악과 노선 선정[2]

1) 경부철도 부설권 장악

경부철도는 일본이 한국[3]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책과 자본 및 기술에 의거하여 부설되었다. 일본이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의주까지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관하여 만주에 접속하는 철도를 부설하려고 구상한 것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욕망이 꿈틀대던 1880년대부터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이 국내외에서 갖은 난관을 극복하고 그 꿈을 실현한 것은 1892년부터 러일전쟁(1904. 2~1905. 5.)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일본이 남의 나라인 한국에서 경부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로부터 철도 부설권을 얻어 내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당시에 일본이 왜 경부철도를 부설하고자 부심했는지, 경부철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부설되었는지, 한국정부가 일본의 경부철도주식회사에 어떤 조건으로 경부철도의 부설권을 허급(許給)했는지에 대해서는 경부철도 부설과 운영에 대한 일본의 정략과 한국의 대응이 간결하게 반영되어 있는 「경부철도합동(京釜鐵道合同)」을 통해서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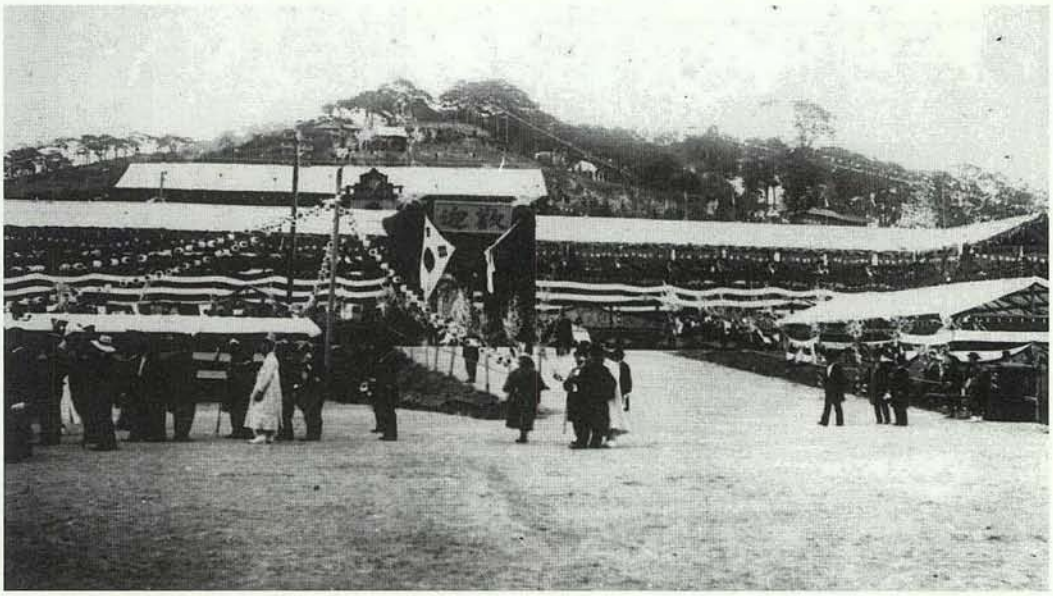
「경부철도합동」은 1898년 9월 8일에 체결되었다. 전문(全文) 15개조로 이루어진 이 조약은 일본 측이 제시한 13개조의 원안(原案)과 한국정부가 제안한 3개조의 첨가안(添加案)을 서로 섞어서 수정하고 보완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겉으로 볼 때 이 조약에는 경부철도에 대한 한 · 일 양국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4] 그렇지만 실상은 일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약안의 대부분을 만들고 첨삭하였기에 이 조약에는 경부철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일본 측의 기본적인 의견은, 한국이 일본에게 무상(無償)으로 철도부지를 제공할 것(제3조), 철도용품과 영업이익에는 과세(課稅)하지 말 것(제5조), 일본 측이 철도 완공 후 15년간 영업권을 전유(專有)하고 그후에도 한국이 이를 매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년씩 기간을 연장할 것(제12조) 등이었다. 이에 비해서 한국 측의 의견은 강교(江橋)는 사람과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도를 병설하고 고가(高架) 또는 개폐식(開閉式)으로 할 것(제2조), 궤간(軌間)은 표준궤로 하고 분묘를 파괴

2) 이 부분은 「경부선 철도」(정재정, 2007, 『의왕시사』 1 자연과 역사, 의왕시 · 의왕문화원, 529~551쪽)의 내용을 일부 수정 · 게재한 것이다. 이하 철도 부설과 사회변화에 대한 역사적 조망의 주요 내용도 주로 이 글과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정재정, 1999,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1 · 4 · 5장 등에 의거하여 기술하였다.

3) 일본이 경부철도를 부설하고 운영한 시기의 국호는 조선 → 대한제국 → 조선(일본은 대한제국을 폐멸시킨 후 대한제국의 영역을 조선이라고 칭한다고 선언함) 등으로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세 시기의 국호를 구분해서 사용치 않고 통일해서 한국이라고 칭하겠다.

4) 竹內綱, 1922, 『京釜鐵道經營回顧錄』, 15~17쪽; 「95~98문서」, 『日本外交文書』 제31권(一).



1905년 5월 25일 거행된 경부철도 개통식(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공)

하지 말 것이며 한국의 군용품 · 병정 · 우편물 등의 운송은 무임(無賃)으로 할 것(제3조), 정차장에서의 외국인의 거주를 불허할 것(제4조), 철도건설 노동자는 한국인을 9할 이상 고용할 것(제6조), 철도건설공사는 3년 이내에 착공하여 10년 이내에 완공하되 그렇게 못할 경우에 이 조약은 무효로 할 것(제10조), 한국인 회사 또는 개인은 언제든지 주주가 될 수 있을 것(제14조), 경부철도는 여하한 경우에도 제삼국인(第三國人)에게 양도하지 말 것(제15조) 등이었다.

이 조약은 지엽말단(枝葉末端)의 부분에서는 한국 측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지만, 일본이 철도의 부설권과 영업권을 독점하고, 한국이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등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렇지만 이 조약조차도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폐멸함으로써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경부철도는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국유철도가 되어 식민지 지배의 동맥으로서 기능한 것이다.

2) 철도노선의 선정

경부철도의 부설권을 손에 넣은 일본은 본격적으로 부설사업에 착수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느 곳에 어떤 선로를 놓을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군부와 외무관료 등은 이미 1892년과 1894년에 경부철도 선로의 예정지를 암암리에 대대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군포 지역이 경부철도 통과지로 선정된 것은 경부철도주식회사가 1899년 3월에 실시한 답사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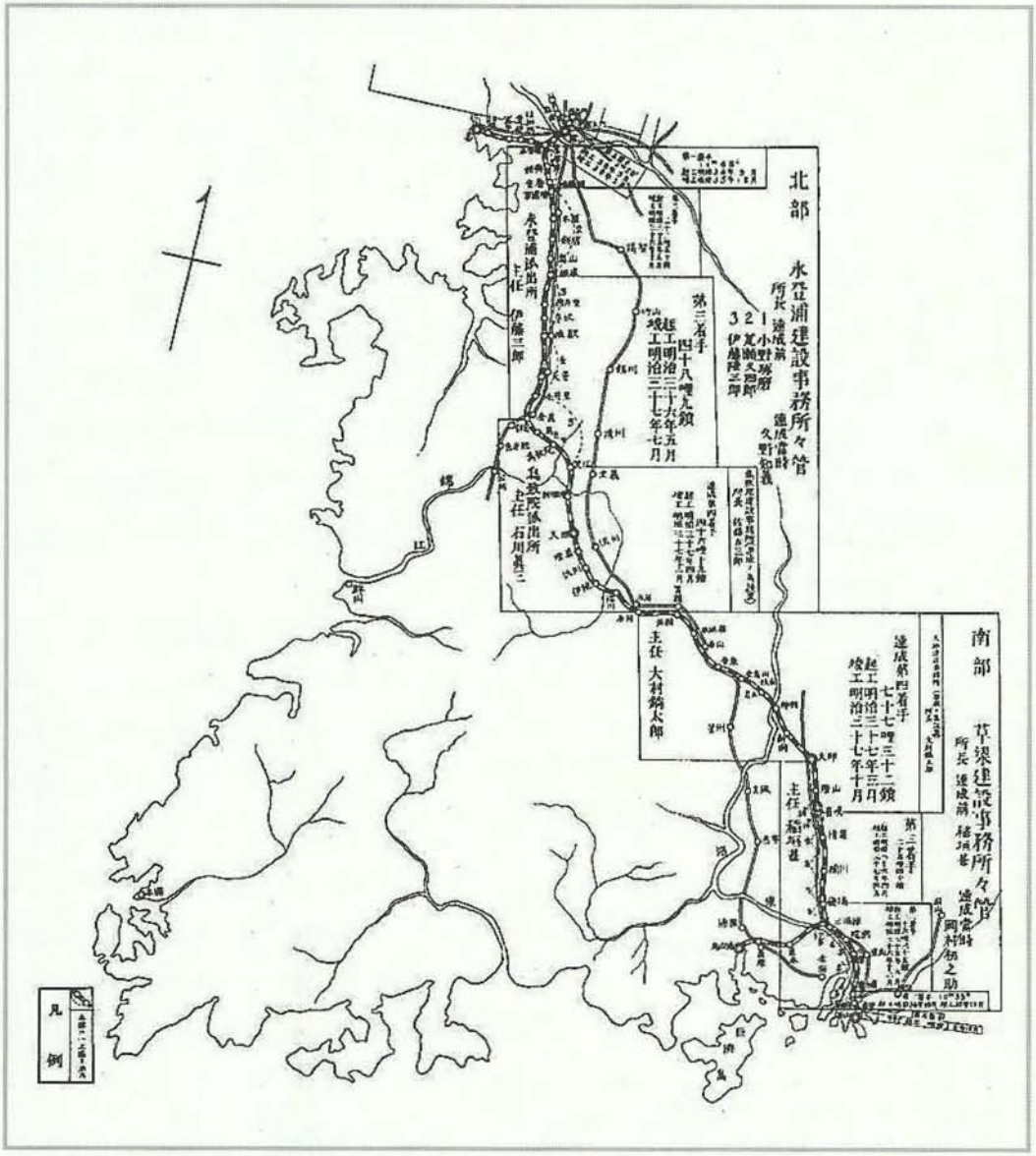
부터였다. 이 답사는 경부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고(1896. 7.) 「경부철도합동」이 체결된 이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답사 참가자들은 한국정부의 공식적 허가를 받고 자료와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전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5]

경부철도주식회사는 "선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상공업이 번창한 지방을 통과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방침에 따라 답사 참가자들은 서울~노량진~진위~군포~전의~공주~논산~은진~금산~영동~금산~대구~현풍~창녕~영산~밀양~삼랑진~구포~부산진을 통과하는 총연장 294마일의 노선을 선정했다.[6] 그들은 이 노선이 "인구에서 조선 전국의 10분의 7, 산물(産物)에서는 조선 전국의 7분의 5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7]이라고 호언장담(豪言壯談)했다. 따라서 이때 일본이 채택한 노선에는 한국의 경제적 선진 지역을 장악하려는 일본 자본가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군포 지역은 이처럼 경부철도의 노선을 선정하는 당시부터 교통의 요지로서 주목을 끌었던 곳이다.

한편 1899년 3월의 답사 노선은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노선의 전반부가 경기 · 충청의 서로(西路), 곧 전라가도(全羅街道)를 지나게 함으로써, 한국정부가 1898년부터 계획하고 있던 서울~목포의 철도 부설을 방해하고, 또 열강이 시도하고 있던 서울~부산의 직통 철도 부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획책하였다.[8] 원래 「경부철도합동」 제9조는 경부철도 지선(支線)의 부설권을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 규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여 한국 남부의 모든 철도는 경부철도의 지선으로만 건설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했던 것이다.

그 후 경부철도주식회사는 1903년에 두 차례의 답사를 더욱 정밀하게 실시하여 오늘날과 같은 경부철도노선을 확정하였다. 이때에도 군포 지역이 경부철도의 통과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일본이 경부철도 노선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우회노선을 버리고 직선노선을 택한 것은 앞의 두 가지 목적 외에 일본~서울~만주를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에 연결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때마침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한판 승부를 겨루려고 획책하고 있었으므로, 군대와 병참을 대량으로 빠르게 한반도와 만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철도 건설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5) 「5014문서」, 『日案』 4(『舊韓國外交文書』 제4권); 『外務門日記』 1899년 3월 13일(『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 外務門日記』 제6권).
6) 조선총독부 철도국, 1929, 『朝鮮鐵道史』, 63쪽.
7) 「京釜鐵道發起人總會」, 『東京經濟雜誌』 제41권 제1016호(1900년 2월), 251~252쪽.
8) 조선총독부 철도국, 1929, 『朝鮮鐵道史』, 104쪽.



경부철도건설 공구약도[9]

3) 궤간과 궤조의 채택

철도 부설에서는 궤간(軌間, 선로 폭)과 궤조(軌條, 레일 무게)를 어떤 것으로 채택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궤간과 궤조는 철도의 운수역량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와 접속

9) 조선총독부 철도국, 1929, 『朝鮮鉄道史』, 도판 7.

하는 철도의 세력범위를 확정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1900년을 전후로 하여 영국이 중국에서 부설하고 있던 경봉철도(京奉線, 북경~봉천)는 표준궤(4피트 8인치 반)와 80파운드 궤조였지만, 러시아가 부설하고 있던 시베리아철도와 동청철도(東淸鐵道, 현 하얼빈철도)는 광궤(5피트)와 60파운드 궤조였다.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 부설된 철도는 협궤(3피트 6인치)와 50파운드 궤조였다.[10]

한국철도가 어떤 궤간 · 궤조를 채택할 것인지는 일찍부터 국제문제가 되어 왔다. 먼저 한국정부는 철도국의 설치와 더불어 「국내철도규칙(國內鐵道規則)」(1896. 7. 17. 칙령 제31호)을 반포하여, 한국에 부설되는 모든 철도는 표준궤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1896년 11월 15일 한국정부는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 규정을 시베리아철도와 같이 광궤를 채택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표준궤를 채택하고 있던 미국이 경인철도 부설권을 손에 넣기 위해 압박을 가하자, 한국정부는 다시 표준궤를 채택할 것을 선언하였다.[11] 그 결과 「경부철도합동」에서도 표준궤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철도 부설 공사의 기공[12]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이 철도의 궤간 · 궤조 선정이 새삼스럽게 정치문제로 등장하였다.[13] 일본 국내의 철도 건설을 총괄하던 철도작업국은 경부철도의 부설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1m 궤간에다 60파운드 궤조를 주장했다. 일본의 정부기관이 이런 주장을 편 배경에는 여객과 화물이 빈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서 일본보다 우수한 철도를 부설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군사적 효용가치를 가장 중시한 일본군의 참모본부는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경부철도를 최대한 빨리 부설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국내의 궤조와 차륜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협궤와 50파운드 궤조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의 주요 자본가들이 대주주로 참여한 경부철도주식회사는, "장래 지나(支那) · 구라파(歐羅巴) 대륙의 철도와 연결하여 세계교통의 간선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경부철도를, "단순한 식민지 철도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표준궤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14]고 반론했다.

결국 경부철도 부설 주체인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주장이 일본의 대륙침략주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하여 경부철도는 미국의 카네기회사에서 궤조를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철도와 동일한 넓이의 표준궤에다 무거운 중량인 75파운드 궤조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경부철도와 접속하여 대륙으로 뻗어 가게 되는 경의철도(서울~신의주)도 자동적으로 표준궤를 채택하

10) 조선총독부 철도국, 1929, 『朝鮮鐵道史』, 110쪽.

11) 竹內綱, 1922, 『京釜鐵道經營回顧錄』, 15~17쪽.

12) 경부철도는 부설 계획부터 건설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외교교섭 등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901년 8월 20일에 북쪽 영등포와 9월 1일에 남쪽 초량(草梁, 현 부산시 초량동)에서 각각 기공식을 거행하였다(竹內綱, 1922, 『京釜鐵道經營回顧錄』, 56~57쪽; 「잡보」, 『황성신문』, 1901년 8월 21일).

13) 「京釜鐵道の計劃」, 『東京經濟雜誌』 제40권 제989호(1899년 7월 29일), 258쪽.

14) 조선총독부 철도국, 1929, 『朝鮮鐵道史』, 110쪽.

게 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의 간선철도는 자연스럽게 만주와 중국의 철도와 직접 연결되어 일본의 대륙 침략을 선도하는 동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반면에 광궤를 채택한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와는 그대로 접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범위를 분리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2. 경부철도 건설과 주민의 대응

1) 철도용지의 수용

경부철도 건설의 기획과 시행은 모두 일본 측이 관장했다. 그러나 철도 부설 초기에는 한국인 회사들도 목석(木石) 등의 재료를 공급하면서 토공 공사에 참여했다.[15] 그중 대한운수회사,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 경성토목회사, 대한경부철도역부회사, 흥업회사 등은 제1착수구간인 영등포~명학동 사이의 공사(18.7㎞, 1901. 9~1902. 12.)에서 활약했다. 특히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달 20원(元)의 고금(股金)을 모집하였고, 진위 · 공주 · 금산 · 시흥 등지에 지사를 설치하여 업무를 경부철도 연선(沿線)으로 확대하였다.[16] 그러나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우수한 일본의 토건회사가 대거 몰려들자 한국 회사들은 공사 수주에서 점차 배제되었다.

한편, 경부철도 건설 과정에서 일본은 철도용지를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경부철도합동」의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될 수 있는 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려고 갖은 꾀를 썼다. 경부철도주식회사, 참모본부, 외무성은 이미 "철도용지는 한국정부로부터 빌려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넓은 지역을 얻어 내고, 정차장 내에는 창고와 상관(商館)을 설치하여 상업을 융성시킬 것"[17]이라는 방침을 확정하고, 경부철도의 각 정차장부지로 20만 평씩 확보하려고 획책했다. 그리고 그 땅에 일본 농민을 이주시켜 경제를 개발하고 세력을 확산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

> 만일 일본 농민으로 하여금 이 땅에 이주케 하여 그 평야를 개척하고 관개(灌溉)의 이익을 꾀하여 경작케 하면 그 산출력을 증가시킬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니, 다행히 경부철도의 정차장 부지로 각 이십만 평을 빌려 받기로

15) 당시 한국인이 설립한 토목건축청부회사(土木建築請負會社)로는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大韓國內鐵道用達會社), 대한경부철도역부회사(大韓京釜鐵道役夫會社), 대한운수회사(大韓運輸會社), 철도목석등물용달회사(鐵道木石等物用達會社), 흥업회사(興業會社), 경성토목회사(京城土木會社), 경부철도특허회사(京釜鐵道特許會社) 등이 있었다.

16) 「광고」, 『황성신문』 1900년 4월 23일; 「광고」, 『황성신문』 1900년 5월 21일; 「잡보」, 『황성신문』 1900년 11월 5일; 「광고」, 『황성신문』 1901년 4월 7일; 「광고」, 『황성신문』 1901년 6월 23일; 「광고」, 『황성신문』 1901년 7월 11일.

17) 「京釜鐵道の計劃」, 『東京經濟雜誌』 제40권 제989호(1899년 7월 29일), 258쪽.

할 터인즉, 그 일부를 할애하여 우리 농민의 이주지에 충당하여 한 촌락을 만들고 농작에 종사케 하면 그 생산력을 증가할 뿐 아니라 철도에도 아주 편익(便益)함이 있을 것이다.[18]

한국정부는 일본 측의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측과 수차례 교섭한 결과, 철도건설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인 1902년 7월 경부철도부지의 수용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서울의 남대문 정차장부지 5만 1,819평, 영등포 정차장부지 4만 1,000여 평, 초량 정차장부지 5만여 평, 부산진 정차장부지 3만 평, 기타 군소 정차장부지 각 3만여 평, 그리고 선로는 모두 단선(單線)으로 하되, 그에 필요한 부지는 폭 18m로 하기로 결정하였다.[19]

한국정부와 경부철도주식회사가 1902년 7월 11일 산정한 철도용지 수용비와 가옥 이전비는 총 27만 6,000여 원이었다. 이 금액은 「경부철도합동」에 따라 한국정부가 지출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재정이 궁핍한 한국정부는 경부철도주식회사로부터 연 6%의 이자로 이 금액을 입체(立替)하여 지출하기로 합의했다.[20] 곧, 한국정부는 철도용지 매입을 위해 일본 측에서 돈을 빌리고, 매입한 용지를 무상으로 일본 측에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1901년부터 1904년 사이에 산정한 철도용지의 평당 수용 예정가액은 시흥 · 과천 · 군포 · 광주 · 수원 · 진위 · 양성 지역이 논 상품 30전, 중품 21전, 하품 12전, 밭 상품 12전, 중품 8전, 하품 4전이었다.[21] 이러한 기준에서 한국정부가 계획한 보상금액은 총 45만 6,000여 원이었지만, 실제 보상금액은 당초 추정가액의 50%도 되지 않는 20만 8,000여 원에 불과했다. 이를 철도범입전답(鐵道犯入田畓) 총평수로 나누면, 평당 보상가액은 대략 7.6전 꼴이었다. 이것은 정부가 처음에 제시한 평당 보상가액 17전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논은 하품가액(下品價額)의 2분의 1, 밭은 하품가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로 보상하는 정도였다.

군포 지역과 인근 안양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경부철도의 부설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금액과 결수(結數)를 기록한 『과천 경부철도용지금액급결수성책(果川 京釜鐵道用地金額及結數成册)』에 의하면, 당시 군포 지역, 곧 과천군 남면의 철도용지 편입지는 답 1만 8,425평, 전 1만 3,422평, 산 4,854평으로 총 3만 6,701평이었고, 이들 수용지의 추정가액은 총 4,456원 27전이었다.[22] 현재의 안양 지역에 해당하는 과천군 하서면의 경우에는 철도용지 편입지 3만 231평, 추정가액 1,280원 14전이었다. 따라서 과천군 전체로는 철도용지 편입지 6만 6,932평에 추정가액 5,736원 41전이었으나 실제 보상금액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정부는 연선 주민에게 1907년 9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각 정차장에서 철도용지의 보상가

18) 「잡보」, 『황성신문』 1900년 10월 26일.
19) 조선총독부 철도국, 1929, 『朝鮮鐵道史』, 665~673쪽.
20) 조선총독부 철도국, 1929, 『朝鮮鐵道史』, 665~671쪽.
21) 규 19365, 『京釜鐵道用地金額及結數成册』, 1~11쪽.
22) 규 19365, 『果川 京釜鐵道用地金額及結數成册』.

격을 지급하였다. 이때 군포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철도용지 보상가격 지급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흥역에서는 9월 3일에 시흥군 소속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6,538원 4전(평당 보상가 4.7전)을 지급하였다. 군포장역에서는 9월 4일에 과천군 소속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533원 53전(평당 보상가 약 3.8전), 광주군 소속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1,696원 35전(평당 보상가 7.4전)을 지급하였다. 수원역에서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수원군 소속 철도용지 보상가격으로 7,973원 88전(평당 보상가 4.1전)을 지급하였다. 이때 경부선 철도 연선에서 지급된 용지대금은 모두 20만 8,000여 원이었다.[23]


廣告文

京釜鐵道用地買收金左記日字及區所ニテ交付スルニ付土地ニ
敷用ニ係ル時ニ土地所有者ハ地價金額受ケ取ノ爲メ
證印ヲ携帯シ且來到ノ事但
本人又ハ其相續人ノ認メ差出シタル委任狀ヲ所持スル他人ヲシテ受取ラシムルモ可
但證印ヲ不得ル事

隆熙元年八月二十三日

交付期日　交付ヲ停ムル場合　來到ヲ要スル土地所有者所屬郡名　度支部會計課

九月　三日　始興
四日　軍浦　衿川廣州
五日　本　原水原
六日　振　威振威
八日　非　里陽城
九日　河　飲山
十一日　成　安安
十二日　天　安安
十四日　圣　義龍仁
十五日　烏　致院淸州
十六日　永　同同
十八日　永　同同
二十日　貢　酒淸州
二十九日　金　泉金山開寧
廿一日　善　山龜山
廿三日　倭　館仁同
廿四日　大　邱慶山
自廿四日至廿六日　邱谷大路
廿七日　屋　山慶山
廿九日　淸　洲淸近
十月　三日　陽　川陽城
四日　勿　論　同
五日　華　城　東水

경부철도 용지 배상금 지급 공고[24]

더욱이 이러한 보상금액은 전답을 철도용지로 수용당한 지 3~6년이 지나서야 수령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게 온전히 지급된 것도 아니었다. 일본 측은 보상비 지불을 일본의 제일은행권(第一銀行券) 보급의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보상가액의 10분의 2를 수수료로 공제하였다.[25] 또한 그 나머지 액수도 군수나 면장이 보상금 지불 과정에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실제로 지주의 손에 들어간 것은 몇 푼에 불과했다.[26]

철도 건설은 용지 매입뿐만 아니라 그 공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불거졌다. 그중 하나는 일본 측이 용암포 · 금성 · 곡산 · 박천 · 시흥 · 안주 등 경부선 · 경의선 철도 연선 각 지역에서 수십 만 주의 송림을 벌채하여 산주와 일본인 사이에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27] 군포장에서는 일본인이 송림을 매입하여 벌목한 후 인근 마을의 한국인을 시켜 군포장 정차장까지 운반하도록 했는데, 운임 2,000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당사자가 서울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8]

23)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9일;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278~279쪽.
24)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9일.
25) 「鐵道用地代金の支拂」, 『조선신보』 1907년 10월 23일;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1일.
26) 「광고」,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4일.
27) 『황성신문』 1904년 6월 16일; 『황성신문』 1904년 7월 19일; 『대한매일신보』 1905년 9월 21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8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18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2일; 『교섭국신문』 1905년 1월 3일.
28) 「잡보」, 『황성신문』 1906년 1월 10일.

2) 철도 건설노동자 동원

경부철도의 건설 과정에서 연선 주민을 괴롭힌 또 하나의 재앙은 일본군이나 그의 지원을 받은 토건회사 소속원이 지방관을 협박하여 주민들을 노동자로 동원한 일이었다. 예를 들면,[29] 평택·천안·연기·청주·옥천·창원 등지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해당 지역 지방관에게 관내의 호구·미곡·우마의 수량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일본 측은 이를 근거로 지방관에게 경부철도주식회사와 토건회사 소속원 및 일본인 노동자에게 숙사와 식료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904년 8월 진위군(현 평택시)에서는 일본인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호마다 1인씩 철도 역부(役夫)를 뽑아 달라고 강권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은 이방(吏房)이 중간에서 임금을 갈취하자, 분노한 군민(郡民)이 봉기하여 향청(鄕廳)과 이서배(吏胥輩)의 가옥 7호를 부쉈다. 용인군에서도 비슷한 연유로 1904년 8월에 군민 5,000여 명이 봉기하여 군수가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노동자 동원 방식은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이로 인해 철도 연선 주민과 일본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철도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한편, 일본 측의 난폭한 강제와 억압 아래 부설된 경부철도는 바야흐로 의병부대의 첫 번째 공격목표로 바뀌었다.[30] 당시 군포 지역과 멀지 않은 안양역 부근에서도 의병 100여 명이 습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군포장과 안양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영등포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31]

이 외에도 경부철도 연선의 많은 지역에서 민중의 저항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사건은 1904년 9월 15일에 발생한 시흥 군민의 대대적인 항거였다.[32] 이 사건의 발단 역시 군용역부(軍用役夫) 모집이었다. 1904년 7월부터 경기도 관찰부는 군용역부 80명을 모집해서 보내라고 시흥군에 지시했다. 이러한 명령이 빗발치자 7월 9일에 군민 수천 명이 관청 뜰에 모여 그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군민이 봉기할 기미를 보이자 관아에서는 다른 읍의 예에 따라 시행하겠노라고 군중을 설득하여 해산시켰다. 그 후 군수 박우양(朴嵎陽)은 경기도 관찰부에 가서 역부의 수를 30명으로 줄여 받았고, 각 동마다 1명씩 차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역부의 출역(出役)에 필요한 고가(雇價)나 비용을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 액수는 많으면 3천 수백 냥이

29) 『交涉局日記』, 1904년 4월 20일; 『交涉局日記』, 1904년 7월 18일; 『交涉局日記』, 1904년 8월 25일; 『황성신문』, 1904년 11월 19일; 『대한매일신보』, 1904년 8월 15일; 『대한매일신보』, 1904년 8월 25일.

30) 군포 지역 인근의 예를 들면, 1907년 8월 15일 0시경 검은 옷을 입은 한국인 수십 명이 수원 정차장에 십여 발을 방포(放砲)하다가 수비대의 반격을 받고 퇴각하였고(『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6일), 1907년 9월 8일에는 병점역에서 30리 떨어진 선장동(先長洞)에서 의병 700명이 집합하여 오산역과 진위역을 습격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0일).

31)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4일.

32) 규 17147, 『始興稷山按覈使奏本』; 『電信』, 제75호, 1904년 9월 16일(김정명 편,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제5권, 288~289쪽);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16일, 1904년 9월 17일, 1904년 9월 19일, 1904년 9월 20일, 1904년 10월 3일; 『황성신문』, 1904년 9월 16일, 1904년 9월 23일; 『시사신보』, 1904년 9월 18일; 『交涉局日記』, 1904년 9월 30일.

었고 적어도 1,500여 냥이었다. 이로 인해 민심은 격앙했다. 그리고 군수가 수십 만 냥을 수뢰하고 수서기(首書記)가 역부들의 식비를 착복했다는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관아에 대한 군민의 불신과 원성은 극에 달하여, 마침내 민중봉기로 폭발했다.

이 봉기에는 시흥군 관내 43개 동에서 1만여 명이 참가했다. 그들은 군아에서 군수 입회하에 관리와 언쟁을 벌였다. 그때 군수의 요청을 받고 달려온 일본인 석공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쟁 중에 일본인이 갑자기 장검과 철봉을 휘두르며 군민들을 공격하여 몇 사람이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에 분개한 군중들은 투석으로 맞서며 군수 박우양과 그의 아들을 타살하고, 관사(官舍)와 서리들의 가사집물(家舍什物)을 파괴했다. 또 도망가는 일본인을 추격하여 두 명을 살해하였다. 그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43개 동리 집강(執綱)의 연서로 군수의 죄상 10여 개 조를 열거한 소장(訴狀)을 만들어 관찰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사건의 소식을 듣고, 곧 순검을 파견함과 동시에 안핵사(按覈使)를 임명하여 자초지종을 조사케 했다. 일본 공사관은 동대문에 주둔하고 있던 수비대에서 1개 소대를 급파하여 각 동리 집강과 주동자를 체포해 헌병주재소에 수감하는 한편, 주동자를 색출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탁지부(度支部)에서는 사망한 일본인 2명과 부상당한 4명에게 3,232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시흥 군민들의 봉기는 일본 측의 무자비한 노동자 동원과 이에 편승하여 사복(私腹)을 채운 지방관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타도의 대상과 목표는 일본의 침략자와 매판적 관료였다. 이처럼 철도 연선의 주민은 이제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 반매판주의(反買辦主義)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경부철도가 관통하는 군포 지역의 주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3) 일본군율과 군사경찰제의 시행

철도 연선 주민의 저항에 직면한 일본은 1904년 7월 2일 「군용전선 및 군용철도 보호에 관한 군율」을 발포했다. 이 군율은 처음에 서울~인천, 서울~부산, 서울~원산, 서울~평양의 전신선로와 군용철도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시행구역을 한국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군율의 내용을 보면,[33] '군용전선 및 군용철도에 가해한 자는 사형', '사정을 알고도 감춘 자는 사형', '가해자를 나포(拿捕)한 자에게는 금 20원을 상여함', '가해자를 밀고하여 나포케 한 자에게는 금 10원을 상여함', '촌내에 가설한 군용전선 및 군용철도선의 보호는 그 촌민이 책임지되, 촌장을 수좌로 정하고 위원을 두어 매일 약간 명씩 교대로 보호할 것', '촌내에서 군용전선 및 군용철도선이

33) 「8178문서」 1904년 7월 5일(김정명 편,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제7권); 「8195문서」 1904년 7월 11일(김정명 편,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제7권); 「499문서」(김정명 편,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제5권, 410~411쪽); 朝鮮駐箚軍司令部, 1937 『朝鮮駐箚軍歷史』, 177~178쪽.

끊기고, 가해자를 나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보호위원을 태죄(笞罪) 또는 구류(拘留)에 처함', '한 촌내에서 2차 가해자가 있을 때는 한국정부에 통보하여 엄벌함', '선박의 조종을 침해하고 기타 전선을 오단(誤斷)하는 자는 구류에 처하고 태죄(笞罪)를 부가하며, 또 사상(事狀)에 따라 그 선박을 몰수할 것, 또 지방 정황에 따라 한국 관리에게 엄벌을 요구하되, 이 경우에는 병참 사령관이 감시할 것', '구류기간의 금침(衾枕) 및 반식(飯食)은 본인이 자변(自辨)할 것' 등이었다.[34]

경부철도 연선인 군포 지역도 일본의 군율 아래 들어가게 되자 주민들은 갖은 고초를 겪었다. 당시 군포 지역의 7개 동리 주민들은 1905년 11월 군포역장이 철도 수호를 구실로 부역을 강요하고 금전을 침탈한다고 경기관찰부에 진정(陳情)했다. 이들은 철도를 수호해야 한다는 일본군 사령부의 명령을 빙자하여 군포역장이 백성을 학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35]

일본은 또 치안 유지를 구실로 내세워, 1904년 7월 20일 서울 일원에 군사경찰로 하여금 요지를 경비하도록 했다.[36] 그리고 같은 해 10월 9일부터 함경도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모두 13개 조항으로 된 「군정시행에 관한 내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사법 · 행정 · 군사 · 경제의 모든 권한을 일본군 사령관이 틀어쥐도록 되어 있었다.[37]

일본의 군율과 군정의 시행은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유린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항능력을 상실한 한국정부는 이 조치에 순응할 것을 연선 각 군에 훈령할 수밖에 없었고, 군수들은 일본군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순교(巡校)와 동장(洞長)을 동원해서 날짜별로 경내(境內)의 철도와 전선을 검찰하도록 했다.[38] 또한 일본군은 한국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1905년 1월 12일 서울 일원의 경찰업무를 한국 경찰로부터 일본 주차군(駐箚軍)으로 바꾸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때 공포된 「군사경찰시행에 관한 내훈」, 「군령」, 「군령시행에 관한 내훈」에서도 군용전신 · 전화기관 또는 철도 · 차량 · 선박 등을 파훼(破毁), 도취(盜取), 운용방해(運用妨害)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사형 · 감금 · 추방 · 과료(過料) · 태형(笞刑)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39] 군사경찰제 시행으로 집회 · 결사를 비롯하여 사소한 범죄도 모두 일본 군율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었다. 군포 지역도 그렇게 일본군의 지배 아래 놓여 신음하게 되었다.

34) 이 군율의 시행으로 철도 연선에서는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1904년 7월에서 1906년 10월까지 2년 남짓한 기간에 이 군율에 저촉되어 처벌된 한국인은 사형 35명, 감금 및 구류 46명, 추방 2명, 태형 100명, 과료 74명 등 모두 257명에 달하였다(朝鮮駐箚軍司令部, 1937, 『朝鮮駐箚軍歷史』, 210쪽).

35)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1일.

36) 朝鮮駐箚軍司令部, 1937, 『朝鮮駐箚軍歷史』, 311~313쪽.

37) 일본군 사령관은 한국인 지방관에 대해서조차 그들이 일본군에 대해 불이익한 행동을 하거나 부적임이라고 인정될 때는 임지로부터 퇴거를 명하고, 또 지방관이 비어 있을 때는 일본군 사령관이 적임자를 임명하며, 한국정부가 임명한 지방관으로 일본군 사령관의 승인장을 휴대하지 않는 자는 취임 및 직무집행을 거절할 수 있었다[「380문서」 1904년 10월 18일(김정명 편,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제5권, 301~304쪽)].

38) 『慶尙南北道來去案』, 慶尙北道觀察使張承遠報告 1904년 12월 12일.

39) 「456문서」 1905년 1월 12일(김정명 편,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제5권, 367~372쪽).

3. 철도의 운수영업과 군포 지역의 변모

1) 경부철도 복선화와 스피드 업

초창기의 경부철도는 경부철도주식회사가 경영하는 민간철도였다. 그렇지만 일본정부가 경부철도의 주주에게 최소한 공금리(公金利, 대체로 연 6%)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국책회사가 경영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러일전쟁을 도발하면서 경부철도가 정치적 ·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세력을 확장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경부철도를 국가가 매수하여 직영하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 군대가 부설한 경의선은 아예 군사 전용의 국유철도였다.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주권을 침탈한 일본정부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 직후인 1906년 3월 제국의회 중의원에 「경부철도매수법」 안을 제출하였다.[40] 이 법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1906년 7월 15일 경부철도를 매수하여 경의철도 · 마산철도와 함께 통감부(統監府) 철도관리국(鐵道管理局)에 직속시켜 버렸다.[41]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건설되는 간선철도는 모두 일본의 국유철도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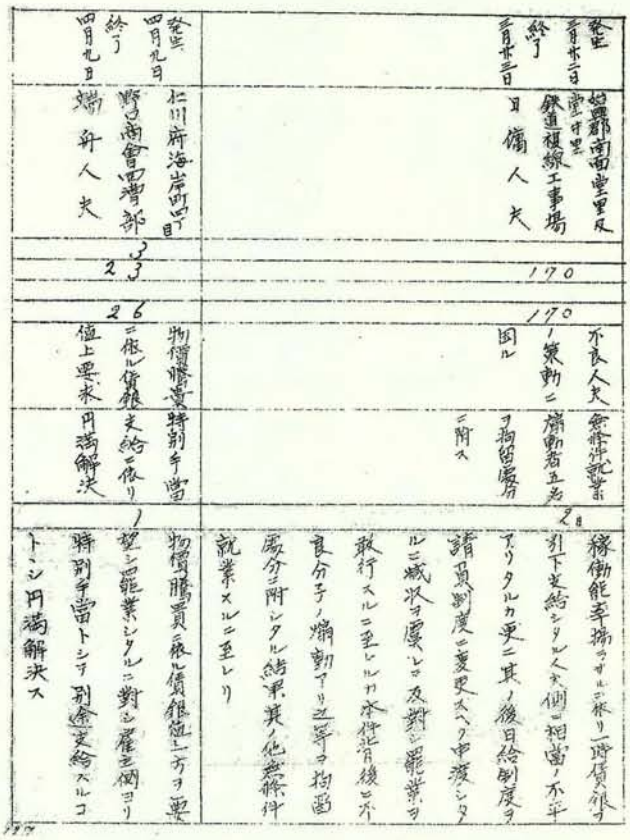
1910년 설치된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경부철도를 비롯하여 모든 국유철도를 관할하였다. 그리고 군포 지역을 포함하여 경부철도에 대해 수시로 개량공사를 실시했다. 특히 일본 세력의 대륙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반도의 경제적 · 군사적 가치가 증대되자, 1936년부터 약 1억 엔의 자본을 투자하여 수송난을 겪고 있는 경부철도 각 구간을 순차적으로 복선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부터 북으로는 영등포~대전 구간, 남으로는 부산진~삼랑진 구간의 복선화 공사를 시작하였다.[42] 군포 지역이 속한 수원~군포장 구간 11㎞의 복선공사는 일본인 토건회사 우치다구미(內田組)의 시공으로 1936년 7월부터 시작하여 1937년 10월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동 구간은 1937년 11월 1일부터 복선운전을 개시했다.[43] 또한 영등포~군포장 사이 20.7㎞의 복선공사는 다니구치구미(谷口組)가 맡아 1937년 7월부터 공사에 착수, 1938년 10월 1일에 완공하였다. 동 구간은 11월 1일부터 운전을 개시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50kg 20m의 궤조가 사용되어 소음과 동요를 해소

40) 「京釜鐵道買收法案理由書」 1906년 3월 3일 제출(朝鮮総督府, 1940, 『朝鮮鉄道四十年略史』, 71쪽).

41) 일제강점기 관할기관은 통감부 철도관리국(1906년 7월 1일~1909년 6월 18일), 통감부 철도청(1909년 6월 19일~12월 15일), 일본철도원 한국철도관리국(1909년 12월 16일~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철도국(1910년 10월 1일~1917년 7월 31일),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1917년 8월 1일~1925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 철도국(1925년 4월 1일~1943년 11월 30일), 조선총독부 교통국(1943년 12월 1일~1945년 8월 15일) 등으로 변하여 갔다(財團法人 鮮交會, 1986, 『朝鮮交通史』, 11쪽).

42) 『동아일보』 1935년 7월 12일; 『부산일보』 1936년 5월 30일.

43) 『매일신보』 1936년 6월 23일; 『동아일보』 1937년 7월 13일; 『조선일보』 1937년 10월 31일.



1937년 남면 복선공사장 노동쟁의 보고내용(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44] 이렇게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진두지휘한 경부철도 복선화 공사는 일본의 중일전쟁(1937. 7.) 도발 이후 전시체제(戰時體制)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1945년 3월에 완공되었다.

경부철도가 부설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복선공사장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군포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수원~군포장 간 복선공사가 한창이던 1937년 3월 22일 군포에서는 한국인 일용인부들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45] 이 쟁의는 노동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인하하여 지급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된 파업에는 한국인 노동자 170명이 참여하였고, 그 여파로 주동자 5명이 구류처분되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열차 운행속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32년 7월 1일부터 운행된 부산~봉천(奉天, 현 요령성 심양) 간 화물 급행열차는 종래 소요시간보다 부산→안동(安東, 현 요령성 단동)을 4시간 46분, 안동→부산을 4시간 56분이나 단축하였다. 이 화물열차는 한국 남부 지방의 해산물을 적시에 만주 한복판으로 운반하는 데 공헌하였다.[46] 여객열차에서는 종래 10시간이던 경성~부산 간 운행 소요시간을 8시간으로, 12시간이던 경성~신의주 간 운행 소요시간을 8시간 54분으로 단축했다. 여객열차 운행 소요시간 단축의 궁극적 목표는 부산~안동을 16시간에, 동경~신경(新京, 현 길림성 장춘)을 72시간에 주파하겠다는 것이었다.[47]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운행시간 단축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여 1934년 12월 1일부터 부산~신경 간 직통 급행열차 '히카리(ひかり)', 부산~봉천 간 '노조미(のぞみ)'가 운행되었고, 그 결과 동경~

44) 『동아일보』 1938년 8월 6일; 『동아일보』 1938년 10월 29일.

45) 京畿道警察部, 1938, 「昭和十二年中主ナル勞動爭議ノ概況」, 「昭和十三年九月治安情況」, 127쪽.

46) 『경성일보』 1932년 7월 2일; 『부산일보』 1932년 7월 23일.

47) 『경성일보』 1932년 10월 19일; 『서선매일신문』 1932년 10월 5일; 『동아일보』 1932년 12월 21일.

신경의 소요시간을 12시간 단축하였다. 또한 1936년 12월 1일부터는 부산~경성을 6시간 45분에 주파하는 '아카츠키(あかつき)'가 운행되었다.[48] 중일전쟁이 격화된 1938년 10월 1일부터는 부산~북경 간 2,068㎞를 38시간 45분에 주파하는 직통 급행 여객열차 '대륙(大陸)'도 운행되었다.[49]

군포 지역을 통과했던 위와 같은 급행열차들은 일본의 패전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중국대륙이 공산화되고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한국철도는 국제 간선 역할을 멈추고, 남한의 좁은 영역에 갇혀 버리는 쇠락의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였던 경부철도의 속도는 일본이 1960년대 이후 신칸센(新幹線)을 건설하여 운행함으로써 재현되었다. 일본의 신칸센을 달리는 열차 이름에 히카리(ひかり), 노조미(のぞみ), 아카츠키(あかつき) 등이 붙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패전 이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에 식민지 지배의 잔영(殘影)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신칸센의 열차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2) 철도교통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조사에 의하면,[50] 1913년경 군포장역의 호수와 인구는 123호에 512명이었고, 그중 한국인은 105호에 462명, 일본인은 18호에 50명이었다. 경부철도가 부설되고 역사(驛舍)가 생기는 한편, 면사무소 · 순사주재소 · 우편소 등 주요 시설이 주변에 자리 잡으면서 군포장역 일대는 군포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그 당시 도로교통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안산 · 남양 · 수원 · 과천에 통하는 도로가 있었으나 길이 험하고 교통편도 불편하여 철도교통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군포장역의 연간 철도여객은 승차 1만 4,489명, 하차 1만 5,238명이었다. 그중 일본인이 3할, 한국인이 7할이었고, 그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구간별 1일 평균 여객을 보면, 남대문역~군포장역의 경우에는 승차 21명, 하차 26명이었고, 용산역~군포장역의 경우에는 승차 10인과 하차 11인, 영등포역~군포장역의 경우에는 승차 13인과 하차 12인, 군포장역~수원역의 경우에는 승차 17인과 하차 14인이었다.

군포장역 부근의 주요 생산물은 기와였다. 역 부근에 있던 기와공장 3곳에서 직공 32명이 근무하였고, 연간 57만 장의 기와를 생산하여 서울, 용산, 수원 등지에 판매했다. 군포장역의 주요 발송화물은 채소 · 과일 · 장작 · 새끼 · 가마니 · 자리 · 기와 · 목재 등이었고, 주요 도착화물은 소금 ·

48) 財團法人 鮮交會, 1986, 『朝鮮交通史 資料篇』, 27~28쪽; 『경성일보』 1934년 4월 21일; 『동아일보』 1935년 7월 2일~8일.
49) 財團法人 鮮交會, 1986, 『朝鮮交通史 資料篇』, 30쪽; 『동아일보』 1938년 10월 1일.
50) 朝鮮總督府 鐵道局, 1914, 『朝鮮鐵道歷勢一斑』 上, 432~436쪽.

석탄 등이었다. 화차수입은 1,815엔, 객차수입은 5,762엔이었다.

그런데 1925년 12월 23일자로 호계동에 서던 군포장시장이 폐지되고 같은 날에 군포장역 앞에 군포시장 개설이 허가되면서, 군포장역 일대는 명실상부하게 군포 지역의 중심이 되었다. 같은 날짜에 서이면 안양리에도 안양시장이 개설되었는데, 안양시장은 음력으로 매 5일과 10일, 군포시장은 음력 2일과 7일에 열렸다.[51] 군포 지역 주민들은 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28년 7월 7일부터 27일까지 장터에서 소 두 마리 등을 상품으로 걸고 씨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52]

조선척식자료조사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53] 1926년을 기준으로 군포장역의 발송화물은 3,576t, 도착화물은 4,679t으로서, 화물수입은 5,469엔이었다. 주요 발송화물은 곡물 · 목재 · 장작 · 기와였으며, 이들 화물은 대개 경인 방면으로 출하되었다. 당시 시흥군 남면의 곡물 생산액은 9,000석, 20만 엔 정도였고, 새끼 · 요업(窯業) 등의 공산액(工産額)은 5만 4,000엔 정도였다.

그런데 이 무렵 군포장역의 세력 범위에는 동쪽으로 의왕면, 서쪽으로 반월면이 있었지만, 그곳의 화물은 모두 수원 또는 서울로 직송되었다. 또한 역 주변에 면사무소 · 보통학교 · 우편소 등이 위치하고,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일등도로가 통하였다. 서울과 수원 사이에 자동차가 운행될 만큼 발전한 군포 지역이었지만, 당시에는 모두 소를 이용해 짐을 운반하였다. 여객의 경우, 승차인원은 4만 5,348명, 하차인원은 4만 5,437명으로서, 여객수입은 연간 1만 6,284엔이었다. 군포장역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8명으로, 이들이 화물과 여객 운송 전반을 담당했다.

이해에 군포장역 주변 인구는 한국인이 739호에 3,008명, 일본인이 9호에 39명이었다. 시장은 매 2일과 7일에 열렸는데, 거래액은 200엔이었다. 군포공립보통학교의 학생은 368명이었고, 교장은 일본인이 맡고 있었다. 이 외에 군포역장과 기와공장 사장 등도 모두 일본인이었다. 주요 시설 중에서는 우편소만 한국인 조중완(趙重完)이 소장을 맡고 있었다. 1926년 군포우편소의 연간 우편물의 배달은 6만 5,863통, 발송은 3만 5,947통이었다. 전보 발신은 287통, 착신은 894통, 시외 통화는 769회였다.

한편, 군포장역에서는 한국인 최종은(崔鍾殷), 이재명(李載明), 정은준(鄭殷俊) 등이 오랜 전부터 운송점을 경영하였다. 이들은 영업이 번성함에 따라 업무를 통일하기 위해 합동으로 삼협운수조(三協運輸組)를 창립했다.[54]

일제강점기 후반 군포 지역 일대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수박이었다. 군포 지역과 그 주변에서 생산된 수박은 한국의 서북 방면으로 출하되었다. 1935년에는 8월 18일까지 20여 트럭, 8만 700여 엔어치가 수송되었다. 이처럼 수박 재배가 활성화되다 보니 당시 시흥군 남면과 서이면의 수박 재

51) 『조선총독부관보』 1926년 1월 12일; 『시대일보』 1926년 5월 4일.
52) 「軍浦場 脚戱」, 『동아일보』 1928년 8월 22일.
53) 朝鮮拓植資料調査會, 1927, 『朝鮮鐵道沿線要覽』, 219쪽.
54) 「運送店合同」, 『동아일보』 1927년 12월 27일.

배업자 200여 명은 군포수박출하조합(軍浦水瓜出荷組合)을 결성하여 경기도 농무과의 원조 아래 비료제작과 품종개량에 종사하고 공동검사와 공동판매를 추진했다. 그리하여 1930년대 말에는 군포 수박의 성가(聲價)가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의 안동현 봉천(奉天) 등지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경기도 농무과는 군포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각 군에 조합 결성을 종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군포 수박은 1939년에 8만 개 출하를 목표로 삼아 매일 2,000개씩 경성·평양·함흥·신의주·봉천·신경 등지로 수송되었는데, 한 개의 가격은 1엔 17전에서 1엔 70전 정도의 고가였다.[56]


여름, 味覺의 王
軍浦의 西瓜大豊
每日二千個式出荷

군포 수박의 대풍을 알리는 신문기사[55]

이처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던 근본 토대는 경부철도였다. 그러나 경부철도의 운행이 좋은 결과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철도가 지역을 관통하면서 신종 재앙으로서 교통사고의 발생을 초래했다.[57] 1925년 12월 11일 군포장역에서 당리에 사는 이순필(李順弼)이 열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진 중상을 입었다. 1926년에도 군포장역과 수원역 사이에서 한국인 남자가 열차에 치어 죽은 사고가 발생했다. 1927년에는 군포장역의 조수(助手) 미우라 사카오(三浦榮五)가 열차에 치어 죽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열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났다.[58] 1934년에는 한국인 남자가 레일 위에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어 부상을 입은 사건도 일어났다. 1937년에는 안양~군포 사이에서 두 여인이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졌는데, 두 여인은 가마다제사공장(鎌田製絲工場)의 직공으로서 친우의 불구(不具)를 동정하여 동반 자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말기에 이르러 한국철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강해지자 군포역과 수원역을 잇는 구간은 철도의 거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태평양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해군의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해변까지 출몰하며 일본과 왕래하는 선박을 무차별적으로 격침하는 일이 빈발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불침항로(不沈航路)의 성격을 띠는 한반도 종관

55) 『매일신보』 1939년 8월 9일.
56) 『동아일보』 1935년 8월 20일; 『조선일보』 1939년 7월 29일; 『조선일보』 1939년 7월 30일; 『매일신보』 1939년 8월 6일.
57) 『시대일보』 1925년 12월 11일; 『시대일보』 1926년 5월 28일; 『조선일보』 1927년 1월 20일.
58) 『동아일보』 1934년 12월 20일; 『매일신보』 1937년 8월 27일; 『조선일보』 1937년 8월 28일.

철도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선총독부는 경부철도 수원역과 군포역 사이의 수원군 일왕면(日旺面) 삼리(三里)에 철도 관사를 건립하여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1944년 3월 1일부터 부곡간이정차장(富谷簡易停車場)을 신설했다.

부곡간이정차장의 설치는 군포 주민들의 철도 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 군포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이용하던 시흥군 남면과 수원군 반월면 주민 중 일부가 이제는 부곡역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현 군포시 도마교동과 대야미동 등의 주민들은 기존 군포역보다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부곡역을 이용하여 서울 방면으로 출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역전에서 형성되던 군포장의 장세(場勢)도 차츰 약화되었다.

여 백

제4장 근대 학교교육의 도입과 교육활동

최혜경 | 동국대학교 강사

1. 식민지 교육정책의 내용과 성격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은 가르치는 이들의 모습과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체제에서도 차이가 컸다. 전통교육의 학문체제가 통합적이라면, 근대교육은 학제(學制)와 분과(分科)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즉, 초등 · 중등 · 고등 · 대학과 같은 계단식 체제를 갖추었으며, 특권계층이 아닌 모든 일반인에게 배울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의 교육기관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개항을 전후로 지식인들은 교육개혁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하려면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한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근대교육은 도입단계에서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고, 그 후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과 맞물리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회유와 억압 속에 일본이 실시한 교육정책의 본질은 한국을 식민지로 개편하고 한국인을 식민지인으로 하기 위한 식민지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고등교육을 억제하여 한국인을 우민화시키고 실업교육 내지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법령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4차에 걸쳐 개정 · 발표되었다. 1911년 8월에 시행된 「조선교육령」은 1922년 2월에 제2차 개정, 1938년 3월에 제3차 개정, 그리고 1943년 3월

에 제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일제 식민통치정책의 변화와 함께했던 것으로 1922년의 개정은 3 · 1운동 이후 소위 문화정치의 실시 이후 발표된 것이고, 1938년의 개정은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내선일체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3년 개정은 태평양전쟁이 일본에 불리해지면서 강력한 국가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1]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근간을 마련한 제1차 「조선교육령」은 교육목적을 이른바 '충량(忠良)한 국민육성' 에 두고 있다. 학제는 한국인의 경우 보통학교(3~4년), 남 · 녀고등보통학교(3~4년), 실업학교(2~3년)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3~4년)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인의 학제는 소학교(6년), 중학교(4~5년), 실업학교(3년),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4년)와 대학교(6년)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교육과는 학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이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제정한 한국인의 학제는 교육수준이 낮고 교육연한이 짧았다. 대학도 설치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학교간의 연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점은 중학교로의 진학을 어렵게 했으며,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에도 많은 어려움을 불러왔다. 즉,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근 6년제 학교에 편입하여 5~6학년을 마친 후에야 가능했으며,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부족한 수업을 채워야만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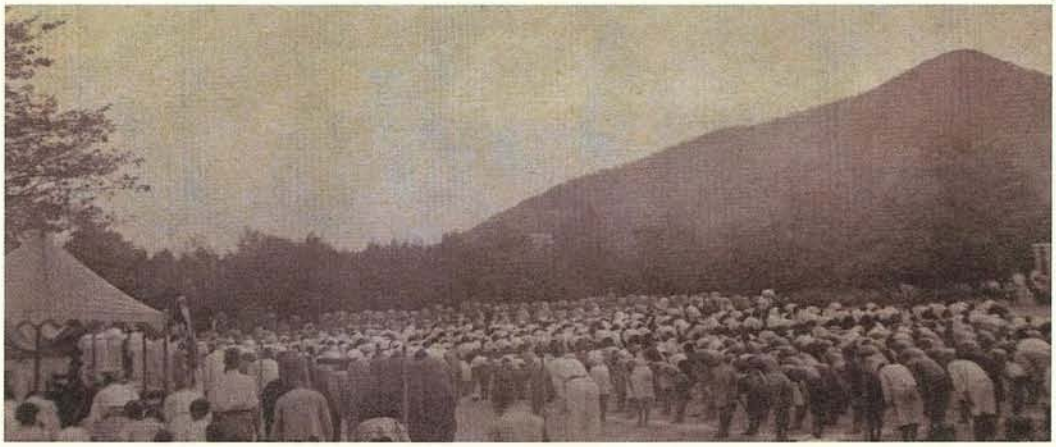
당시 일본은 식민지 교육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한국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였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무단적 통제 강화정책'[2]은 교육계에도 그대로 나타나 강점 초기 강력한 통제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각 지방장관에게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 학교가 법에 위촉될 경우 강제로 폐교시키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사립학교는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서당을 점차 사립학교와 같은 반일민족교육의 장소로 전환[3]하게 하였으며, 이에 일본은 다시금 1918년 2월 「서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서당의 교육에 대해서 탄압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교육열은 날로 고조되었으며, 3 · 1운동 이후 식민지배에 대한 항거를 목격한 일본인들은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표면상 한국인의 교육을 일본인 교육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 놓은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화주의 교육을 더욱 본격화한 것이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6년), 고등보통학교(5년), 여자고등보통학교(3~5년), 전문학교(5년), 대학예과(2년), 대학(4년)으로 학제를 개편함으로써 일본인의 교육연한과 같게 하였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분리시켰으며,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1) 노영택, 2001, 「일제의 교육정책」, 『한국사』 51, 국사편찬위원회, 15~19쪽.

2) 김익한, 2001, 「1910년 전후 山縣 · 伊藤系의 對韓政策기조와 종교정책」,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35~36쪽; 최혜경, 2004, 「1910년 전후 일제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민족운동」, 『동학연구』 17, 한국동학학회, 159~161쪽.

3) 김형목, 2006, 「식민지 교육정책과 경기도내 교육실태」, 『경기도사』 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74~75쪽.



초등학교 학생들의 궁성요배

일제는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아침마다 천황이 거처하는 동경(東京)을 향해 절을 하며 경의를 표하게 하였다. 『반월공립국민학교 제18회 졸업기념사진첩』(1944. 3.)에 실린 이 사진은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산된 문화운동과 교육열은 보통학교 증설로 이어졌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대륙침략을 본격화한 일본은 전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행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식민지 교육정책에 반영되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하에서 한국인을 일본인화하기 위한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상동원'과 '내선일체'가 추진되었고, 일제는 강제징병을 위해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여 병력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시기 창씨개명과 더불어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4]를 제정하여 항시 제창하도록 강요하였고, 외형상 일본인과 한국인의 동등을 주장하며 학교 명칭을 보통학교(普通學校) 대신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통일시키고, 교과내용에서는 일본어와 일본역사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였다. 심상소학교는 1941년에 다시금 국민학교(國民學校)로 개칭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실시, 이과계 전문학교 정원 증가, 문과계 전문학교의 통합, 여자전문학교를 양성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제4차 「조선교육령」으로 학교가 급증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는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일본을 위해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시키기 위한 조치였고,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교과내용에서는 일본어 교육과 수신교육, 실업교육이 보다 강화되었다. 일본어 보급과 일본역사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교수 용어가 일본어로 통일되었고, 조선어 교과목을 완전 폐지시켰다. 더불어 학교를 전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육성 · 공급하는 장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군사교육이 강화되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도발 이후로는 한국

4) 소학교용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씩씩한 국민이 됩니다.

을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공급처로 삼고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쟁물자 수집에 동원하였다. 이렇게 황민화 교육과 군사교육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는 탄압과 수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 근대적 교육기관의 등장

근대식 학교교육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대체로 아동들의 교육을 서당에서 담당하였다. 노년층 토박이들의 회고에 따르면, 그들이 어린 시절에는 서당이 한곳에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훈장을 하던 이가 작고하면 글을 아는 다른 이가 자기 집에서 훈장을 하며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달력이 흔치 않던 시절, 훈장은 달력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학생들은 추석이나 명절 외에는 꾸준히 와서 배웠다. 정해진 교재는 없었고, 대체로 초등교육교재로는 『천자문』·『계몽편』·『동몽선습』, 중등교육교재로는 『명심보감』·『소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치통감』과 『사서삼경』을 배웠다. 당시에는 한 과정을 마치면 '책씨세(책씻이)'를 했다고 한다. 학비로는 여름에 보리 한 말, 가을에 쌀 한 말 정도를 냈는데,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꿀과 고기를 내기도 하였다.[5]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는 그것도 내지 못하여 서당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예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당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상황은 학교교육이 도입된 이후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다니더라도 한두 해 다니다가 그만두기 일쑤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70~80대 연령층에서는 일반적이었으며, 정규학교교육은 60대 연령층에 와서야 일반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6]

그렇다면 군포 지역에서 근대적인 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현재까지 그와 관련된 기록은 1909년경부터 확인된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안산군 북방면 속달리에 설립된 좌동학교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안산좌동학교
>
> 경기도 안산군 북방면 속달리 이장 정규대 □통경 고진□ 양씨가 초동야학교를 셜립하여 그 근처 초동을 모집하야 교수하는데 학생이 사십여 명이라더라.[7]

5)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대아동 마을지』, 169~172쪽.
6)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대아동 마을지』, 171쪽.
7)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1일.

1909년 당시 북방면 속달리는 3개 리였는데, 그중 1리는 현재의 대야미동 갈치 마을에 해당하고, 2리와 3리는 현재의 속달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학교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설립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40여 명의 초동을 모집하여 가르친 야학이라고 한 것에서 그 성격이 일반적인 서당과는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좌동학교 다음으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과남학교(果南學校)이다. 1910년 『매일신보』에는 「과남교황(果南校況)」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판독이 어려운 글자가 일부 있으나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果南校況

果川郡 南面 果□學校ᄂᆞᆫ 該面 山本洞에 移設ᄒᆞᆫ□ 十個月에 校長 姜寅奎, 副校長 □大應, 敎師 金恩純, 財務長 李秀□, 學監 李鍾薰, 事務長 劉敎澤 諸□가 熱心 敎育ᄒᆞᆷ으로서 學徒가 五□名에 達ᄒᆞ엿다더라[8]

이 기사를 통해서 볼 때, 당시 과남학교는 과천군 남면 산본리(현 산본동)에 설립되었고, 교장 강인규, 부교장 □대응, 교사 김은순, 재무장 이수□, 학감 이종훈, 사무장 정교택 등이 열심히 교육함으로써 학생수가 오십여 명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설한 지 10개월이란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1909년 말에는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좌동학교나 과남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교육을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인근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의 과천시에 해당하는 당시 과천군 군내면에는 1900년 설립된 공립소학교가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이 제정된 이후 폐교되고, 이를 대신하여 사립 광명학교(光明學校)가 설립되었다. 1906년 설립된 광명학교는 3년제로 1년에 두 번 학기시험을 통해 학습 정도를 평가하였다. 1908년에는 군내면 과천향교 내에 사립 명륜학교(明倫學校)도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는 신구학문의 절충론에 입각하여 지육(智育)·덕육(德育)·체육(體育)에 대해 교육하였다. 광명학교와 명륜학교는 1909년 9월에 합병하여 쌍명학교(雙明學校)가 되었다.[9]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좌동학교나 과남학교에서도 신구학문을 절충하며 근대학교가 지향한 지·덕·체를 갖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좌동학교나 과남학교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도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삼성교회[10]가 운영한 '삼성학원'이 그것이다. 이 학교는 달리 '삼성학교'로도 불리었다. 삼

8) 「잡보」, 『매일신보』 1910년 9월 24일.

9) 차선혜, 2007, 「통감부시기 국권회복운동」, 『과천시지』 1, 과천시지편찬위원회, 343~347쪽.

10) 삼성리교회는 본래 현 안양시 호계동의 덕고개라는 곳에 있었다. 1908년 3월 버딕(George M. Burdick, 邊兆鎭) 선교사가 삼성리(현 부곡동 삼성 마을)에 거주하던 곽내옥, 곽규석, 조덕구 3인을 가르치면서 삼성리교회 설립 계기를 마련하였다. 1911년 8월에는 신학자이며 교육자인 클라크(C. A. Clark, 郭安連) 목사가 곽내희 집에 기도처를 세우고 곽규석, 조덕구를 서리집사로 임명하여 각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었다. 1915년 12월 20일에는 덕고개예배당이 삼성리로 이전하였으며, 삼성리교회는 1919년 6월 9일에 당회를 구성함으로써 조직교회가 되었다.



삼성학원생들의 기념촬영(이수동 소장)
이 사진은 1939년 3월 17일에 삼성학원에 다니던 전교생이 그해 입학을 기념하여 촬영한 것이다. 맨 좌측에 두루마기를 걸친 이는 교장인 곽규찬 씨이고, 그 옆에 있는 이는 김씨 성을 가진 교사였다.

성학원의 운영체제는 과남학교와 비슷하였던 듯하며, 그에 대해서는 1932년 제22회 삼성교회 당회(堂會) 기록으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 一九三二年 十一月 二十三日(水曜日) 上午 八時의 堂會가 郭圭詳 領袖宅의 會集하여셔 會長의 긔도로 開會하고 學校任員을 選擇한이 校長 郭圭瓚 領袖로 션틱ᄒᆞ고 副校長은 朴世顯 領袖로, 學監 郭泰昌, 會計 郭順建, 副會計의 郭泰鉉氏로 션틱ᄒᆞ고 先生任宿所은 校長宅으로 結定ᄒᆞ고 同午前 九時의 쥬긔도로 閉會하다.[11]

삼성학원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1930년 4월 15일에 개최된 제17회 당회의 기록으로 당시 '삼성리 유치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삼성학원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당시 부곡리나 당리에 거주하던 아동뿐만 아니라 멀리는 지금의 의왕과 안산 쪽에서도 삼성학원에 배우러 오는 아동이 있었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이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삼성리 교회 본당에서 공부하였고 곡식을 내어 학원 경비로 충당했다. 학제는 4년제 초등과정이었으나,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곳에 다니다 군포공립보통학교(후에 군포심상소학교, 군포공립국민학교로 개칭)에 진학하면 한두 학년을 낮추어서 다녀야 했다. 교육 내용은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였는데, 일제 말기로 오면서 한글교육도 사라지게 되었다.

11) 『始興三星里堂會錄』, 1932년 11월 23일.

좌동학교나 과남학교, 그리고 삼성학원 등의 교육기관은 강습소 형태로 유지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령 초과, 경제적 빈곤, 입학 정원 초과, 원거리 통학 등의 이유로 공립보통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모아 교육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외에 일제강점기 군포 지역에 존재했던 강습소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군포국민학교 제29회 졸업생들의 학적부에 나타난 입학 전 교육경력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말 군포 지역 강습소의 현황을 조금이나마 살펴 볼 수 있다.[12] 제29회 졸업생은 1943년 입학하여 1949년 졸업하였는데, 2개 반에 총 129명이었다. 그중 성별이 파악된 1반은 남학생 44명, 여학생 18명으로 총 62명이었고, 2반은 총 67명이었다. 이들의 입학 전 교육경력을 보면, 1반에서는 27명이 입학 전 교육경력이 있었고, 그중 17명이 강습소에서 학습하였다. 2반에서는 42명이 입학 전 교육경력이 있었고, 그중 32명이 강습소에서 학습하였다.

〈표 1〉 군포국민학교 제29회 졸업생의 입학 전 교육경력

(단위 : 명)

반	계	강습소				타 초등학교 재학 및 수료	없음 및 미기록
		삼성강습소	광정강습소	학술강습소	강습소		
1반	62	7	2	5	3	10	35
2반	67	7	7	14	4	10	25

출처 : 군포국민학교, 1949, 『제29회 학적부』.

이 학적부에 기록된 강습소는 모두 네 곳이다. 삼성강습소, 광정강습소, 학술강습소, 그리고 이름 없이 강습소로만 적힌 곳이 한 곳이다. 그중 삼성강습소는 앞에서 살펴본 삼성학원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주소를 기준으로 할 때, 당리와 당정리 거주 학생들은 학술강습소나 강습소, 부곡리 거주 학생들은 삼성강습소, 산본리와 금정리 거주 학생들은 광정강습소에 주로 다녔던 것으로 파악된다.

12) 일제강점기 군포초등학교의 학생 상황에 대한 상세 기록은 『第二十九回 學籍簿』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자료에는 당시 학생들의 인적사항, 학년별 성적, 신체검사표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교육 현황

1)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일제강점기 초 근대 학교교육이 보급되기 시작할 즈음, 초등과정을 가르치는 보통학교 진학률은 상당히 저조했다. 학교에 다니면 나중에 일본병정으로 뽑혀 간다는 소문마저 돌아 부모들은 학교 보내기를 꺼리게 되었고, 보통학교를 가난한 아이들이 다닌다는 뜻으로 빈민학교라고 부르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이나 그 밖의 대도시를 제외한 곳에서는 입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910년 무렵에 보통학교 취학률은 1% 정도에 머물렀고, 심지어 순사나 헌병보조원이 서당에 들이닥쳐 아이들을 보통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끌고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아이들을 보통학교에 보내려는 사람이 크게 늘고 보통학교에서 상급학교로 가는 것이 큰 흐름이 되었고, 이 시기 군포 지역에도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군포 지역에서 근대학교의 효시가 되었던 것은 1919년 인가되고[13] 1920년 설립된 군포공립보통학교이다.[14] 이 학교의 설립에는 1924년 시흥군 남면진흥회를 설립한 조중완[15]과 1931년 농촌개량연합회 설립에 참여하고 부회장을 맡은 양재식 등이 큰 기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신문에서는 남면진흥회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군포공립보통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 …… 관민(官民)이 일치협력하야 착착 진행되여 대정 팔년에 만여 원의 금젼과 수오쳔 명의 부역으로 교수(校舍)를 일신히 건축하고 군포공립보통학교(軍浦公立普通學校)로 인가를 어더 삼수빅 명의 자질을 교육하야 ……[16]

일제강점기에 군포 지역 아동들은 군포공립보통학교 외에 반월공립보통학교로도 진학하였다. 현재 대야동에 해당하는 수원군 반월면의 대야미리, 도마교리, 둔대리, 속달리 아동들이 주로 건건리에 설립된 반월공립보통학교로 진학하였다. 이 학교는 1923년 5월 30일 개교한 이래 1938년 3월 반월심상소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43년 4월 반월공립국민학교로 다시 교명을 변경하였다.[17]

13) 「고시」,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6월 13일.

14) 군포초등학교의 전신인 군포공립보통학교는 군포공보, 군포장공립보통학교, 군포장공보로도 불리었다. 이 학교는 설립 당시 군포장역 부근에 있었으나 1959년 10월 20일 현재의 위치인 당동 795-4번지(군포로 464)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5) 조중완(趙重完, 1879~1942)은 일제강점기 군포 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1916년 시흥군 남면장을 맡았으며, 1924년에 군포 지역에 남면진흥회를 조직하여 시흥군 남면의 농촌개량운동에 앞장섰다. 1921년과 1924년 경기도 평의회원이 되었으며, 1928년 군포우편소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1930년부터 다시 10년간 시흥군 남면장(1930. 12. 15~1939. 12. 14)을 역임한 인물이다. 농촌개량소조합을 결성하였으며 군포공립보통학교 설립에 기여하였다.

16) 「始興軍浦驛前의 農林品評 面單位로 開催」, 『매일신보』 1924년 11월 27일.

17) 「학교연혁」, 반월초등학교(http://www.banwol.es.kr).

2) 중심학교로 성장한 군포공립보통학교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된 군포 지역의 상황과는 달리 당시에는 학교 부족 현상으로 학생들의 진학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 적지 않았다. 안양 지역의 경우에는 수백 명의 아동이 기차를 이용하여 군포, 시흥(현 서울시 금천구), 영등포 혹은 과천 등지의 보통학교에 통학하였는데, 나이 어린 아동에게 기차통학을 시키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호소하며 공립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18] 의왕 지역의 경우에도 574명의 학령(學齡) 아동 중 관내의 성현서당(星峴書堂)에 68명, 군포공립보통학교에 88명, 과천공립보통학교에 43명 등 모두 198명만이 수용되고, 나머지 376명은 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학교 설립운동을 벌였다.[19] 이처럼 1920년 말부터 달아오른 보통학교 입학 열기는 1930년대에 더욱 활발해지며, 면 단위로 보통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학교를 늘리려는 운동이 확산되었다.

한편, 3 · 1운동 이후 1920년대 들어서면서 시흥군은 교육열이 높아 보통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았으나 제2차 「조선교육령」하에서 상급학교 진학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6년제 보통학교 설립은 극히 제한을 받았다. 6년제 보통학교는 큰 도시에 집중시키고 군 단위에는 1~2개밖에 설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4년제 보통학교는 대부분 농촌 지역에 두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농민자녀들은 상급학교 교육의 기회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면 인근 지역의 6년제 보통학교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27년 『동아일보』는 시흥군의 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京畿道 始興郡은 中等敎育機關은 아즉 一個所도 업스나 普通學校는 現在 六個 公普와 一個 分敎場 兩 私立 二個所에 …… 現在 軍浦, 永登浦, 果川도 公普와 私立 恩露만이 六學年制度이고 其他는 四年制임으로 今日의 四學年 卒業 程度로는 上級學校에 入學은 全然 할 수 업스며 他 普校 五學年에 入學코자 하나 收容하는 곳이 업슴으로 할 수 업시 그대로 不足하나마 四年을 卒業한 채로 金갓튼 歲月만 徒費할 뿐이라는바 …….[20]

당시 학생들은 4년제 보통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타 학교 5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나 수용하는 곳이 없기에 졸업 후 세월만 소비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대부분 6년제 학교를 선호하였고 4년제 학교를 외면함으로써 4년제 보통학교는 학생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예로 1929년 시흥군 소속 6년제 보통학교인 영등포공립보통학교의 경우 90명

18) 「來年의 宿題이든 安養普校 設立 七月一日부터 開校」, 『동아일보』 1929년 3월 18일.
19) 「水原郡 儀旺面에도 公普校 設置 運動」, 『조선중앙일보』 1935년 7월 21일.
20) 「四學年制 아닭에 學生募集 困難」, 『동아일보』 1927년 3월 24일.

정원에 250명이 지원해 입학자 초과로 선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21] 군포공립보통학교의 경우에도 60명 모집에 98명이 지원함으로써 6년제 학교의 부족을 실감하게 하였다.[22] 반면, 인근의 안산공립보통학교나 군자공립보통학교 등 4년제 보통학교의 경우, 여전히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보이며 폐교의 위기를 호소하기도 하였다.[23]

1930년대까지도 군포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는 흔치 않았던 6년제인, 군포공립보통학교는 중심학교로 성장하였고, 인근 지역에서 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 이는 졸업대장[24]에 수록된 졸업생들의 거주지 현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16회 졸업생을 예로 들면, 1937년 졸업한 69명 중 군포 지역 거주자는 24명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안양 지역 22명, 의왕 지역 11명을 비롯하여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광명시, 안산시 등지에도 거주하였다. 이후 졸업생들도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군포 다음으로 많은 학생이 다닌 안양 지역의 경우, 1929년에 안양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이 학교는 1940년이 되어서야 6년제가 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안양 지역의 많은 학생이 군포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2〉 군포공립보통학교 제16회 졸업생 거주지 현황

(단위 : 명)

현재 행정구역	거주지	졸업생수	현재 행정구역	거주지	졸업생수
군포시	계	24	의왕시	계	11
	금정리	1		고천리	3
	당 리	8		오전리	6
	당정리	6		이 리	2
	부곡리	8	광명시	계	5
	산본리	1		소하리	3
안양시	계	22		일직리	1
	박달리	2		하안리	1
	비산리	4	서울시 금천구	계	5
	안양리	10		시흥리	4
	호계리	6		독산리	1
안산시	계	1	기타	계	1
	팔곡1리	1		청산면(포천시)	1

출처 : 군포초등학교, 『1921-1968 졸업대장』(국가기록원 소장).

6년제 보통학교의 부족은 4년제 과정을 마친 어린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6년제 학교를 찾아 통학하게 만드는 등 불편을 심화시켰다. 이에 지역별로 지방 유지들이 나서서 모금을 하여 4년제 공

21) 「始興郡 入學難」, 『조선일보』 1929년 4월 8일.

22) 「昭和四年度初等學校入學支援者及卒業者進路一覽表」,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23) 「入學志願者 업서 兩校는 廢校 地境」, 『동아일보』 1930년 3월 22일.

24) 군포초등학교의 『1921-1968 졸업대장』(국가기록원 소장)에는 1937년 제16회 졸업생부터 본적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거주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1941년 제20회 졸업생부터 1945년 제24회 졸업생까지는 창씨개명으로 모두 일본식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립보통학교의 학년 연장(延長)을 추진하였다. 4년제였던 반월공립보통학교에서도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년 연장을 위한 면민대회(面民大會)를 개최하였다.

> 수원군 반월면 공립보통학교(水原郡半月面公立普通學校)는 금년에 제九회 졸업생까지 四백여 명을 내엇스나 四년제인 까닭에 상급교에 가지 못하고 전부 중도에서 방황하게 됨으로 면민 一반은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든바 학년 연장긔성회를 조직하고 지난 二十일 오후 一시에 동 공보교 강당에서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학년연장의 진정서를 도와 군 당국에 제출키로 결의하얏다고 한다.[25]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 측이 시종일관 경비부족을 이유로 외면하면서 6년제 학교 부족현상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3) 학생 현황과 졸업 후 진로

일제강점기에는 강습소에 다니다가 정규 학교로 진학하거나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늦은 나이에 입학하는 사례가 흔했다. 중도에 휴학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같은 학년일지라도 학생들의 연령층은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군포국민학교 제29회 졸업생 중 1반의 경우에 1932년 출생자부터 1938년 출생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표 3〉 군포국민학교 제29회 졸업생 중 1반의 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 출생연도(연령)	계	1932(12세)	1934(10세)	1935(9세)	1936(8세)	1937(7세)	1938(6세)
계	62	1	3	12	22	20	4
남학생	44	1	3	9	16	13	2
여학생	18	–	–	3	6	7	2

출처 : 군포국민학교, 1949, 『제29회 학적부』.

1920년 말부터 달아오른 보통학교 입학 열기는 193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강해지는데, 군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군포 지역 아동들이 다닌 학교 두 곳 중 졸업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군포공립보통학교 사례를 보면, 일제강점기 이 학교의 졸업생 총수는 1,185명으로 나타난다. 1925년까지 10명 내외였던 졸업생수가 1926년에는 32명으로 급증하고, 1929년에는 일시적으로 60

25) 「水原 半月公普 學年 延長 運動」, 『조선중앙일보』 1934년 10월 22일.



군포국민학교 제29회 졸업(1950. 5.) 기념사진(김기홍 소장)

명을 넘어섰다. 1930년대부터는 다소 기복이 있으나, 최소 46명, 최대 74명의 학생이 매년 졸업하였다. 인근 지역에 4년제 보통학교가 생기고 1940년대에는 6년제 학교도 늘어남을 감안하면, 관내 초등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4〉 일제강점기 군포공립보통(국민)학교 졸업자 현황

(단위 : 명)

회차	졸업일	졸업생수	비고	회차	졸업일	졸업생수	비고
1	1921. 3. 21.	5		13	1934. 3. 20.	46	
2	1922. 3. 23.	10		14	1935. 3. 19.	70	
3	–	9		15	1936. 3. 21.	65	
4	1925. 3. 22.	11		16	1937. 3. 19.	69	
5	1926. 3. 20.	32		17	1938. 3. 25.	52	
6	1927. 3. 23.	35		18	1939. 3. 20.	62	
7	1928. 3. 20.	51		19	1940. 3. 23.	60	남 48, 여 12
8	1929. 3. 20.	62		20	1941. 3. 19.	65	
9	1930. 3. 23.	54		21	1942. 3. 18.	74	
10	1931. 3. 21.	53		22	1943. 3. 18.	69	
11	1932. 3. 20.	53		23	1944. 3. 20.	64	남 49, 여 15
12	1933. 3. 20.	47		24	1945. 3. 23.	67	남 45, 여 22

출처 : 군포초등학교, 『1921-1968 졸업대장』(국가기록원 소장).

그렇다면 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진로를 택하였을까? 1929년 자료에 의하면, 그해 군포공립보통학교의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는 29명이었고, 기타가 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26] 『1921-1968 졸업대장』에 그해 졸업자가 62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36명의 진로는 기록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 중에는 농업종사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다. 상급학교 진학자의 경우 일제강점기에는 군포 인근 지역에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영등포나 수원 등지의 학교로 진학하여 열차를 타고 통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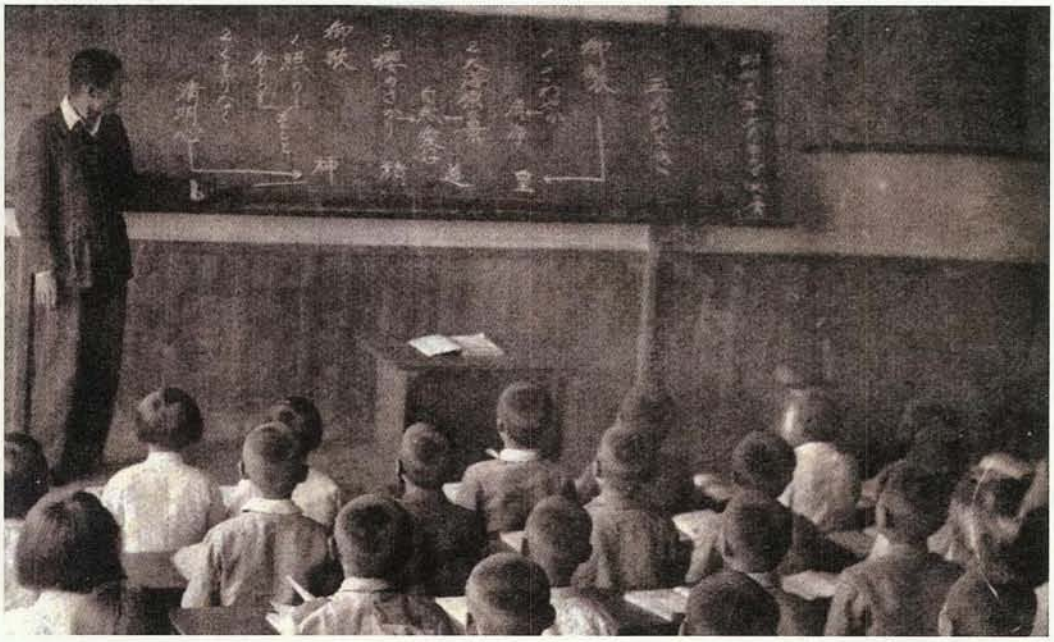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는 6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상급학교인 중학교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중학교 입학자격을 얻자면 재산증명서와 가정의 정치적 동향에 대한 교장 및 경찰서의 허가서(평정)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진학을 원하는 많은 학생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 초등과정 졸업 후 중학과정으로의 진학률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

4. 교육 활동과 내용

일제강점기 보통학교의 교실 모습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실 앞에는 흑판과 교단과 교탁이 있고, 흑판 위쪽에는 일본 천황이 거주하는 궁성 사진이, 흑판 좌우 벽에는 교훈 · 급훈과 지도가 걸려 있었다. 교실 뒤쪽 벽에는 전달사항이나 학생들의 그림을 전시하는 게시판이 있고, 벽 양쪽으로 표어를 담은 액자나 서예 등이 걸려 있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군인처럼 제복을 입은 일본인들이 교단에 섰으며, 일본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또한 당시에는 조회 시간을 통해 명령과 복종관계를 주지시키며 학생들에게 일본의 천황제사상과 근대적 규율을 스스로 익히게 하였다.[27]

교육과정에서는 일본어교육과 더불어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 그 목적은 근로의식의 고취와 생산력 증대, 나아가 이를 통해서 노동자, 농민 등에 대한 보다 가혹한 수탈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또한 군사능력 강화와 황국신민 양성을 목표로 체육교육도 강조되었다.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교육 관련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그 당시 보통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요시되던 언어, 실업, 체육 교육을 중심으로 군포 지역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26) 「昭和四年度初等學校入學支援者及卒業者進路一覽表」,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27) 최규진, 2007, 『근대를 보는 창 20』, 서해문집, 34~36쪽.



일제강점기 반월공립국민학교의 교실 모습

이 사진은 『반월공립국민학교 제18회 졸업기념사진첩』(1944. 3.)에 실린 것으로 당시 교실 풍경을 잘 보여 준다. 흑판 아래쪽에 '황도정신(皇道精神)'이 필기된 점으로 미루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천황제사상을 교육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1) 한글교육과 일어교육

일제강점기 식민 교육정책에 따라 일본어는 필수과목인 '국어'가 되었으며, 한글은 선택과목인 '조선어'로 전락하였다. 당시 공식어인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식민지 정규교육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교육받은 사람들의 언어'인 일본어는 고급지식과 문화를 누리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일본어 문맹률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민정책의 효용성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관공서나 보통학교가 나서서 일본어 보급에 주력하였다. 관청이나 일본인의 지원으로 여름휴가나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 강습회가 개최되어 학교교육에서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보급하였다. 강습회에서는 일본어를 주요 과목으로 하되 문맹자를 위하여 한글이나 초보적인 한문, 산술 등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어 보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일제강점기 이중언어 구조 속에서 한글만으로는 필요한 문자생활을 다할 수가 없었다. 한글은 늘 곁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민족 언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고,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한글보급을 통한 문맹퇴치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즉,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 교육은 관공서나 학교 등을 통한 일본어문맹 타파와 농촌계몽운동을 통한 한

글문맹 타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군포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국어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1931년 농촌개량소조합(農村改良小組合)에서 실행한 규약에서 신문도서열람소의 설치를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28] 실제 설치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20년대 이후 신문도서열람소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신문이나 책들을 대신 읽어 주었다. 그러나 이곳은 단지 글을 모르는 이를 위한 공동체 독서 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청년,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정치 · 사회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였다. 한글 보급과 관련하여 1932년 250명을 모아 군포공립보통학교에서 한글강습회를 전개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 당지 유력단체의 열렬한 후원과 유지 제씨의 노력으로 八월 十일부터 개강하얏다. 생도 모집에는 일일히 가정방문을 하야 모집한 결과 넘우 만허서 조 대본 六十 부를 갓다가 공책과 연필을 아울려 二백 五十 명의 생도에게 분배하고 좌긔와 여히 개강하얏다.
>
> 講習地 始興郡 軍浦公立普通學校
>
> 生徒數 男女 二百五十名(男女 四十歲 壯年이 多數)
>
> 班別 靑年部, 少年部, 婦人部, 어린이A · B部의 五班으로 分함[29]

그해 8월 8일 개강하여 29일 종료한 이 강습회는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초 250명 가운데 종료일까지 229명이 함께 했으며, 교육생 중에는 농촌부녀자와 들에서 일하던 청년 등 40세 이상의 장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1일간의 강습을 통해 한글 해득자가 남자 96명, 여자 59명으로 총 155명, 숫자 해득자가 남자 72명, 여자 21명으로 총 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30]

다음해인 1933년에도 시흥군 남면 농촌진흥회연합회(農村振興會聯合會)에서 농촌부인야학(農村婦人夜學)을 개설하여 한글과 숫자를 가르쳤으며, 그 외에 가계부 작성법을 강의하여 농산물에 대한 수납과 일용품에 대한 지출을 기록하는 교육을 하였다. 또한 군포공립보통학교에서도 한글 신철자법 강습을 개최하여 20세 이상 54세까지의 성인 110명이 1주일간 교육을 받았다. 당시 강사로는 양정고보(養正高普)의 조두진(趙斗鎭)이 활동하였다.[31]

1930년대 시흥군 일원에서도 야학이 상당수 설립 운영되었고,[32] 군포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1930년대 초반 조두진과 군포공립보통학교 등이 주축이 되어 전개한 한글 위주의 강습회는 1930년대 후반에 일본어교육이 본격화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1930년대 후반 실시된 '국어

28) 「生活改善을 目標로 農村改良組合 蜂起」, 『동아일보』 1931년 4월 8일.
29) 「時時로 童話」, 『동아일보』 1932년 8월 24일.
30) 「素人劇 開催 브나로드運動 說明」, 『동아일보』 1932년 8월 31일; 「慰安素人劇 대성황을 이루엇다」, 『동아일보』 1932년 9월 2일.
31) 「始興 婦人夜學 記帳法 敎授」, 『동아일보』 1933년 7월 4일; 「綴字法講習會 軍浦에서 開催」, 『동아일보』 1933년 8월 26일.
32) 1938년 기준으로 시흥군에는 19개의 야학이 운영되고 있었다(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시흥군지』 하, 1386쪽).

(일본어)강습회' 는 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보완하며 일반인에게는 야학의 형태로 보급되었다. 다음 신문기사는 이러한 당시 상황을 잘 알려 준다.

> 시흥군 남면 군포장(始興郡 南面 軍浦場)에 잇는 군포소학교장 횡전언윤(橫田彦胤) 씨의 알선으로 지난 삼월 일일부터 삼월 말일까지 일개월 간 매일 밤 일곱 시부터 세 시간 동안 부근의 가정부인들을 모아 문맹퇴치(文盲退治)와 국어보급(國語普及)을 위하야 전기 군포소학교 교실에서 김언례(金彦禮) 훈도의 지도로 가정부인야학을 개시하엿는데 현재 학생이 사십 명으로 대부분이 삼십 전후의 가정부인들이라 한다. 전기 횡전 교장은 지난 일월부터 이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농촌 중견청년들의 문맹퇴치를 위하여 군포청년단원 중에 국어를 리해하지 못하는 단원들을 중심으로 부근 청년 팔십오 명을 모아서 야학을 시작하야 예상 이상의 성적을 남겨 논 데 비치여 보아 이번 부인야학도 반다시 조흔 성적을 남기여 노흐리라는바 하여간 일반 주민 간에는 횡전 교장에 대하야 감사함을 마지 안는다 한다.[33]

군포 지역을 비롯하여, 1930년대 국어교육은 단기 강습회의 형태로 한글과 일본어 문맹을 타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 국어교육이 주로 한글 보급을 목적으로 실시된 데 비해,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일본어 보급과 일본의 체제옹호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2) 실업교육

1920년대 이후 일본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체제 안으로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과 맞물려 군포 지역의 경우에도 다양한 모습의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시흥군 남면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700호 미만의 작은 면이었으나 일찍이 남면진흥회(南面振興會)를 조직하여 농업, 임업, 잠업, 축산업 및 의복, 위생 등 생활제반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 제시하였다.[34] 남면진흥회는 군포장우편소장을 맡고 있던 조중완의 발기로 창립되었는데, 그 목적은 농촌진흥과 풍속개량에 전력을 다하여 농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구입하여 일반농가에 공평히 사용하게 하는 등 농민에게 직접 실이익을 주는 것이었다.[35] 그리고 1926년 미래지식 개발과 청년수양사업 단체로서 군포 지역을 대표했던 군포구락부(軍浦俱樂部)가 설립되었다.[36]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1927년 군포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교내에 농업

33) 「農村婦人 夜學會」, 『조선일보』 1938년 4월 11일.
34) 「始興 軍浦署前의 農林品評 面單位로 開催」, 『매일신보』 1924년 11월 27일.
35) 「振興會 組織」, 『시대일보』 1926년 4월 26일.

보습과(農業補習科) 설립을 추진하였다.

> 始興郡은 普通敎育機關으로는 六個 公普와 一個 分敎場 及 私立 二 三個 校가 잇슬 뿐이고, 中等敎育機關은 一個所도 업슬 뿐만 아니라 全體가 農村임에도 不拘하고 農業에 關한 敎育機關이 全無함으로 普校를 맛치고는 大槪가 京城農業 或은 振威公普農業補習科로 入學하는 生이 年年이 增加하여 實業方面을 希望하는 傾向이 잇슴으로 軍浦場에 잇고 軍浦公普校에서는 多數의 農村學生의 職業救策으로 于先 農業補習科를 該校 內에 設置코자 同校長 武田 씨는 모든 準備에 怱忙 中이며 一方으로 各 關係當局과 交涉 中이라더라.[37]

그 결과, 군포공립보통학교에서는 간이농업보습과를 설치하였다. 그후 농사 지도와 근검절약을 주제로 다양한 전람회를 개최하여 낙곡수집(落穀蒐集), 율실습득(栗實拾得), 자작학용품(自作學用品), 폐품이용품(廢品利用品)을 전시하는 등 실생활에 활용을 유도하였다.[38]

한편, 일본은 1927년 보통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생지도' 라는 명목으로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농촌청소년들로 하여금 과수, 채소, 원예, 축산과 제반 영농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건실한 영농후계자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 운동을 이끌어 갈 인물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졸업생지도학교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군포공립보통학교도 1928년에 졸업생지도학교로 선정되어 학생 중 일부를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실업교육에 참여시켰다.[39]

졸업생지도 사례 중 우수 사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군포 지역에서는 서병익(徐丙益)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자립영농7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종묘장 실습생이었던 양재호(梁在鎬)와 양잠실습생이었던 양규석(梁奎錫)이 강습 후 귀향하여 실시한 성공담을 발표하였다.[40] 그리고 김성권(金性權)도 활동사례를 발표하였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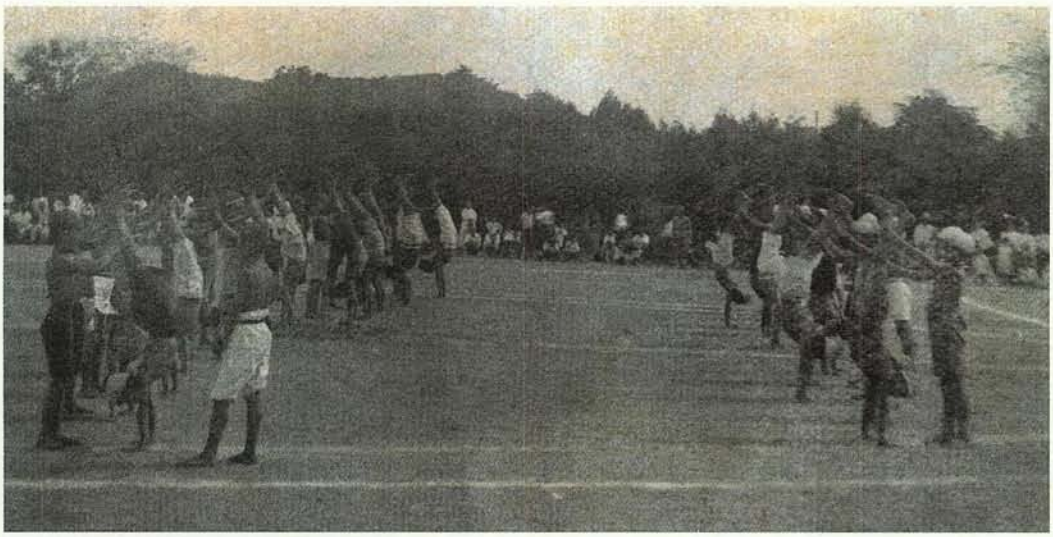
군포공립보통학교는 지도학교로 지정된 후 농촌진흥에 앞장섰으나 그에 따른 폐단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이 제시한 실업 · 실습 위주의 활동이 너무 과도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끼치는 폐해가 컸고,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성적도 저조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이 도 지정 지도학교로서의 교육방침임을 강조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진학을 목적으로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였다.[42]

36) 「軍浦俱樂部 去月末日 創立」, 『동아일보』 1926년 6월 9일.
37) 「農業科 設置? 軍浦場公普서」, 『동아일보』 1927년 2월 1일.
38) 「勤儉節約展覽 군포장공보서」, 『동아일보』 1930년 12월 29일.
39) 경기도, 1930, 『卒業生指導 勤勞美談』 제1집, 83~84쪽.
40) 경기도, 1930, 『卒業生指導 勤勞美談』 제1집, 29~39 · 83~90쪽.
41) 경기도교육회, 1933, 『卒業生指導 勤勞美談』 제2집, 112~121쪽.
42) 「實習 過重으로 軍浦公普 學父兄들 憤慨」, 『동아일보』 1936년 5월 27일.

학생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교육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시흥군은 농가 부업을 장려키 위해 농잠순회교사를 각 면에 배치하는가 하면, 봉성리(현 당정동)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자융통, 농사개량, 농산물 및 수용품 공동구입 판매 등을 실시하는 흥산조합(興産組合)이 설립되기도 하였다.[43] 또한 1931년 군포공립보통학교장과 남면장 조중완의 주도하에 남면 21개 촌락에 농촌개량소조합을 조직하여 다각적인 농법과 산업을 장려하고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을 지도하며 모범촌락을 실현하고자 하였다.[44] 이 외에도 1933년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군포소년단(軍浦少年團), 청년들을 대상으로 남면청년회(南面青年會)를 발족하여 근로와 실질을 강조하였다.[45] 이렇듯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추진된 활동들은 행정의 혁신, 생활개선, 교화사업, 농촌진흥 등 각 방면에 우수한 실적을 내었다.

3) 체육교육

근대학교가 지향한 지 · 덕 · 체를 갖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일제강점기 학교교육을 통한 군사능력 강화는 자연스레 체육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체육활동은 1896년 5월 화류회(花柳會)에서 육상경기 등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매년 각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면서 활성화되었고, 그 규모도 점차 커져 연합운동회로 발전하였다. 1909년까지 각 지역별로



일제 말기 반월공립국민학교의 체육대회 모습(『반월공립국민학교 제18회 졸업기념사진첩』)

43) 「養蠶敎師 配置」, 『동아일보』 1928년 4월 20일; 「農民救濟機關 鳳城興産組 創立」, 『동아일보』 1927년 7월 15일.
44) 「各部落に納稅旗立てたち競ふ納てめる」, 『경성일보』 1932년 11월 3일.
45) 「안으로 勤勞 밖으로 奉仕」, 『동아일보』 1933년 7월 2일; 「南面青年會 組織」, 『동아일보』 1933년 9월 9일.

굉장히 많은 운동회가 열렸다. 당시 운동회는 국권회복과 민족의 항일정신 고취를 위한 계기로 활용되었다. 태극기를 걸고 애국심을 주제로 연설하는 등 운동회를 통해 애국사상을 기르고 체력을 강건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운동회를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은 1909년 「연합운동회 금지령」을 발표하였다. 국권회복의 기초로서 무력을 키우려던 목표를 차단하고 일체의 민족경기를 규제할 뿐 아니라 연합운동회를 없애고 개별 단위 운동회만 열도록 하였다. 군포 지역의 경우에도 몇 건의 일제강점기 체육 관련 자료가 있으나 모두 개별 단위에서 열린 운동회뿐이며, 연합운동회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1930년대 일본이 대륙전쟁을 감행한 이후로 학교체육은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예전의 체육대회는 '국민체육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전쟁 준비를 위한 체력증강, 전투훈련만 다루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37년부터 학교체조는 군사능력 강화와 황국신민 양성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군포공립보통학교를 포함하여 시흥군 각 학교의 1938년 9월 추기운동회에서 "비상시국에 비치어 화미 경박한 것을 피하고 실질 건실을 주지로서 거행"하게 됨을 제시하였으며, 1939년 9월 추기운동회에서는 "전시체제하 체위 향상을 목표로 거행"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46]

일본은 참고 견디며 몸을 단련하는 훈련을 목적으로 '황국신민체조'를 도입하였으며, 1943년부터는 전시체력을 키우기 위해 중학생 이상 학생에게 체력장 검정제를 실시하는 등 체육이라는 명목 하에 전쟁준비를 위한 체력증강이나 전투훈련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 전시체제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학교에서 육성, 공급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지는 군사교육 강화와 더불어 체육교육 강화로 바뀌어 갔다.

46) 「始興郡 各 小學校 秋期運動會 日割」, 『조선일보』 1938년 9월 21일; 「始興 各 小學校 季節運動會」, 『조선일보』 1939년 9월 23일.

여 백

제5장 전시체제하 강제동원의 양상과 실태

김민철 | 경희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1.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민중들

1) 한국인 동원정책의 강화

1931년 만주침략,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은 식민지 사회를 더욱 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중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했다. 일본의 한국인 노동력 강제동원은 193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모집'이라는 형태로 시작하여 '관 알선 징용'으로 발전해 갔다. 1938년 5월 5일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의 군수체제화가 강행되자, 기획원은 '노무동원계획'에 의해 한국인 노동자를 중요 산업에 동원한다고 결정했다. 중일전쟁 초기에는 '모집' 형식, 즉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응모자만을 본토의 군수공장 등에 취업시킨다는 형식이었으나, 실상은 조직적인 노동력 동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1] '자유모집'의 절차를 보면, '사업장의 신청수 결정 → 부현(府縣)장관에 대한 모집 신청 → 후생성(厚生省)의 사정(査定) → 조선총독부가 모집할 도(道)를 할당 → 후생성 → 부현장관 → 사업장의 허가서 수령 → 모집원의 도항(渡航) → 총독부 → 지정 도청 → 지정 군청 → 지정 면사무소 → 구장 및 주재소·면 유력자의

1) 임종국, 1989,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2, 일월서각, 243~245쪽.

협력을 받아' 모집하는 형식이었다.[2]

전쟁이 장기화되자 '직업소개', '관 알선(官斡旋)'이라는 형태로 모집 형식이 변화되었다. 특히 '관 알선'은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동원체제가 강화되면서 나온 방법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산하에 노무과와 조선노무협회를 신설하여 노동력 동원을 직접 관장하였다. 1941년 6월 28일에 발족한 조선노무협회는 본부를 조선총독부에, 지부를 각 도에, 분회를 각 부군도(府郡島)에 두는 노무행정의 보좌기관이었다. 회장은 정무총감, 부회장은 내무·경무국장이며, 노무·보안과장이 전무이사로서 주된 사무를 처리하였고, 각 과장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상무이사 등이 이사로 참여하였다. 지부는 지부장에 도지사, 부지부장에 내무·경찰국장, 상무이사에 사회과나 고등경찰과장이 취임했으며, 분회의 조직 또한 대체로 이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노무협회 조직은 전체 행정력과 경찰력에 민간 총력단체까지 총동원한 노동력 동원 조직이었다.[3]

1944년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을 전쟁과 생산 현장에 투입하였다. 먼저 2월에는 주요 공장과 광산에 '일반징용'의 전제 조치로서, 그리고 노동력 이동의 제한 조치로서 '현원징용'을 실시했으며, 8월에는 노동력 동원의 최고 수준에 속하는 '징용'을 실시했다. 이른바 "국민징용은 징병에 다음가는 국민의 의무"였으며, 징용은 중요 공장·광산과 국외로의 신속한 노동력 동원이 목적이었다. 또한 「학도근로령」(1944. 8.)과 「여자정신근로령」(1944. 8.)을 공포하여 학생과 여성까지 전쟁으로 끌고 갔다.

한편, 일제는 한국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동원하기 위해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령」을 공포한 뒤 관련 제도와 기구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941년 2월에 1차 일본군지원병 모집을 마감했다. 모집인원은 3,000명이었으나 응모자가 13만 9,123명에 달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수치가 내선일체·황국신민의 성과라고 선전했으나, 정책 선전을 위해 언론과 친일세력을 총동원하여 젊은이들을 지원시킨 결과였다. 1942년 5월 일본은 각의에서 1944년부터 조선인 징병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1943년 3월 1일에 징병제를 공포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해군특별지원병령」도 공포,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1943년 10월 일본육군성은 한국인 학생의 징병 유예를 폐지하고 학병제를 실시하기로 하여 학병까지 전쟁에 동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군인, 군속(軍屬, 군 관계 징용), 군위안부, 노동자로 끌려간 한국인 젊은이의 총수는 얼마나 될까? 일본 측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본과 사할린[樺太(카라후토)], 남양군도(南洋群島) 등으로 끌려간 노동자는 1939년부터 1945년 3월까지 최소한 76만 7,004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강제동원이 가장 심했던 1945년 4월~8월 15일 통계가 빠져 있다. 즉, 일본 측의 이 공식 통계는 실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4] 또한 전장에 동원된 한국인도 적지

2) 朴慶植, 1965, 『朝鮮人强制連行の記錄』, 未來社, 68쪽.

3) 朴慶植, 1965, 『朝鮮人强制連行の記錄』, 未來社, 246~247쪽.

않다. 그 유형은 육 · 해군특별지원병, 징병, 학병 등의 군인뿐만 아니라 군속, 여자정신대(군위안부 포함) 등이 있다. 군인 · 군속을 포함한 총동원 인원에 대해 대체로 일본 측에서는 3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1〉 일제강점기 군(軍) 관련 한국인 동원자수

내용	동원자수
합계	약 603,385명
1938~1943년 육군특별지원병	약 17,000명
1944년 징병(제1기)	약 210,000명
학도지원병	4,385명
해군특별지원병 및 해군 동원자수	약 22,000명
군속	약 150,000명
여자정신대	약 200,000명

2) 끌려간 군포의 젊은이들

군포 지역의 강제동원 실태는 국가기록원 소장 『임시육군군인군속계(경기도)』와 『왜정시 피징용자명부(경기도)』[5]에 수록된 시흥군 남면과 수원군 반월면 관련 내용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다만, 이 자료는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전체적이고 정확한 상황보다는 그 단면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1) 시흥군 남면의 징병 · 징용 상황

『임시육군군인군속계』에 수록된 남면 군인계에는 총 6명이 기록되어 있다. 6명 중에는 당정리가 4명, 부곡리와 당리가 각 1명이다. 이 수치는 반월면에 비해서 적은 수였고 다른 면과 비교해 볼 때에도 적은 편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징집연도를 보면, 1941년 1명, 1943년 1명, 1944년 4명으로 1941년에 간 사람은 지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군마현(郡馬縣)에 배속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로 한국 내에 있던 조선군에 배속되었다.

다음 군인계에 기록된 주민 외에 특별지원병의 형태로 전장에 끌려간 이들도 있는데, 이윤응(남, 1927년생) 씨가 그러한 사례이다. 그는 본래 군에 징병될 나이는 아니어서 청년훈련소에서 훈

4) 박경식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수를 석탄광산 약 60만 명, 금속광산 약 15만 명, 군수공장 약 40만 명, 토건(土建) 관계 약 30만 명, 항만운수 관계 약 5만 명 등 총 150만여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朴慶植, 1975~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1~5, 三一書房).

5) 『왜정시 피징용자명부』는 1957년에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국교수교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 피해보상을 위해 해외로 강제동원되었던 사람들을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명단에 수록된 사람들의 거주지와 징용 당시 거주지는 다를 수 있다.

〈표 2〉 시흥군 남면 군인계

본적지	이름	생년월일	징집연도	역종	병종	관등	최근 소속지
시흥군 남면 당리 292-2	星本承淳	1924. 5. 27.	1944	현역병	산포병	–	조선
시흥군 남면 당정리 108	茂松在浩	1924. 11. 13.	1944	현역병	고사병	이등병	조선
시흥군 남면 당정리 117	石原光雄	–	1941	현역병	경중병	병 장	경성(鏡成)
시흥군 남면 당정리 309	清水章浩	–	1944	현역병	보 병	이등병	조선
시흥군 남면 당정리 787	三水完錫	1924. 2. 24.	1944	현역병	보 병	–	군마
시흥군 남면 부곡리 181	高城清次郎	1921. 12. 14.	1943	현역병	경중병	이등병	–

출처 : 「시흥군 남면 군인계」, 『임시육군군인군속계-경기도8』, 622~628쪽(국가기록원 소장).

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후루카와(古川)라는 교관에 의해 해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의 제보를 옮겨 보자.

> 22세가 안 된 사람은, 그때 나 17, 16세일 때, 그때는 청년훈련소라는 것이 있었어. 청년훈련소는 징병 가면 안 되고 하는 나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을 훈련시키는 그게 있었다고, 나도 거기를 다녔어. 그런데 거기서 어느 날 그 교관이, 내가 알기로는 후루카와라고, 고천(古川)이라고 그 사람이 "보호자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 갖다 줬지. 이것이 뭐냐면, 왜정 때 나이 18살 때에 해군특별지원병, 해군특별지원병에다가, 원서에 도장을 찍은 거야. 해 가지고 "신체검사를 오라."고 해. 얼마나 우리가 무식했는지. 그래서 3월쯤에 서울 상공회의소라는 그 사무실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어. 그때는 땡땡했거든. 그래서 합격을 한 거야. 그런데 그해에, 10월 말에 영장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간 거지. 그래서 진해에 가서 6개월, 6개월 해군 훈련을 받은 거야. …… 거기서 4월 29일인가에 졸업을 맡았어. 그런데 우리 먼저 간 사람들은, 우선 태평양전쟁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 3개월 마치면 대만, 오키나와(沖繩), 유황도(硫黃島) 거기로 배속되어서, 미얀마니, 무슨 싱가폴이니, 그런 데. 우리는 지금 생각이야, 전세가 불리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오키나와도 그렇고, 미군에게 점령을 당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규슈(九州) 미야자키(宮崎) 721항공대 소속으로다 우리가 간 거야.[6]

이윤응 씨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해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하여 1944년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훈련을 받고 규슈에 있던 항공대에 배치를 받았다.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으나 8월 17일이 되어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열흘 정도 후에 후쿠오카(福岡)의 하카타(博多)에 도착하여 밀항선을 얻어 타고 대마도(對馬島) 이즈하라(嚴原)항으로 갔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배를 이용해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열차를 타고 수원까지 와서 버스로 고향에 돌아왔다고 한다.

다음은 군속으로 동원된 이들에 대해 살펴보자. 남면 군속계에는 당시 군속으로 동원된 이들이 23명으로 나타난다. 이를 동리별로 보면, 금정리 1명, 당리 7명, 당정리 5명, 부곡리 3명, 산본리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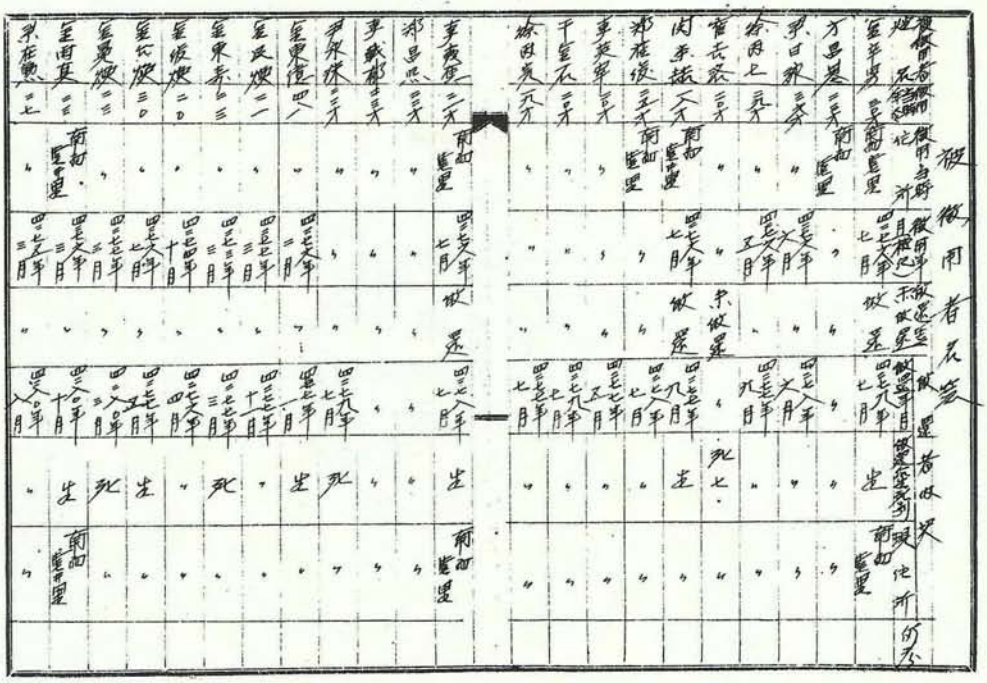
6)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원주민 구술증언자료 조사보고서」, 88~89쪽.

명이다. 연도순으로 보면, 1942년 2명, 1943년 1명, 1944년 15명, 1945년 4명, 불명 1명으로 1944년에 집중 동원되었다. 군속으로 동원된 이들의 '신분'은 군부(軍夫) 8명, 공원(工員) 6명, 용인(用人)·군속 각 2명, 경수(耕手)·잡공(雜工)·차수(車手)·촉탁(囑託)·필생(筆生) 각 1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명칭이 다양한 것은 맡은 역할의 차이 때문이겠지만, 실상은 같은 신분, 즉 군에 배속된 노동자라는 점에선 똑같다. 다만, '부대편입 구분'과 '최근 소식지'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 1명과 과규(瓜硅)포로수용소 1명, 일본(히로시마, 廣島) 1명, 기(磯)제8888부대를 제외하면, 모두 한국 내 동원이었다. 부대편입 구분란에 '징용'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대부분 1944년 7월에 동원된 사람들로 이들은 모두 해외에 주둔 중인 군부대와 포로수용소에 배치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군속 중 서원영석(西原永錫)은 군부두(軍夫頭)로서 작업반장을 지낸 것으로 보인다.

〈표 3〉 시흥군 남면 군속계

본적지	이름	생년월일	신분	급여(원)	부대편입일	부대편입 구분	최근 소속지
시흥군 남면 금정리 483	新井弘隆	1921.12.14.	경수	1.25(일)	1944. 7.30.	군속	중중국
시흥군 남면 당리 120	石原達雄	1927.11.28.	육군 공원		1944.12. 1.	군속	인천
시흥군 남면 당리 120	木本七成	1929. 8. 7.	잡공	1.60(일)	1944.12.10.	군속	경성
시흥군 남면 당리 122	高村花子	1929. 6.16.	공원	0.80(일)	1945. 1.25.	군속	–
시흥군 남면 당리 157	朴川承龍	1918. 8.20.	공원	2.39(일)	1944.12. 1.	군속	인천
시흥군 남면 당리 338	大城丙七	1916. 5.28.	군부	60(월)	1944. 7.11.	징용	기제8888부대
시흥군 남면 당리 60	森原永奭	1922. 1. 5.	군부	60(월)	1944. 7.15.	징용	기제8888부대
시흥군 남면 당리 94	德原昌基	1920.10.17.	군부	60(월)	1944. 7.11.	징용	기제8888부대
시흥군 남면 당정리 101	金山健一	1909. 2.10.	용인 군부	36(월)	1943. 7. 8.	–	나남
시흥군 남면 당정리 103	德原一次	1911. 8.15.	용인 차수	1.15(일)	–	–	용산
시흥군 남면 당정리 345	福山吉雄	1927. 8. 2.	육군 군속	1.59(일)	1944.12. 1.	군속	인천
시흥군 남면 당정리 345	金村季聲	1924. 2. 3.	육군 용인	1.20(일)	1945. 2.10.	군속	조선
시흥군 남면 당정리 74	文上祿	1907. 3.24.	공원	2.12(일)	1942.11. 1.	육군 용인	조선
시흥군 남면 부곡리 114	高城圭契	1916. 9.17.	군부	60(월)	1944. 7.11.	징용	기제8888부대
시흥군 남면 부곡리 132	高城泰俊	1916. 5.12.	육군 촉탁	50(월)	1945. 2.14.	군속	용산
시흥군 남면 부곡리 159	高城圭殷	1924. 3.18.	징용 공원	1.80(일)	1944.12.12.	군속	히로시마
시흥군 남면 산본리 131	三山秀雄	1909. 3. 6.	군속 필생	52(월)	1944. 8. 2.	–	용산
시흥군 남면 산본리 347	藤澤茂春	1922. 6.10.	군속	50(월)	1942. 6. 5.	징용	과규포로수용소
시흥군 남면 산본리 672	安井德昌	1917. 4.10.	군부	60(월)	1944. 7.15.	징용	기제8888부대
시흥군 남면 산본리 677	西原學東	1920.10.15.	군부	60(월)	1944. 7.11.	징용	기제8888부대
시흥군 남면 산본리 782	西原永錫	1910.12.30.	군부두	90(월)	1944. 7.11.	징용	기제8888부대
시흥군 남면 산본리 788	西原宗夫	1925. 7.22.	육군 공원	2.62(일)	1944. 3.15.	군속	인천
시흥군 남면 산본리 804	林鳳鶴	1922. 9.16.	육군 용인	1.20(일)	1945. 1.9.	군속	용산

출처 : 「시흥군 남면 군속계」, 『임시육군군인군속계-경기도8』, 752~775쪽(국가기록원 소장).



남면 피징용자 명부[7]

〈표 4〉 시흥군 남면 피징용자 명부

성명	징용 당시 나이	징용 당시 주소	징용일	귀환 여부	귀환일	귀환 후 생사
김신남	30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6. 7.	생
방창기	23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6. 7.	생
양일영	36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6.	귀환	1945. 6.	생
서병칠	29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5.	귀환	1944. 9.	생
최길락	20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미귀환	–	사
정주원	25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5. 7.	생
이영재	20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4. 5.	생
간금석	20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6. 7.	생
서병완	19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4. 7.	생
이석응	21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5. 7.	생
정창희	22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5. 7.	생
이재욱	23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5. 7.	생
윤영수	22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6. 7.	사
김동억	48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2.	귀환	1944.1.	생
김민환	21	시흥군 남면 당리	1944. 3.	귀환	1944.11.	생
김동수	23	시흥군 남면 당리	1940. 3.	귀환	1944. 3.	사
김준환	20	시흥군 남면 당리	1941.10.	귀환	1943. 4.	사
김태환	23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7.	귀환	1944. 5.	생

7) 「시흥군 남면 피징용자 명부」,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경기도』, 643쪽(국가기록원 소장).

성명	징용 당시 나이	징용 당시 주소	징용일	귀환 여부	귀환일	귀환 후 생사
김면환	23	시흥군 남면 당리	1943. 3.	귀환	1947. 3.	사
민영철	18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3. 7.	귀환	1944. 9.	생
김재기	23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3. 3.	귀환	1947.10.	생
양재훈	27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2. 3.	귀환	1947. 8.	생
윤국석	18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3. 6.	귀환	1948. 5.	사
양완배	18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3. 6.	귀환	1948.12.	사
심재덕	28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3. 6.	귀환	1948. 5.	사
김기철	31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3.12.	귀환	1944. 1.	생
김기성	34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4. 1.	귀환	1947. 1.	생
이기홍	23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1. 3.	귀환	1945. 9.	생
한상춘	21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1. 5.	귀환	1945. 6.	사
서영달	21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5. 5.	귀환	1945.10.	생
한면수	21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5. 9.	귀환	1946. 5.	생
김재성	21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5. 9.	귀환	1946. 6.	생
이종석	25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2. 6.	귀환	1948. 9.	사
강봉운	35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2. 9.	귀환	1947. 1.	생
민상철	22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2. 7.	귀환	1947. 5.	생
윤유석	27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5. 7.	귀환	1947. 9.	생
민태선	22	시흥군 남면 당정리	1944.10.	귀환	1946. 1.	생
곽태창	28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0. 4.	귀환	1942. 2.	생
곽윤철	29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4.10.	귀환	1945. 9.	생
곽두현	26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0. 9.	귀환	1942.10.	생
곽규정	24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4. 5.	귀환	1945.10.	생
곽방현	26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4. 5.	미귀환	–	사
문종렬	24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4. 4.	귀환	1945.10.	생
배원석	24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4. 8.	귀환	1945.11.	사
곽규계	28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4. 8.	귀환	1945.11.	생
최상윤	26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4. 8.	귀환	1945. 2.	사
이재근	28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0. 9.	귀환	1942.12.	생
김용철	26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2. 9.	귀환	1945. 1.	생
양○환	28	시흥군 남면 부곡리	1944. 9.	귀환	1945.11.	생
이경구	23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1. 9.	귀환	1942. 1.	생
백필붕	34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2. 7.	귀환	1945. 9.	생
정조연	23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3. 8.	귀환	1945.11.	생
이동식	27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5. 4.	귀환	1945.11.	생
김민수	22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2.11.	귀환	1945.11.	생
이영식	26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3. 8.	귀환	1944.11.	생
백○용	30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4. 7.	미귀환	–	–
한백수	21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1. 9.	귀환	1943. 2.	생
안귀천	26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2.11.	귀환	1945.11.	생
한흥수	23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2. 7.	귀환	1945.11.	생
안금산	–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3. 8.	귀환	1945.11.	생
한필동	–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3. 7.	귀환	1945. 9.	생

성명	징용 당시 나이	징용 당시 주소	징용일	귀환 여부	귀환일	귀환 후 생사
한구위	-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1. 9.	귀환	1943. 5.	생
한현이	-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1. 9.	귀환	1946. 7.	생
한영석	-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3. 9.	귀환	1945.11.	생
송임원	30	시흥군 남면 금정리	1939. 6.	귀환	1944. 8.	생
김철영	33	시흥군 남면 금정리	1939. 7.	귀환	1946.10.	생
유지규	19	시흥군 남면 금정리	1937.12.	귀환	1945. 9.	생
이동안	22	시흥군 남면 금정리	1939. 7.	귀환	1946.10.	생

출처 : 「시흥군 남면 피징용자 명부」, 『왜정시 피징용자명부-경기도』, 643~645쪽(국가기록원 소장).

한편, 『왜정시 피징용자명부(경기도)』의 「시흥군 남면 피징용자 명부」를 보면, 징용 당시 군포 지역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 강제동원자수는 68명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징용은 1937년 1명, 1939년 3명, 1940년 4명, 1941년 7명, 1942년 9명, 1943년 27명, 1944년 12명, 1945년 5명이다. 1937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가서 일하다가 현지 공장에서 징용된 경우(현원징용)이며, 1939~1940년에 간 사람은 모집, 1941~1944년 8월 이전에 간 사람은 관 알선, 1944년 8월 이후는 징용령에 의해 일본 등 해외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이다. 동리별로 보면, 당리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당정리가 18명, 산본리가 15명, 부곡리가 12명이며, 금정리는 4명으로 가장 적다. 이 기록에는 위의 군속계에 기재된 이름들도 보인다.

남면에서 해외로 강제동원된 사람 가운데 귀환하지 못한 사람은 3명이며, 그중 현지에서 사망한 사람 2명, 불명 1명이다. 귀환자 65명 중 1957년 조사 당시 사망한 사람은 11명으로 약 16.9%에 이른다. 이 조사 자료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57년 당시 사망자 중 다수는 한국전쟁으로, 일부는 강제동원 시의 가혹한 노동조건에서 얻은 병으로 귀환 후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2) 수원군 반월면의 징병 · 징용 상황

다음으로 수원군 반월면의 강제동원 실태를 보자. 먼저 『임시육군군인군속계(경기도)』에 수록된 「수원군 반월면 군인계」를 보면, 이곳에서 군인으로 동원된 인원은 총 20명으로 나타난다. 동원지별로 보면, 한국 내 10명, 중중국 4명, 북중국 3명, 남중국 1명, 만주 1명, 필리핀 1명이다. 1943년의 2명은 지원병이며, 1944년에 18명이 징병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현재 군포시에 속하는 대야미리 · 도마교리 · 둔대리 · 속달리의 주민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월면에서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경우는 총 23명이 나타난다. 연도별로는 1936년 1명, 1939년 1명, 1943년 2명, 1944년 17명, 1945년 1명, 불명 1명으로 1944년에 집중되어 있다. 1936년과 1939년에 군속으로 간 2명은 말 관리[馬丁係]와 운전수로 군에 취직한 사람들이어서 동원된 사람과는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최근 소속지별로 보면, 한국 내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남중국 4명,



지원병 파송 신사참배

이 사진은 반월공립국민학교 학생들이 지원병을 파송하면서 신사에 참배하는 모습으로 『반월공립국민학교 제18회 졸업기념사진첩』(1944년 3월)에 실려 있다.

〈표 5〉 수원군 반월면 군인계

본적지	이름	생년월일	징집연도	역종	병종	관등	최근 소속지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364	松江世九	1924. 1.11.	1943	지원, 현역	보병	이등병	필리핀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887	谷山富成	1923. 6. 9.	1943	지원, 일보(一補)	중포	이등병	만주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887	廣村範淳	1924. 5. 1.	1944	일보	치중병(輜重兵)	이등병	갑제4023부대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889	橋本達壽	1924. 7. 9.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중중국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 605	宮本泰鎭	1924.12. 1.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중중국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 79	城田炳烈	1924. 1. 4.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조선
수원군 반월면 사리 32	德山高正	1924. 3.18.	1944	일보	짐수레(輜)	이등병	북중국
수원군 반월면 사리 460	金剛鍾振	1923.12.29.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조선
수원군 반월면 사리 483	金岡元泰	1924. 3.15.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조선
수원군 반월면 사리 863	金光建楨	1924.10.25.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조선
수원군 반월면 사사리 243	李模玄	1924. 6.21.	1944	일보	보병	이등병	북중국
수원군 반월면 사사리 252	邊原昌鉉	1924. 5.10.	1944	현역	고사	이등병	조선
수원군 반월면 이리 391	松原正雄	1924. 5.13.	1944	일보	치중병	이등병	북중국
수원군 반월면 이리 393	西原畯	1923.12.9.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조선
수원군 반월면 입북리 430	大島敏男	1924. 9. 1.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중중국
수원군 반월면 초평리 108	國本鍾權	1924.10.13.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함흥
수원군 반월면 초평리 406	河本逸鉉	1924.11.18.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남중국
수원군 반월면 초평리 422	豊田敦健	1924. 1.27.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조선
수원군 반월면 팔곡일리 97	河東順鍾	1924.10. 6.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중중국
수원군 반월면 팔곡일리 589	松村舜雨	1924. 6. 26.	1944	현역	보병	이등병	조선

출처 : 「수원군 반월면 군인계」, 『임시육군군인군속계-경기도1』, 875~894쪽(국가기록원 소장).

비고 : '일보(一補)'는 제1보충병을 의미한다.

만주 2명, 중중국과 일본이 각각 1명씩이다. 신분상으로 보면, 공원 12명(보충병 1명 포함), 용인 6명, 군속 1명, 정리공(整理工) 1명, 고원(雇員) 2명, 급사 1명이다.

반월면 군속계에 기록된 23명 가운데 현 군포시에 속하는 동리에서는 총 5명이 나타난다. 그중 둔대리의 전전태준(前田泰俊)은 1944년 2월 20일 제1보충병, 이등병(보병)으로 육군에 징집되었으나, 1944년 11월 20일 오사카육군조병창에 배속될 때에는 군속(공원)으로 전환한 경우여서 다소 특이하다. 일본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식 관리 이외에 일용직이나 한시직 등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고원 · 용인으로 불렀다. 이중 고원은 주로 사무직에, 용인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왜정시 피징용자명부(경기도)』의 「반월면 피징용자 명부」에는 총 136명의 징용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37년 3명, 1939년 3명, 1940년 1명, 1941년 3명, 1942년 24명,

〈표 6〉 수원군 반월면 군속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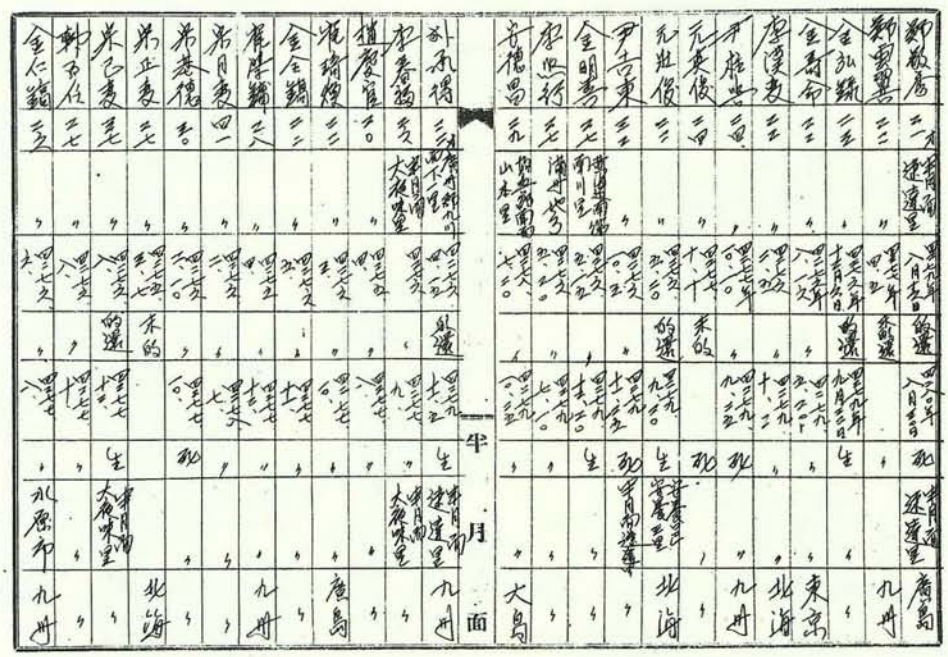
본적지	이름	생년월일	신분	급여(원)	부대편입일	부대편입 구분	최근 소속지
수원군 반월면 대야미리 403	文昌基	1922. 8.11.	용인	160(월)	1944. 2.14.	징발	중중국
수원군 반월면 둔대리 196	前田泰俊	1924. 4.29.	보충병	1.3(일)	1944.11.20.	징용, 군속	오사카(大阪)
수원군 반월면 속달리 329	木村熙行	1917. 8.18.	용인	1.80(일)	1945. 1. 6.	군속	만주
수원군 반월면 속달리 330	瑞原周鳳	1921. 9.28.	공원	–	1944. 1.25.	군속	남해
수원군 반월면 속달리 351	松原信雄	1927. 4. 1.	공원	1.58(일)	1944.12. 1.	군속	인천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582	上原東益	1925. 1.12.	군속	2.29(일)	1944. 2.21.	공원	인천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599	西原百完	1927. 1. 5.	공원	1.63(일)	1944.12. 1.	군속	인천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75	岡山喜永	1925. 4. 1.	공원	1.24(일)	1944.12.11.	군속	만주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765	東島寅暉	1927. 4.27.	정리공	1.55(일)	–	군속	인천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 217	松本崇一	1917. 9. 1.	공원	2.79(일)	1944.12. 1.	용인	육군창고(수색)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 217	松本榮高	1920. 8. 5.	고원	1.50(일)	1939. 7.29.	운전수	경성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 217	松本博過	1906.12. 4.	고원	1.70(일)	1936. 5.	마정계	나남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 317	松本文子	1931. 9. 6.	급사	0.5(일)	1944.12.13.	군속	경성(함경북도)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 86	新井上俊	1923.10.30.	용인	160(월)	1944. 2.14.	군속	남중국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	新井仁光	1924. 1. 1.	공원	1.83(일)	1943. 7.20.	용인(공원)	조선
수원군 반월면 사리 22	德山信雄	1920. 7. 9.	공원	2.13(일)	1943.12.29.	공원	육군창고
수원군 반월면 사리 869	高山用夏	1922.10.21.	공원	2.03(일)	1944.12. 1.	군속	인천
수원군 반월면 사리 911	高山用契	1923. 5. 5.	공원	1.96(일)	1944.10.15.	군속	인천
수원군 반월면 사리 92	德山福用	1914. 3. 5.	공원	60(월)	1944.11. 1.	용인	용산
수원군 반월면 일리 295	城木熙三	1923. 2.15.	용인	160(월)	1944. 2.14.	징발	남중국
수원군 반월면 일리 447	木山昌淳	1919. 3. 2.	용인	160(월)	1944. 2.14.	징발	남중국
수원군 반월면 입북리 431	金川信一	1925. 4.25.	공원	2.18(일)	1944. 4. 1.	군속	인천
수원군 반월면 팔곡이리 369	林鎭植	1919. 5.11.	용인	160(월)	1944. 2.14.	징발	남중국

출처 : 「수원군 반월면 군속계」, 『임시육군군인군속계-경기도5』, 624~647쪽(국가기록원 소장).

1943년 61명, 1944년 37명, 1945년 4명으로 1943년과 1944년에 집중되어 있다. 1937~1940년 모집으로 간 사람은 7명, 1941~1944년 8월 이전 관 알선으로 간 사람은 110명, 1944년 8월 이후 징용령으로 간 사람은 19명이다. 강제동원된 지역을 보면, 규슈 47명, 홋카이도(北海島) 28명, 히로시마 9명, 카라후토 8명, 군마 5명, 후쿠오카 5명 등으로 규슈와 홋카이도에 집중되어 있다. 징용자들은 대부분 탄광과 철도공사에서 일하였다.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하지 못한 사람은 총 15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5명, 행방불명이거나 해방 이후 일본에서 산 사람들이 10명이다. 귀환자 중 본오리의 일부 동원자, 특히 1943년 2월 2일에 동원되었던 사람들과 대야미리의 동원자 중 1943년에 간 사람들은 모두 이듬해인 1944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돌아온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동원된 지역은 규슈와 홋카이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현지에서 다시 징용되지 않고 돌아온 것이다. 귀환자 121명 중 1957년 조사 당시 사망한 사람은 14명으로 11.6%이여서 남면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아마도 남면에 비해 해방 이전에 귀환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반월면 피징용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현 군포 지역에서 징용된 이들은 총 34명으로 나타난다. 동리별로는 대야미리 15명, 도마교리 6명, 속달리 12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징용 당시 산본리 거주자였다. 동원된 지역은 규슈와 홋카이도가 가장 많았고, 미귀환자는 5명이었다.



반월면 피징용자 명부[8]

8) 「반월면 피징용자 명부」,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경기도』, 490쪽(국가기록원 소장).

그들 대부분이 생사의 기로를 넘기고 귀환하였다.

〈표 7〉 수원군 반월면 중 현 군포 지역 피징용자 명부

성명	징용 당시 나이	징용 당시 주소	징용일	귀환여부	귀환일	귀환 후 생사	비고
이춘복	26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귀환	1944. 9.	생	규슈
조경관	20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2. 4.	귀환	1944. 8.	생	규슈
최기환	22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3.	귀환	1944. 10.	생	히로시마
김전호	22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5.	귀환	1944. 11.	생	히로시마
최학용	28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2. 4.	귀환	1944. 12.	생	규슈
송일섭	41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2.	귀환	1945. 7.	생	규슈
송기덕	30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2. 10.	귀환	1944. 10.	사	규슈
송정섭	27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2. 3. 7.	미귀환	–	–	홋카이도
송기섭	37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8.	귀환	1944. 12.	생	홋카이도
한백임	27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8.	귀환	1944. 10.	생	홋카이도
김인호	26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6.	귀환	1944. 8.	생	규슈
이귀복	20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12.	귀환	1944. 9. 20.	생	나고야
피장원	27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11.	귀환	1944. 10. 10.	생	나고야
허장안	23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8.	귀환	1944. 10. 1.	생	규슈
이재남	26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43. 10.	귀환	1944. 12. 10.	생	군마
이병석	20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	1939. 2. 5.	귀환	1943. 9. 20.	생	비바이
이용완	20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	1942. 3. 5.	귀환	1945. 9. 10.	생	치시마
이준영	25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	1943. 1. 20.	귀환	1945. 9. 10.	생	규슈
구인증	23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	1944. 8. 5.	귀환	1945. 9. 10.	생	규슈
박종락	21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	1943. 4.	미귀환	–	사	규슈
김대득	26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	1943. 4.	미귀환	–	사	규슈
최승모	25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2. 5. 20.	귀환	1943. 11. 7.	생	니가타(新潟)
정경수	21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4. 8. 16.	귀환	1947. 8. 30.	사	히로시마
정운익	22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4. 4. 5.	미귀환	–	사	규슈
김홍록	23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3. 12. 6.	귀환	1946. 9. 22.	생	규슈
김수명	22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3. 8. 16.	귀환	1946. 5. 20.	생	도쿄
이한섭	22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3. 2. 5.	귀환	1946. 10. 2.	생	홋카이도
윤주선	24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4. 10. 10.	귀환	1946. 9. 25.	사	규슈
원영준	24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4. 10. 10.	미귀환	–	사	규슈
원장준	22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3. 5. 20.	귀환	1946. 9. 20.	생	홋카이도
윤길동	32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3. 10. 3.	귀환	1944. 11. 25.	사	홋카이도
김명선	27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3. 5. 15.	귀환	1946. 12. 20.	생	홋카이도
이희행	27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1943. 5. 20.	귀환	1944. 7. 10.	생	홋카이도
안덕창	29	시흥군 남면 산본리	1945. 7. 20.	귀환	1946. 10. 25.	생	오시마(大島)

출처 : 「반월면 피징용자 명부」,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경기도』, 489~491쪽(국가기록원 소장).

2. 청년교육시설과 면 재정

1) 청년훈련소 수립 계획

조선총독부는 식민권력을 촌락까지 침투시키기 위해 식민지배 전 기간에 걸쳐 행정력을 확대 ·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행정력만으로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은 통치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반드시 성공적이지도 않았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농촌진흥운동과 국민총력운동 등 주민 동원체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식민권력과 주민 사이에 적절한 매개 인물, 즉 민간측 대리인(agent)을 '발굴' · '육성' 하는 일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었다. '중견인물' 로 불리는 집단이 바로 이들이다.

조선총독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견인물 육성책을 만든 것은 농촌진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1935년에 들어서였다. 농촌진흥운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견인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조선총독부는 갱생계획을 만료한 촌락을 자율적인 공려부락(共勵部落)으로 전환시켜 그 지도를 중견인물에게 맡기고, 행정관리는 확대되는 갱생지도부락을 맡는 일종의 역할분담 체계로 세웠다. 이에 따라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집중적으로 중견인물 양성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실습을 중심으로 '황국농민(皇國農民)' 의 윤리의식을 주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졸업생지도나 중견인물양성소, 청년훈련소, 농업보습학교, 도군 주최 강습회 등을 운영하였다.

1941년에 남면과 반월면에서 총독부에 신청한 청년훈련소 인가신청서도 이런 일환으로 추진된 문서이다.[9] 두 면에서 비슷한 시기(반월면 5월 15일, 남면 6월 10일)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총독부에서 각 도에 공립청년훈련소 건립을 위한 신청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1937년 당시 중견인물을 양성하는 시설은 총 40개소로 1,226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경영 주체에 따라 도의과(지방과, 학무과, 농무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20개소, 향교재산 3개소, 군농회 8개소, 도농회 1개소, 사설 4개소, 학교 4개소였다. 이 규모는 1940년대 들어서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선의 중견청년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그리고 후방에서의 지원 강화를 위해 파시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황국농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 중견인물양성소 · 농업보습학교와는 별도로 중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시훈련을 위하여"[10] 공립청년훈련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1940년과 1941년에 걸쳐

9) 조선총독부, 1941, 『공립청년훈련소설립인가서류』, 964~991 · 1023~1037쪽.
10) 「公立青年訓練所」, 『매일신보』 1941년 7월 24일.

〈표 8〉 중견인물 장기양성시설 현황

(1937년 현재, 단위 : 개소, 명)

경영주체	개소	수용정원수
계	40	1,226
도	20	728
군농회 · 도농회 · 향교재산 · 학교	16	344
사립	4	154

출처 : 朝鮮總督府, 1937, 『農山漁村に於ける中堅人物養成施設の概要』, 425~427쪽.

1,700여 개소의 중견청년훈련소를 신설했으며, 1942년에 250개소를 증설하기로 했다.

남면과 반월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① 명칭, ② 위치, ③ 규칙, ④ 생도 개요, ⑤ 개소 연월일, ⑥ 경비와 유지방법, ⑦ 완성 시의 생도 정원수, ⑧ 주사와 지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인가신청서로만 되어 있어 신청한 이듬해인 1942년에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의 증언이나 관련 사진자료를 근거로 그것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서에 따르면, 남면의 경우 명칭은 '군포공립청년훈련소' 로 하고, 위치는 남면 군포공립국민학교에 두도록 하였다. 생도는 본과생으로 4년간 매년 조선인 학생 15명씩 총 60명을 교육하고, 개소일은 인가일로부터 하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연차경비는 매년 면 부담 50엔, 국고보조 470엔, 도비보조 100엔 등 총 620엔으로 한다고 했다. 반월면의 경우는 '수원군반월공립청년훈련소' 로 하고 위치는 역시 반월공립국민학교에 두며, 생도는 매년 조선인 학생 35명씩 총 140명을 교육



군포공보 교실 문 우측에 걸린 군포공립청년훈련소 현판(1942년 3월 졸업사진, 이준상 소장)

한다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비도 연간 1,000엔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했다.

신청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훈련소라고 해서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6년제 국민학교를 이용하여 교육하는 것이며, 학기는 매년 4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3월에 끝나는 1년 이수과정으로 했다. 교과내용과 시간은 수신 및 공민과 100시간, 체조과 · 교련과 350시간, 보통과 · 직업과 250시간으로 총 700시간이다. 수신 및 공민과는 '도덕의 요지와 공민의 심득(心得)'을, 교련과는 '도수, 교련, 군사강의, 체조'를, 보통학과는 '국어, 국사, 지리, 수학, 이과'를, 직업과는 '직업대의(大意)와 실습, 농업대의와 실습'을 교과과정으로 하였다.

2) 전시하 반월면의 재정 구조

반월면에서는 청년훈련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면의 재정 상황까지 함께 첨부하였다. 『공립청년훈련소설립인가서류』에 수록된 「반월공립청년훈련소-수원군」의 기록은 1941년에 한정되어 있어 전시체제하 면 재정의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면 단위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어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당시 세입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면세였다. 면 세입의 55.4%를 차지하는 면세는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鑛稅)부가세, 호별세부가세, 특별지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등 국세에 대한 부가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지세부가세와 호별세부가세가 면세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두 부가세가 면세의 기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1.7%를 차지하는 보조금이다. 이는 국고보조와 도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보조가 중심이다. 이어 재정조정보조금 9.2%, 조입금 6.2%, 재산수입 5.1%, 교부금 4.1%, 사용료와 수수료 3.8%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세출 예산에서는 사무비가 61.7%로 가장 높다. 사무비는 면장수당, 직원급여[吏員給], 잡금(雜金), 수용비, 수선비, 잡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가 사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업비 8.5%, 기본재산조성비 5.8%, 식량배급시설비 3.6%, 적립금 3.4%, 청년훈련소비와 국민총력제시설비 각 2.6% 등이다. 그중 권업비는 시장비, 모범림비, 산업지도원 급여, 미곡생산고 및 현재고 조사비, 잡곡생산고 및 현재고 조사비, 채종전답비(採種田畓費), 전작개량비(田作改良費), 잠업장려비, 비료장려비, 축산장려비, 승입(繩叭)제조장려비, 권업 제비(諸費)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 예산 계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농산어촌진흥 제비(諸費)의 전액 삭감이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농산어촌진흥운동을 폐지하고 이를 국민총력운동으로 흡수함에 따라 농산어촌진흥제비가 국민총력제시설비로 대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9〉 1941년 반월면 세입 · 세출 예산 현황

(단위 : 원, %)

구분	계정	금액	비율
세입	계	22,142	100.0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	1,130	5.1
	사용료와 수수료	842	3.8
	교부금	900	4.1
	조월금	700	3.2
	보조금	2,591	11.7
	재정조정보조금	2,045	9.2
	기부금	170	0.8
	과년도수입	13	0.1
	조입금	1,380	6.2
	잡수익	107	0.5
	면세	12,264	55.4
세출	계	22,142	100.0
	회의비	90	0.4
	사무비	13,660	61.7
	토목비	285	1.3
	위생비	410	1.9
	청년훈련소비	570	2.6
	권업비	1,877	8.5
	국민총력제시설비	570	2.6
	식량배급시설비	790	3.6
	경비비	557	2.5
	기본재산조성비	1,274	5.8
	적립금	751	3.4
	재산비	71	0.3
	접대비	50	0.2
	잡지출	123	0.6
	직원공제시설조성금	380	1.7
	기부와 보조	50	0.2
	예비비	634	2.9

출처 : 조선총독부, 1941, 「반월공립청년훈련소-수원군」, 『공립청년훈련소설립인가서류』, 978~991쪽(국가기록원 소장).